



# 北韓의人權問題

(資料集)



1976. 12

## 머 리 말

北韓共産政權이 世界人權宣言에 규정된 人間의 權利를 全面 否認하고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을 내세워 北韓同胞 한사람 한사람을 人間으로서가 아니라 體制維持의 部品으로 隸屬하고 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러나 韓半島의 休戰線以北地域에서 人間의 權利가 否認되고 있다는 事實은 너무나 自명한 것같은면서도 그 內容을 具體化하고 客觀化하려는 試圖가 行해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

이에 當院에서는 南과 北이 人權觀念에서 얼마만큼 異質化되고 있는가를 具體的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성취될 統一祖國의 來日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北韓同胞들의 人權回復을 위한 對策을 미리 研究두어야겠다는 必要에서 이 자료집을 刊行키로 했습니다 .

이 資料는 北韓에서의 人權問題를 理論과 實際의 兩面에서 整理했으나 短時日内の 作業인 關係로 內容構成과 論理面에서 적잖은 補完이 必要함을 否認할 수 없습니다 . 77年度의 作業期에 關係 部處의 協議를 얻어 좀더 알찬 內容으로 가다듬을것을 기약하고 執筆에 참여해주신 專門家 諸位에게 감사드립니다 .

# 目 次

|                           |       |     |
|---------------------------|-------|-----|
| 理 論 編                     |       | 3   |
| 1. 社会主義法 思想과 人權           | 張 庚 鶴 | 5   |
| 2. 北傀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 韓 泰 淵 | 25  |
| 3. 北韓住民의 不滿要因             | 權 光 明 | 41  |
| 4. 北韓體制에 對한 宗教社會學的考察      | 韓 完 相 | 61  |
| 5. 制度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的人權   | 張 明 奉 | 81  |
| 實 際 編 ( 증언편 )             |       | 155 |
| 6. 財産權은 이렇게 剝奪되었다.        | 吳 基 完 | 157 |
| 7. 나는 國家政治保衛部 指導員이었다.     | 孔 卓 虎 | 171 |
| 8. 共產圈에서 唯一하게 宗教가 禁止된北傀   | 崔 松 植 | 185 |
| 9. 나는 北傀의 言論人이었고作家이었다.    | 李 恒 九 | 197 |
| 10. 居住移轉, 旅行의 自由          | 유 대 윤 | 209 |
| 11. 北韓에서의 職業選擇의 自由        | 朴 明 夏 | 227 |
| 12. 나는 學問의 自由를 이렇게 抑壓당했다. | 崔 光 石 | 237 |
| 13. 勞動黨 核心要員이 본 「아오지」炭鉞」  | 金 富 成 | 251 |
| 14. 藝術創作의 自由              | 禹 吉 命 | 265 |
| 15. 集會, 結社는 黨의 指令으로       | 李 直 浩 | 281 |

# 理 論 編

# 社會主義法思想과 人權

張 庚 鶴

(東國大學校 大學院長)

## 序 論

(솔제니친의 境遇)

노벨文學賞受賞作家 솔제니친의 境遇는 蘇聯에 있어서 人權과 裁判에 關한 特徵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는 大學卒業과 同時에 시작한 獨蘇戰爭에 懲集되어 처음에는 士兵으로서 輸送隊에서 馬匹의 시중을 들고 있다가, 다음해 一九四二年 砲兵士官學校에서 青年將校養成의 教養을 마친後 砲兵中隊의 隊長으로 任命되어 그후 約 三年間 隊長으로서 前線에서 活躍하였고, 戰功에 의해 二回씩 勳章을 授與받았다. 이처럼 模範的 軍人이었던 反面, 恒常 文學을 하는 것이 自己의 宿命으로 알고 戰爭中에도 文學修業을 위해 日記를 자세히 記錄하며, 또한 어느 친구에게 繼續하여 書信을 보냈으며, 勿論 便紙속에서 이름을 表示한 바 없으나, 스탈린에 關하여 그의 레닌主義로 부터의 逸脫, 戰爭 전반의 失敗의 責任, 非理性 其他에 關해 批判을 加한 것이 탄로되어 一九四五年 二月, 이미 大尉로 昇進된, 東프로이센의 케니히베르크의 戰鬪에서 師團長의 呼出을 받고 逮捕되어 문초를 받은후 特別決定에 의하여 正式裁判을 받지 않고 八年의 禁固刑의 宣告를 받았다.

그후 集團收容所(라게르)生活이 시작되어 처음 一年間은 모스크바 近郊의 建設現場, 다음 四年間은 罪囚 數學者로서 收容所内の 研究所, 最後의 三年間은 北카자흐스탄의 큰 炭鉞地帶에서 勞役에

従事했다. 이 收容所時代에 그는 러시아語를 열심히 研究하였고 틈을 타서 詩도 썼다. 詩나 戲曲等도 종이에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속에 暗記해 두었다 한다.

一九五三年 二月, 비로소 八年間의 刑期를 마치고 收容所로 부터 釈放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身分은 追放者로 머물러 있었다. 얼마후 타시켄트(우즈베크 共和國 首都)의 病院에서 腫瘍의 治療를 받아 健康을 回復하였다. 追放地에서는, 敎學先生도 하면서 틈틈히 散文과 戲曲을 繼續해서 썼다. 一九五六年二月, 第二〇回 黨大會에서 비로소 스탈린 批判을 하게된 때부터 겨우 追放이 解除되었으며 一九五七年에는 正式으로 「犯罪事實이 없었다」고 判定되어 名譽를 回復하였고, 처음부터의 念願대로 自然의 色彩가 豊富한 中部 러시아의 州首都 라자니市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中學校에서 敎學, 物理學을 가르치면서 곁들여 本格的으로 創作에 沒頭하였다.

소루제니첸의 境遇는 著名한 作家의 例라하겠으나, 共產主義社會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運命은 거의 同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다시피 蘇聯에서도 革命後 一九二三年 刑事訴訟法, 一九二六年 刑法, 一九三八年 裁判所構成法等의 刑事法典이 制定되었으며 表面上으로 볼 때에는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이 採用된 듯 하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自由世界에 있어서 처럼 「法에 의한 支配」의 原則이 保障된 바 없으며, 法에 앞서 共產主義의 「法精神」이 優位를 차지 하였다. 成文法과 그것의 土台인 「法思想」을

对照하여 볼때 蘇聯을 비롯한 共產主義社会에서는, 法보다 法思想이 優勢하며, 또 法과 政治를 对照한다면 政治가 法보다 優位를 占한다 할 것이다. 革命後 蘇聯社会는 政治的으로 變動이 激甚하였기 때문에 그 法思想도 政治의 變動에 따라 몇차례나 急激한 轉換을 거듭하였다.

蘇聯社会의 歷史的發展의 特質을 크게 規定해온 客觀的 要因은 첫째는, 一九一七年 러시아革命의 母胎인 旧러시아社会의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構造이며,

둘째는, 러시아의 社会主義的 變革過程에 直接, 間接으로 重圧을 가해온 資本主義世界의 包圍이다. 一九三〇年代 中期에 基本的으로 社会主義型을 이룩한 때에도 위 二個要因에 의하여 制約을 받았다. 이른바 「三〇年代型」 소비에트社会主義社会라고 稱할 構造的 特質을 갖게 되었다. 第二次世界大戰後 巨大한 에너지를 動員하여 戰後復興을 하였으나 五〇年代中期에는 여러가지 矛盾의 累積으로 因하여 커다란 方向轉換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一九五〇年代後半以後의 變化는 우선 社會主義的民主主義의 再建 (肥大화된 行政機構의 縮少, 過度의 行政的中央集權化의 排除, 代表制機關의 活動의 活潑化, 勞動組合의 權限擴大, 社会의 國家的管理에의 大衆參與 루트의 擴大等等), 社会主義的 適法性的 再建 (行政權力의 恣意的 法的手段에 의한 統制確立) 이라는 方向에서 「三〇年代型」 構造를 修正하고 다음에는 行政改革의 方法에 의한 工業, 農業管理 시스템의 再編試圖 (多分히 試行錯誤的過程을 包含함) 를 거쳐, 六〇年代 後半부터 새로운 生産力水準과 社会諸

關係의 變化에 対応하는 새로운 經濟管理 시스템 ( 이른바 「行政的 方法」 優位型에서 「經濟的 方法」優位型으로의 轉換)을 確立 하려는 段階로 접어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技術革新을 前提로 하고 「社會主義的市場」의 法則을 豫定한 經濟의 最適計劃化方式이 追求됨과 同時에, 社會의 「法的統制手段」의 機能이 보다 더 重視 되고, 大規模이며 體系的인 立法事業 (聯邦統一法으로서 一九五八年 刑事基本法, 刑事裁判節次基本性, 裁判所構成基本法, 一九六一年 民事基本法, 民事裁判節次基本法, 一九六二年 憲法改正委員會設置, 一九六五年 社會主義國營生產企業規程, 一九六八年 海商法典, 土地基本法, 婚姻· 家族基本法, 一九六九年 保健基本法, 코르 호즈模範定款, 矯正勞動基本法, 一九七〇年 勞動基本法, 水基本法, 一九七一年 行政責任基本法案)이 繼續하여 行해졌으며, 社會生活을 法에 의하여 統制하려는 努力이 눈에 띄이게 되었다.

### 革命 第一期의 法思想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法思想의 核心은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이다. 마르크스主義法思想의 基本命題는 法の 階級性的의 理論과 法の 死滅의 理論이다. 即 法을 가리켜 階級相互間의 調和의 產物로 보지 않고, 반대로 階級鬭爭의 最尖銳한 形態로서 考察하며 法을 支配階級的의 意思의 表現으로 본다. 따라서 階級關係를 떠난 法規範의 自立性도 없으며, 適法性도 있을 수 없다.



다음에는 法은 階級없는 社會에 있어서의 共產主義社會의 規則  
과는 峻別되므로, 당연히 階級없는 社會에 있어서의 法の  
死滅을 豫定하며, 法은 어떠한 超歷史的普遍性을 못가지며, 그  
自體가 終局的으로는 自己를 死滅시키기 위해서만 存在한다.  
거기에서는 人類社會에 矛盾이 있는限 法이 있다는 命題는 成立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法理論을 一國社會主義의 完成  
을 위해 適用한 蘇聯法の 理論自體가, 우선 마르크스主義理論의  
蘇聯의 特殊化의 狀況위에 成立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古典的 마르크스主義理論이 豫想하지 아니한  
過渡期社會主義의 長期化와 複雜性에 基因한 것이었다

蘇聯革命後 一九三七年까지 第一期에 活躍한 法律家中 代表的  
人物은 슈트츠키카(一八六五-一九三二) 구루이렌코(一八八五-一九  
三八) 파슈카니스(一八九一-一九三八)等 黨員法律家였다.

슈트츠키카의 法思想은 基本的인 點에서는 레닌(一八七〇-一九  
二四)의 그것과 一致된다.

레닌은 革命이나 法律이나의 選擇에 있어서 前者를 扶하였고, 革命的適法  
性의 原則을 強調하였다. 國家論에서는 幻想的인 國家枯死說을  
믿지 아니하며, 革命的으로 社會主義國家를 樹立해야 한다고 하고,  
過渡期에는 無慈悲한 獨裁를 써야한다고 強調하였다. 이것이 그  
의 「半國家」(Semistate)의 理論이다. 完全 共產主義가  
達成되기까지는 勞動者에게 願치 않는 勞動을 시키기 위해서는  
國家의 強制力에 의해 擔保된 法이 必要하며, 이때의 法の

強制는 教育과 說得 ( Persuasion ) 에 의한 自己規律의 確立이라 했다 .

레닌의 法理論을 본받은 슈트츠키는 法은 支配階級이 組織한 權力 ( 國家 ) 에 의해 保障된다고 強調하고, 未來의 完全 共產主義 社會에서는 法은 否認되겠으나, 「過渡期」에는 獨裁를 위한 法이 存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上部構造論의 公式을 排斥한 것이다. 그는 法の 階級的要素를 強調하고 프롤레타리아 階級社會에서는 法の 強制를 保障하기 위하여 「恐怖」를 使用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것은 市民社會에서 말하는 「強制」와는 다르며 레닌을 追從하여 「說得」이라고 하였다. 社會主義의 建設은 法을 通하여 達成될 수 있다고 하면서 「法の 革命的 役割」을 強調하였다. 이처럼 「過渡期」를 빙자한 「恐怖」의 濫用에 의해 人權은 여지없이 蹂躪당하였다. 그것을 「強制」가 아니라 「說得」이라 하면서 合理化 시키려 했다.

이에 反하여 파슈카니스는 마르크스 및 英겔스의 法思想을 忠實히 繼承하여 眞正한 意味의 法은 資本主義社會의 法이며, 法律關係는 商品所有者間의 諸關係이며, 「私法만이 眞正한 意味의 法이며 刑法도 私法이라 하였다. 商品의 等價交換의 原則을 引用하여 犯罪에는 等價의 処罰이 科하여지기 때문이라 했다. 마르크스主義 理論에 忠實한 나머지 그는 共產主義社會에는 強制性을 가진 法은 存在할 수 없으며, 物資의 管理, 生産過程의 「指示」를 할뿐이며 이것은 「技術的規則」이라 하였다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理論에 忠實한 나머지 그는 이처럼 特異한 法理論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第一期後半, 即 一九三〇年代에 이르러 蘇聯의 法思想은 重大한 試練期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때는 스탈린 獨裁下에 大衆 運動의 힘을 빌어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農業의 全面的 集團化를 한꺼번에 達成하려고 하는 「大躍進」을 꾀한 때이므로, 스탈린은 法律과 現實이 衝突하는 때에는 서슴지 말고 法律을 버리라고 主張했다. 슈트츠키는 即刻 스탈린의 法輕視態度에 正面에서 反對하였으나, 파슈카니스는 大躍進의 尙中에 뛰어들어 法에 대한 政治(政策)의 絶對的優位를 主張하고 變革期에 있어서 法의 體系化를 否定하고, 法은 지금 死滅의 過程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大躍進」이 中止된 一九三一年 以後 社會主義建設 및 發展에 있어서 法의 役割이 再確認 되었다. 一九三二年 以後 革命的適法性的의 意義가 새로 強調되고, 社會主義의 基礎가 確立된 以後의 蘇聯法의 積極的 存在意義가 確認되기 시작했다. 이때에 구루이렌코는 國家機關, 公務員, 市民等에 의한 法律의 遵守, 勞動者의 權利의 保護라는 意味에서 社會主義的適法性的의 原則이 強調되었다. 스탈린은 革命的適法性的의 強化는 「擄取階級의 最後의 殘存分子와 그 앞잡이와의 鬪爭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蘇聯의 法思想의 展開는 一九三六年 스탈린 憲法制定으로 一到達點에 達하였다. 이 憲法에서는 國家나 法의 消滅을 規定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無政府主義의 理論은 여기에 採用되지 아니했다. (蘇聯邦은 勞動者와 農民만의 國家라고 同憲法 第1條에서 規定하였기 때문이다.)

一九二九年 四月 스탈린은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精神에 完全히 合致되는 파슈카니스의 無政府主義를 採用하지 아니했다.

一八回 共産党大會席上에서 스탈린은 「資本主義包圍網과 軍事的 攻擊이 除去되지 않는限 共産主義時期에도 여전히 國家는 存在해야 한다」고 演說했다. 마르크스의 國家枯死說과 法否認說을 市民國家打倒의 戰術로 採用하고 革命以後에 오는 豫想外로 長期化된 過渡期를 넘기기 위한 口實로, 正統마르크스 理論을 버리고 國家와 法の 權威를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蘇聯法은 「市民法の 遺品」이 아니며 特殊社會主義法을 創造했다고 크게 소리쳤다.

이리하여 蘇聯의 法思想은 第二期에 접어 들었으며, 유난히 먼저 國家權威回復의 精神的土台로서 「祖國」이라는 用語를 쓰면서 讚美하였으며, 우라지미르, 그소브스키는 「世界觀으로서의 마르크스主義는 法學에 대하여서는 無益하다함이 立證되었다」고 까지 말했다.

### 法思想의 大轉換

第二期의 指導的法律家의 代表는 역시 비신스키(一八八三-一九五四)이며, 그는 파슈카니스의 法思想을 排擊하는데서 시작

했다. 그가 歷史의 舞台위에 浮上한것은 一九三三年 蘇聯 檢察 總長에 任命된 때부터이다. 그는 一九三六年에서 三七年에 이르는 동안 以前의 黨幹部들을 被告人으로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斷罪하는 大肅 淸法廷에서 檢察官으로 猛活躍을 한때부터 世界의 注目을 끌게 되었다. 그는 一九三〇年代後半의 스탈린의 不法彈壓을 理論化하기 위해, 裁判所의 任務는 「絶對的 眞實」을 確定하는데 있지 않고, 또 엄밀한 証拠에 의하지 않고, 被告人을 有罪로 処斷함은 正當하며, 反革命事件에서는 自白이 決定的 証拠가 된다고 主張하고, 被告人은 自己의 無罪를 立証할 義務를 진다하여 舉証責任을 被告人에게 轉嫁시키고, 共犯의 概念을 事實上 無制限으로 擴大하였다. 이러한 코에걸면 코거리식의 前近代的 刑法理論이 三〇年代 蘇聯에서는 公式的理論으로 通用되었으니 可恐할 일이다.

그는 一九三八年 모스크바에서 열린 「蘇聯 國家 및 法學의 諸問題」에 關한 第一回會議에서 「蘇聯社會主義法學의 基本任務」라는 題目으로 演說할때 「第一期의 法律家들, 特히 파슈카니스에 의해 發展시킨 蘇聯法 理論은 社會主義를 守護하는 싸움에 있어서 푸로레타리아트에게는 不適當한 研究이며 오히려 蘇聯政府 및 社會主義의 敵에 의해 利用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蘇聯人民의 敵이며, 反逆者, 挑發者들이라」고 하면서 公公然히 非難攻擊했다.

비신스키 檢事는 正統마르크스主義를 離脫하고 있는 自己發明을

하기 위해 오히려 正統마르크스理論에 忠實한 파슈카니스등을 反마르크스主義的이라는 汚名을 씌워 有罪処斷했다. 그는 「処罰 및 強制의 機關의 消滅을 敎說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동여 매어 가지고 우리들과 우리의 祖國을 破壞者, 暴力主義者 및 轉向者들의 盜賊의 魔手에게 내주려는 企圖의 表明이라」고 억지 말을 하기도 했다. 一九四八年에 發表한 一論文에서 그는 「終局에는 法은 死滅한다고 하는 理論的推斷은 蘇聯國家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쓰고 있다. 그가 檢事職에 있는동안 蘇聯檢察廳은 市民의 權利防衛에 關하여는 극히 消極的이었으며 人權이 유린된 事例가 허다했다.

法學界에 있어서, 비신스키의 權威는 獨裁者 스탈린의 權威에 의해 支持되고 있었다. 그의 權力中心의 法思想은 共產主義國家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法思想의 一典型이라 할 수 있다.

#### 스탈린死後의 改革 (社會主義的 適法性)

스탈린 死亡後 蘇聯政治의 土台가 크게 動搖됨과 同時에 法思想도 또 한번 大轉換의 陣痛을 거쳐야만 하였다. 一九五六年 第二〇回共產黨大會에서 스탈린個人崇拜를 否定한다는 方針이 決定되었으며, 大會閉幕後 전에 비신스키의 無慈悲한 彈壓에 의해 埋葬當한 슈트츠키, 구루이렌코, 파슈카니스등 第一期의 法律家들의 名譽回復이 發表되었으며, 그후 슈트츠키에 關하여서는 一九六五年 生誕 100年祝賀式이 盛大히 거행되었을뿐만 아니라, 그의 著作集이

다시 出版되었으며, 파슈카니스에 關해서는, 一九六八年 그의 業績을 追悼하는 集書を 가졌고 구루이렌코의 境遇에도 伝記가 出版되었고 그의 檢事로서의 論告集도 出版되었다.

한편, 비신스키에 關해서는, 그는 이미 一九五四年 駐유엔大使在職時 뉴욕에서 客死하였으나, 우선 그의 刑事法理論은 不法彈壓을 正当化한 그릇된 理論이라고 규탄을 받았으며, 이어 그의 法理論全體가 批判을 받게 되었다. 그는 스탈린의 그릇된 理論을 法學界에서 同調한 앞잡이라 하여 규탄을 받았다.

스탈린 死後의 改革은 社會主義的 適法性和 市民의 權利保障의 強化라는 路線을 志向하고 있으며 一九五八年 刑法改正에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이 表現되고 있다. 그러나 犯罪은 「法律에서 定하는 것」이라 하는 形式的基準을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二〇年代以來의 傳統인 「行為의 社會的危險性」이라 하는 實質的基準도 維持되고 있는 것을 볼때 (刑事基本法 七條) 前者에 의해 犯罪로 認定되는 行為에 關해서도 後者에 의한 評價에 의해, 或은 同志裁判所에 送致되거나 (社會的制裁의 代替) 或은 犯人이 付屬된 勤勞者集團에 對하여 再教育을 委任하는 方法(保證委託)이 採用되므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의 規定은 그림의 떡에 不過한 것 이 아닌가 의문이다

一九六〇年 第二二回 全党大會에서는 共產主義建設의 展開期에 있어서 社會科學의 任務의 強調와 從來의 그 方法을 嚴格히

批判했다. 一九六三年 「科学의 方法論的 諸問題」에 關한 蘇聯 科学아카데미幹部회의 擴大會議가 열렸으며, 主報告者 이리초프는 法学에도 言及하여 蘇聯法學의 未熟性은 「法學研究者가 根本的인 方法論的 諸問題에 대하여 充分한 注意를 하지 않고, 広範하고 豊富한 實踐的結論과 一般化에 對하여 과감하지 못하다」는데 原因이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科学과 實踐과의 結合을 強調하였으며, 國家的 建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法的志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最近의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 「法의 社會學的研究」 強調는 마르크스主義法學의 本來的性格의 回復을 一基調로 삼고 있으며, 이 本來的性格을 沮害하여온 스탈린·비신스키 批判을 端緒로 한다.

蘇聯의 同志裁判은 民衆自身の 自主的 組織으로 國家機關으로서의 通常裁判所로 부터 區別되어 發達해온 것이다. 이것은 勤勞大衆의 自主性의 全面的發展에 의하여, 人民에 의한 眞正한 司法의 民主化를 貫徹하려고 하는 것이며 人民의 自己 教育에 의한 刑罰의 死滅을 究極의 目標로 한다. 이것은 國家死滅과 共產主義的自治實現의 現實의 過程에서 把握되어온 것이며, 非스탈린化以後의 司法의 前進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社會主義的適法性의 確立과 同志裁判과의 兩立은 어려운 것이며 民衆의 自發性은 尊重된다고 하지만 그때문에 人權侵害의 危險性을 內包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스탈린 批判以後에 와서도 蘇聯의 現實은, 여전히 人權保障은 期待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 中共의 司法權獨立의 否定

一九五六年 二月의 蘇聯第二〇回 全党大會에서 시작된 스탈린 批判以後 蘇聯에서는 社會主義的 適法性의 理論이 前面에 提出되는 反面 階級鬭爭의 理論은 약간 後退한것 처럼 보였으나, 中共의 境遇는 이와 다른 特異한 立場을 固守하게 되었다. 卽 中共은 그해 四月 「프로레타리아트獨裁의 歷史的經驗에 關하여」라는 글에서 社會主義社會에는 矛盾은 없다고 하는 單純한 見解를 批判하고, 社會主義를 成立시킨後에도 역시 舊社會의 思想的毒素는 長期間 生殘하여, 數千萬의 사람들의 무서운 慣習의 힘과 鬭爭 하여야 한다함을 指摘하였다. 그해 10月 非스탈린化가 東歐에 波及하여 헝가리에는 反革命暴動事件이 發生했다. 中共은 十二月 「다시 프로레타리아트獨裁의 歷史的經驗에 關하여」論하고 社會主義國家 相互間, 共産黨과 共産黨間에도 矛盾이 存在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또 毛沢東의 「人民內部的 矛盾을 正當하게 處理하는 問題에 關하여」는 이 見解를 다시 發展시키고 있다.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와 프로레타리아트獨裁와의 關係에 關하여 中共은 蘇聯과는 서로 見解를 달리한다. 蘇聯에서는 現在 社會主義建設은 이미 完了하고, 全面的인 共産主義社會建設의 段階에 접어 들었다고 말한다. 一九五九年以後에는 지금까지 警察과 裁判所等 權力的 機關이 擔當하던 社會秩序維持의 任務中 一部를 勤勞者의 自治에 委任하는 대담한 政策을 決定, 實行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中共의 境遇에는 破壞分子 帝國主義, 國內의 帝國主義勢力 威脅의 增大에 直面하여 長期에 걸친 過渡期의 法の 性質이 問題로 되고 있다. 푸로레타리아트獨裁의 手段으로서의 權力作用으로서의 國家와 法の 役割의 強化를 要望하고 있다.

一九五四年, 中共憲法이 成立하였으며 (이는 二〇年後 一九七四年 改正) 人民代表大會를 基軸으로 國家機構의 體系가 編成되었으며 新司法制度도 最高法院을 頂點으로 整備되었다. 또 法院의 裁判 獨立의 原則도 憲法에 明記되었으나, 이 段階에서는 市民國家의 憲法에 있어서의 司法權의 獨立과는 當然히 다른 것이었다..

一九五七年 여름以來 政治上 및 思想上的 社會主義革命이라 할 수 있는 反右派鬭爭이 激烈하게 展開되었다. 一九五六年以來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幕이 열려 黨과 國家機關의 錯誤와 欠點에 關하여 널리 黨外人士의 意見을 들었다. 人民司法에 關하여도 여러가지 批判이 나왔다. 이때 右派 法律家들은 裁判의 獨立과 司法에 대한 黨의 指導의 排除를 主張하고 또한 被告人의 人權의 保障을 要求했다. 特히 黨의 人民法院에 대한 「指導」를 「裁判에 對한 干涉」이라고 非難했다. 따라서 裁判所를 黨으로부터 分離된 機關으로 하여야 된다고 要求하였으며. 社會의 모든 階級에 對하여 平等하게 奉仕하는 超階級的, 超政治的 鬭爭的 機關으로 해야 한다고 強力히 主張했다.

「百家爭鳴」에 對한 反右派鬭爭은 經濟上的 社會主義革命에 對한 政治思想上的 社會主義革命으로서 一九五七年 여름, 全國에 걸쳐 激烈하게 展開되었다.

中共憲法第七八條에서 「人民法院은 獨立하여 裁判을 行하며 法律에만 따른다」고 規定하고 一九五四年 公布한 人民法院組織法 第四條에서도 同一한 規定을 거듭 두고 있다. 右派法律家들은 이 條文을 根拠로 司法의 獨立을 主張하고 黨의 指導에 對하여 反對하는 理由로 삼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社會主義法에 있어서는 制定法規解釋은, 그 特異한 社會的, 政治的背景에 關한 知識에 의한 條文의 內在的 理念의 理解가 重要하며, 文理解釋은 단지 法體系의 骨組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不過한 때가 많다. 이점에 關하여 中共의 法學者 康樹萃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條文을 資本主義 國家의 憲法上의 司法權獨立과 같이 解釋할 수는 없을 것이며, 裁判所에서 嚴格히 法律에 비추어 具體的 事件을 裁判할 때, 다른 國家行政機關 및 人民團體와 個人의 不法 干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裁判所가 하나의 「獨立의 王國」을 形成할 수 있다함을 意味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그러므로 이 規定에 依拠하여 裁判所의 裁判工作을 特殊化하고 神秘化하고 黨에 對하여 獨立시켜 他國家機關에 對하여 裁判所의 獨立을 要求한다면, 그것은 이 憲法, 人民法院組織法의 規定의 精神에 相反한다. 왜냐하면 中共에 있어서는 國家權力은 不可分이며, 黨의 指導는 統一的인 것이다. 따라서 國家政治上에서도 「分工」 即 單純한 形式的 機能的 國家機關 相互間의 分業이 있을 뿐 「分權」, 即 實質的 權力의 真正한 分立은 있을 수 없다. 民主集中의 原理가 있을뿐 絶對的 獨立은 存在하지 않는다.

政法戰線上에서 三機關은 各기 專門的인 責任을 分擔하지만, 그것은 모두 党的 委員會의 統一的指導下에서 敵에 대한 鬭爭을 하는 機關이므로, 三機關의 活動目的은 完全히 一致된다. 卽이 三機關은 모두 反革命分子와 鬭爭한다는 共同任務를 實現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人民法院은 現在의 政治鬭爭의 情勢에 密接히 適合하여 正確히 政策을 把握하여 法律을 適用하여 孤立하여 事件을 處理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右派分子는 司法機關의 「性格의 特殊性」을 強調하고, 司法機關은 党的 指導밖에 孤立할것을 強調하지만, 萬若 裁判所의 特殊性 또는 重要性을 考慮한다면 이처럼 人民의 直接利益에 關係되는 重要部門이야말로 더욱 党的 絶對的 指導에 의해 保證되어야 할것이다. 人民法院은 方針과 政策等の 重大問題에 關하여 「党委」의 指示를 請할뿐만 아니라 同時에 具體的 訴訟事件의 裁判에 있어서도 역시 党的 指導를 받을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党的 具體的 訴訟事件의 指導를 가리켜 「党和 法の 不分離」라든가, 「裁判에의 干涉」이라 評한다는 것은 不當하며, 푸로레타리아트獨裁란 바로 이러한 「不分離」를 必要로 하며, 社會主義 建設은 바로 이러한 「干涉」을 要求하는 것이라함은 다시 한번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못하다면 人民法院은 反革命分子의 道具로 化할것이다.

康樹萃의 論文內容은 大體 以上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一九五八年 段階에 있어서 「司法獨立」에 대한 否定이 얼마나 徹底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한다.

모든 國家機關에 대한 「党的 指導」의 法的根拠를 中共法律家들은 그 憲法 前文 및 第一條에서 찾고 있으나, 文理解釈에 의해서는 이러한 結論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社會主義法體制에 內在하는 理念에 의하여 憲法解釋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치獨逸政權이 法規보다 民族精神 또는 總統이 法이라고 認定하는 것에 의거하여 裁判을 한 것과 差異가 없다고 할 것이다.

中共法律家들은 이점을 다음과 같이 辯明한다. 即, 國民黨의 六法全書의 精神에 對하여 批判을 加하고, 나아가 司法改革運動과 反右派鬭爭 등의 階級鬭爭이 여전히 存在하는 時期에 있어서는,

부르조아階級과 푸로레타리아階級の 法律觀과의 鬭爭은 이 二階級, 두개의 方向의 生死를 건 鬭爭의 한 反映이다. 부르조아階級的 法律觀은 右派分子가 社會主義法制에 對하여 攻擊을 加하는 思想的 武器와 資本이며, 그것은 政法幹部의 思想에 對하여 지극히 有害한 腐敗作用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中共에 있어서는 罪刑法定主義와 一事不再理를 비롯하여, 刑事裁判에 있어서 基本的 人權의 保障을 要求한다면, 이는 「旧法 觀點表現」이라 하여 오히려 그 反動性이 批判을 받게 된다.

即 裁判官의 獨立과 司法의 獨立은 否定되고 있다. 階級鬭爭과 犯罪鬭爭과를 結付시킨다.

이 점에서 一九五六年 스탈린批判以後 「社會主義的 適法性」을 主張하게 된 蘇聯의 境遇에 比할때 中共은 共產主義의 後進性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一九七六年의 毛沢東死亡이 二〇年前 蘇聯의 스탈린死後에 發生한 바와 같은 司法上的 改善이 이루어지는 契機가 될 것인지는 豫測하기 어렵다.

### 北韓의 恒久過渡期論과 人權不在

一九五六年 스탈린 批判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中共에서는 조금도 司法上的 改善이 엿보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의 境遇에도 하등의 變化를 보이지 않고 司法權獨立의 否定은 여전히 繼續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司法權獨立과 「過渡期」와는 關聯性이 있다. 蘇聯에서는 過渡期와 पुरो獨裁期間을 一致시키므로 前者가 끝나면 後者の 歷史的的使命은 끝난 것으로 본다. 이에 反해 中共에서는 共產主義는 몇世代에 비로소 實現되는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社會를 가리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와의 二個路線의 鬭爭이 存在하는 굉장히 長期에 걸친 歷史的 段階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पुरो獨裁는 長期間에 걸쳐 必要하다고 하며, 全過渡期에 걸쳐 पुरो獨裁는 必要하다고 한다.

北韓의 境遇에는 위의 中蘇 어느便에도 追從하지 않고 그 革命과 建設의 實踐的經驗에 기하여 主體를 徹底히 내세운다는 立場에서 獨創的理論의 展開라 하면서, 過渡期의 「界線」을 無階級社會까지로 劃하고, 社會主義勝利後 無階級社會로 되고 過渡期

任務가 完了된 後에도 여전히 푸로獨裁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即, 共產主義의 높은 段階까지는 푸로獨裁가 繼續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勞動者와 農民의 差異가 없어지고, 肉體勞動과 精身勞動의  
差異도 없어질때 비로소 높은 段階에 到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一九六七年頃の 論文에서는 아직 從來의 中産層의  
基盤이 殘存함을 指摘하였고 또 一九六七年의 論文에서는 「萬一  
世界 모든 나라에서 革命이 連續하여 發生하고, 全 世界的  
規模에서 資本主義가 滅亡하고, 社會主義革命이 勝利하는 날에는,  
過渡期와 푸로獨裁가 서로 一致하며 過渡期가 終了되면 푸로獨裁  
도 不必要없게되고 國家機能도 凋落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一國  
或은 一部地域에서 共產主義를 建設하는限 過渡期와 푸로獨裁와는  
不離시켜야 옳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一九三〇年代 스  
탈린이 一國 社會主義와 獨裁를 辯明하기 위해 말한것과 같은  
말에 不過하다. 이것은 이른바 恒久過渡期를 口實로 永遠히 人  
權侵害를 恣行하려는 態度라고 할것이다.

〔註〕：

- 1) ( 稻田定雄訳 「이 반데니소비치의 一日」 角川文庫版 二一九面以下 )
- 2) ( 藤田勇論文 現代 소비에트 사회와 法 「川島武宜編集 岩波書店 法社会学講座 第 10 卷」所収 一二六面以下 )
- 3) ( 針生誠吉著 中国의 国家와 法 東京大学出版会一九七〇年 八九面 )
- 4) ( Hans Kelsen, The Communist Theory of Law, 1955. P51 拙訳本이 있음 )
- 5) ( Hans Kelsen, ibid. P.140 )
- 6) ( 木村龜二編著 近代法思想史家들, 日本評論社, 一九六八年, 一七九面 以下 ) ,
- 7) ( 藤田勇論文 現代 소비에트 사회와 法 川島武宜 編集 法社会学講座 10 卷 岩波書店 一四六面, 沼田稻次郎著 增補法과 国家的死滅 法律文化社 一九七一年 一七六面 ) ,
- 8) ( 畑中和 夫論文 前掲岩波法社会学講座 2 卷所収 一五七面 )
- 9) ( 針生誠吉著 前掲書 六二面以下 )
- 10) ( 針生誠告著 前掲書 一四九面以下 )
- 11) ( 康樹萃論文 「司法独立的反動本質」 政法研究 一九五六年 二号 所収 五一面 )
- 12) ( 針生 前掲書 四一面 )
- 13) ( 尹明善 論文 北傀司法制度論 「共產主義問題 研究」 第五卷 第一号 ( 一九六八年 ) 一二二面參照 ) .
- 14) ( 針生 前掲書 一六〇面 以下 )



## 北傀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韓 泰 淵

( 国会議員 , 前 , 서울法大 教授 )

共産主義的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一般的性格

이른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불리우는 北傀憲法에 있어서도 제 4 장에 「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라는 名目으로 그 基本權을 規定하고 있다. 사실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도 1936年 이른바 스탈린憲法의 別名을 가진 소비에트聯邦憲法에 의하여 「公民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의 章에서 基本權을 規定한 이래, 제 2차大戰이후에 있어서의 東歐를 비롯한 소聯의 影響圈에 있는 衛星國家등의 이른바 人民民主主義的憲法의 基本權에 이르기까지, 共産主義國家에 있어서도 基本權에 관한 規定은 그 憲法의 重要的 部分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면 西歐的憲法에 있어서의 그 基本權에 관한 制度를 「뿌르조아의社會의 產物」에 불과하다고 非難하던 共産主義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憲法에 이와 비슷한 基本權의 制度를 導入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西歐的憲法은 미국의 獨立宣言과 프랑스의 人權宣言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自由를 위하여 투쟁하여 온 近代市民에 의한 「自由의 技術」 (la technique de la liberté)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의 그 基本權의 體系야말로 自由의 技術로서의 近代立憲主義的憲法에 있어서의 가장 本質的部分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共産主義的憲法에 있어서는 그것이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獨裁를 그 憲法의 基本秩序로 하는 한, 그것은 어

다까지나 「專制의 技術 ( technique de l'autorite ) 을 의미할뿐,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든지 「自由의 技術」은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그 憲法의 成文化는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그 「自由의 技術」로서의 手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階級獨裁를 恒久化하고, 또한 그들의 이른바 反動的勢力에 의한 反動的革命을 방지하려는 것과 같은 「權力의 手段」만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根本的인 구별이 있다. 사실 近代民主國家에 있어서의 그 成文憲法은 프랑스 人權宣言 第 16 條에 있어서의 「權利的 보장 이 確立되지 않고, 權力의 分立이 規定되지 아니한 社會는 憲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規定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그 國民의 未來에의 政治的設計를 의미하기 이전에, 個人 個人의 自由의 보장을 그 最高의 理念으로 했다.

따라서 오늘의 民主主義的 憲法理論에 있어서는 이러한 個人의 根本的인 自由에 의해서만 그 社會에 있어서의 모든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秩序는 形成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그 이른바 프로레타리아獨裁를 그 政治의 基本 理念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는 個人의 自由意思에 의한 社會秩序의 形成과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의 獨裁는 결국 專制的 權力의 문제이지, 결코 自由의 문제는 될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그 憲法의 基本權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 그 消極的 의미로서 그 宣傳的 効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自由의 技術과는 전혀 無關한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그 成文憲法이 어떠한 의미에서 宣傳的, 教育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基本權에 있어서도 이러한 宣傳的 性格을 무시할 수 없다. 西歐的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이 個人의 自由를 위한 權利章典을 의미한다면,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도 個人의 位置와 그 權利에 無關心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바로 그 宣傳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그 積極的 의미로서 우선 첫째로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政治, 社會, 文化, 經濟의 모든 分野를 막론하고, 또한 中央과 地方의 구별없이 모든 公民은 平等하다는 하나의 包括的인 法的 平等을 確立키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平等이야말로 그 國家的 独占經濟에 의하여 실현되는 共產主義理念의 核心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個人 個人에 있어서의 그 現在의 狀態를 보장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을 改造하여 그 理想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秩序로 強制로 끌고 가려는 政治的 手段, 즉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的人格權 (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rechte)의 確立을 의미한다.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그 憲法의 基本權은 國家的 權力和 個人의 自由로운 活動領域을 구분하고, 國家의 不當한 侵害로부터 個人의 自由로운 領域을 보장함으로써 個人의 自主的인 발전을 피하게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國家와 社會의 구별과 같은 西歐社會에 있어서의 傳統的인 觀念에 立脚하고 있으며, 비록 오늘의 一般的 傾向에 있어서와 같이 福祉國家的 傾向에서 國家的 權力的 擴大로 그 國家와 社會의 二元性이 喪失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엄연히 그 國家的 秩序는 個人 個人的 自由로운 활동에 의하여 形成되게 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個人的 自由로운 활동에 의한 國家秩序의 形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서는 國家와 社會의 구별, 그리고 國家로부터의 自由의 概念은 다만 資本主義的社會에 있어서만 타당한 概念으로 規定된다. 共產主義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國家와 社會의 構成員으로서의 個人간의 恒久的인 對立과 相剋에서, 그리고 資本主義的 經濟秩序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自由경쟁의 필요에서, 國家로 부터의 個人的 自由가 필요하다고 規定된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勝利로써 資本主義的 國家를 打倒하고 革命의 結果로써 國家의 모든 生産手段을 社會化할 때에는, 資本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와 같은 國家와 個人的 對立, 그리고 利己的인 個人的 利益과 利益의 對立은 소멸되고, 그 대신 프로레타리아의 國家의 利益과 個人的 利益은 根本적으로 一致된다고 規定된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國家的 利益과 個人的 利益의 一致는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와 같은 對立된 利益의 타협에 의한 그 利益의 平衡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社會的 利益의 絶對的 優越性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그 社會的 利益은 누가 規定하며, 또한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그것을 規定하는가?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社會的 利益의 規定은 그 獨點 政黨인 共產黨에 의하여 規定되고, 또한 그 社會的 利益의 優越性은 바로 黨의 指導의 理念에 의하여 代表된다. 그 결과 社會主義的 人格權으로서의 그 基本權은 결국 黨의 指導的 意思에 從屬된다. 물론 國家的 利益과 社會的 利益의 一致가 個人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게 될 때에는, 그 社會에 있어서의 自由는 진정한 의미의 自由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와 같이 國家的 利益과 個人의 利益의 一致가 共產黨에 의하여 代表되는 社會的 利益의 絶對的 優越性에 의하게 될 때에는, 그 憲法의 規定如何를 막론하고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그 基本權의 個人의 權利的 性格은 喪失되게 된다. 여기에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그 基本權의 決定的인 特色이 있다.

셋째로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社會主義的 人格權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國民을 그들이 理想으로 하는 「社會主義的 人間像」으로 改造하려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사실 民主國家의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主体는 國家이전의 「人間」이었고, 또한 그 權利는 國民으로서의 權利라기 보다는 國民이전의 「人間の 權利」(droits de l'homme)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共產主義的社會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社會主義的 人格權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을 위한, 또한 그 建設을 위하여 必然的으로 要請되는 「公民」으로서의 權利를 의미하고 있다. 그 결과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兎이 設定한 路綫에, 그리고 兎의 指導에 의한 社會主義的 發展에 모든 市民으로 하여금 自覺적으로 協調케 하고 또한 動員케 하는, 그 이른바 社會主義的 人間像으로 改造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主義的 人間像이 그 基本權의 唯一한 목적이 되고 있는 한,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權利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權利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의 義務를 의미하고 있다. 共產主義的 憲法의 規定에 있어서의 「權利인 동시에 義務이다」라는 規定이 흔히 발견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그 權利的 性格은 그 法的 해석에 있어서도 또한 否定되게 된다. 그 이유는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그 法秩序의 構造에 起因한다.

사실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社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憲法—法律—命令등과 같은 法規範간의 質的구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모든 法秩序는 바로 社會主義的 理念을 指向한 兎의 指導의 政治的 手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個人의 基本的 權利도 그 立法形式에 의한 自由로운 處分の 對象이 되게 된다. 그것은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法秩序 자체가 바로 兎의 政治的 指導의 手段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때, 그 指導를 위한 權力의 행사에 어떠한 制限을 加한다는 것은 바로 兎의 指導理念에 違背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자체가 國家나 또는 제 3 者에게 그것을 積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權利라기보다

는, 오히려 國家의 法律이 放置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게되는 하나의 「法の 反射」의 效果를 의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보아올때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憲法의 規定如何를 막론하고, 그것은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과는 전혀 그 性格을 달리하는 別個의 制度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福祉國家를 指向하는 오늘의 民主國家에 있어서도 그 基本權의 實體는 個人의 基本的 自由의 保障을 의미하는 自由權이며, 이른바 社會的 基本權 또는 生活權的 基本權등에 있어서와 같이 제 1차大戰 이후부터 새로이 등장한 經濟的, 社會的 基本權등은 自由權的 基本權에 있어서의 그 自由의 條件을 위한 補完的 基本權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처음부터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 權利를 中心으로 形成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른바 勤勞의 權利, 教育의 權利, 言論 出版, 集會등의 經濟的, 政治的 權利의 基調위에 그 밖의 모든 個別的 權利가 形成되고 있다. 그 결과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自由權, 특히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를 그 基本權에 있어서의 가장 基本的 自由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勤勞의 權利, 教育의 權利를 그 가장 基本的인 權利로 보고 있다.

그것은 특히 勞動階級의 獨裁에 立脚한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勞動만이 모든 價値의 生産, 그리고 勞動만이 人間의 生存과 社會的 發展의 基礎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教育의 權利를 가장 基本的인 權利로 보고 있는 이유는, 그 教育만이 人間을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的 人間像으로 改造하는데 있어서의 必須的인 手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떻든 共產主義的 憲法의 基本權에 있어서도 民主國家의 憲法의 基本權에 있어서와 같이, 身體의 自由, 宗教의 自由,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그리고 學問과 藝術의 自由등이 規定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 이러한 自由가 실제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러한 의문은 政治的 イデオロ기로서의 共產主義의 그 全體主義的 性格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解明되게 된다. 무릇 어떠한 全體主義를 막론하고 모든 全體主義는 真理는 다만 하나이라는 「絶對主義」(Absolutismus)에 立脚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絶對主義에 立脚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는 그 서로가 서로 容納될 수 없는 永遠한 敵對關係를 持續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民主主義는 共產主義와는 正反對의 「相對主義」(Relativismus)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相對主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信念나 信念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絶對的 真理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에 모든 사람의 主義와 主張을 平等하게 評價한다.

따라서 이러한 平等한 評價야 말로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自由, 특히 良心, 宗教,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의 基礎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나아가서는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그 固有한 多元的 政黨制(複數政黨制)의 基礎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共產主義는 다른 全體主義에 있어서와 같이 勞働階級의 利益과 같은 價値의 絶對主義에 立脚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은 必然的으로 그 社會에 있어서의 唯一한 真理로



인정되고 있는 勞動階級の 利益에 違背되는 行爲는 그들의 이른바 反動的 行爲로 規定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唯一한 價値는 다만 勞動階級の 利益이라고 規定할 때에는, 그 社會에 있어서의 政黨도 또한 勞動階級の 利益을 위한 政黨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政黨制가 單一政黨制에 立脚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제 2차 大戰이후에 있어서 東歐를 中心으로 한 이른바 人民共和國등과 같은 國家에 共產黨이외의 다른 政黨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共產黨이외의 다른 政黨은 勞動階級の 利益을 代表하는 共產黨의 路線을 支持하는 그 衛星政黨을 의미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그 基本權이 아무리 身體의 自由, 良心의 自由, 宗教의 自由,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學問과 藝術의 自由등을 詳細하게 規定한다고 할지라도, 그 自由는 결국 그 社會의 對的 價値를 의미하는 勞動階級の 利益과 一致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그리고 社會主義的制度的 強化를 위해서만 비로소 그것이 인정되고 있는 自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共產主義的 國家에 있어서의 그 憲法의 基本權의 永遠한 期滿性이 있다.

#### 北傀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北傀는 1948年8月 共聯의 스탈린憲法을 모방한 이른바 人民共和國 憲法을 制定했다.

그 후 5 차에 걸쳐 部分的인 修正을 加한 끝에, 1972年 12月 27日에 現在의 憲法으로 全面改正했다. 全文 11장 149 조로써 성립된 現行憲法에 있어서 그 基本權은 제 4 장에서 이른바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라는 名目으로 規定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全体的 性格도 이미 보아온 共産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性格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오히려 여기에, 在어서는 共産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性格을 좀더 대담하게 規定하고 있는 傾向이 있다. 즉 그 一例로 그 基本權의 原則을 規定한 제 49 조에 의하면,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 規定은 新憲法에 있어서 새로이 채택된 規定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注目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規定은 바로 나치스의 全體主義的 理論에 있어서도 그대로 발견될 수 있는, 말하자면 全體主義的 理論에서 共通되게 발견될 수 있는 不動의 全體主義的 哲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在어서와 같이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라는 테마가 그 社會에 在어서의 唯一한 價値의 規範으로 設定되고 있는 한, 여기에 在어서의 基本權은 엄격한 의미에서 個人을 喪失한 基本權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당연한 결과로서 그 基本權에 在어서의 權利는 主体없는 權利, 즉 全體에로의 強制를 위한 義務에의 變身을 의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그 제 50 조 2 항의 規定에 의하여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制度의 鞏固한 發展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 規定이야말로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에 있어서 그 基本權을 規定하게 된 가장 重要한 理由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社會主義制度의 維持發展을 위해서는, 모든 國民을 社會主義的 人間像으로 教育하고 改造하는 것만이 가장 有用한 方法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가 社會主義制度의 發展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社會主義的 社會가 勞動階級의 利益에 그 價値의 基準을 둔 全体主義的 社會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있어서의 그 社會主義的 制度의 發展은 個人의 自由를 縮少케 하거나 박탈하면 했지, 그 自由를 확대케 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을 의미할는지 모른다.

여기에 社會主義와 같은 全体主義社會에 있어서의 그 自由의 概念의 顛倒가 있다. 사실 民主主義的 社會에 있어서는 自由의 主体는 언제나 個人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個人을 떠나서는 절대로 自由의 概念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共產主義와 같은 全体主義에 있어서는 自由의 主体를 個人으로 보지 않고, 全体人民, 勞動階級, 國家와 같은 全体를 自由의 主体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自由란 個人이 나면 서부터 타고난 先天的인 것이 아니라, 自由의 主体인 國家로부터 配給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비로소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專売特許로 간주되고 있는 「解放」의 概念이 발생하게

된다. 그들의 解放의 概念에 있어서 그 解放者는 프로레타리아를 그 基體로한 國家이며, 따라서 個人은 이러한 프로레타리아의 國家에 歸依할 때에 비로소 奴隸로부터의 解放과 그리고 참다운 의미의 自由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 共產主義가 하나의 政治的 宗教를 의미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資本, 資源, 土地, 工場 및 對外貿易등과 같은 일체의 生産手段과 일체의 經濟的 經營을 國家가 独占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個人의 生存을 결국 國家的 給付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다.

共產主義國家를 巨大한 配給機構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北傀의 基本權에 있어서도 그 제 56 조에 「公民은 勞動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勞動能力이 있는 모든 公民은 희망과 能力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여 安定된 일자리와 勞動條件을 보장받는다」라고 規定하여 職業選擇의 自由가 있는듯이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生必物資의 配給制가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 國家와 黨이 指定하는 職場에의 就職拒否는 결국 그 자신의 自殺을 의미한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職業의 自由를 따로이 規定하지 않고, 勤勞의 權利속에 그것을 規定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아니라 北傀는 그 基本權에 있어서 그 제 69 조에 「勞動은 公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榮譽이다.

公民은 勞動에 自覺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勞動規律과 勞動條件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勞動의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勞動의 義務에 관한 規定은 그들이 인정한다는 職業選擇의

自由와는 결코 兩立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의 이른바 勞動의 權利는 職業選擇의 自由가 인정되지 않는 勞動의 義務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勞動의 義務야말로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그 惡名높은 強制勞動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의 승리는 로렌츠·론·슈타인 (Lorenz Hon Stein)의 指摘에 있어서와 같이 그것은 「自由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不自由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北傀憲法の 基本權에 있어서는 그 제 53 조와 제 54 조에 또한 宗教의 自由,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53 조 2 항에 있어서는 「國家는 民主主義的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보장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다만 宗教의 自由를 規定한 제 54 조에 있어서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宗教의 自由에는 어떠한 宗教를 가지든 또는 전혀 宗教를 가지지 않든 그 모든 것이 自由라는 의미에서, 反宗教의 自由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한 論理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여기에서 특별히 規定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反宗教의 自由에 의하여 宗教의 自由를 抹殺하려는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그 이른바 「宗教는 阿片」이라는 그 固有한 唯物論的思想의 必然적인 締結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등에 있어서도 그 自由는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와 같은 相對主義的 世界觀에 立脚한 自由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의 獨裁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的 制度를 支持하는 범위안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있는 自由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共產主義와 그 政權을 인정하고 支持하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는 自由이지만, 그것을 反對하는 自由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의 自由에 불과하다.

과연 北傀의 憲法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뿐만 아니라 그 基本權에 規定된 모든 權利와 自由는 다만 一定한 범위안에서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 67 조 및 제 68 조의 規定이다. 제 67 조에 있어서는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遵則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또한 제 68 조의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히 찬양하여야 한다. .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 規定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遵則」, 또한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과 같은 共產主義的 社會에 있어서의 그 支配的 價値는 바로 그 基本權에 있어서의 權利와 自由의 內容과 범위를 決定하는 決定的인 規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제 53 조 2 항에서 規定하는 그 이른바 政黨과 社會團體의 自由도

이상의 범위안에서만 그것이 인정된다. 그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共產主義的 全体主義에 있어서는 共產黨만이 勞動階級の 利益을 代表할 수 있는 唯一한 政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北傀에 있어서도 北朝鮮民主黨, 天道教靑友黨 등과 같은 政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政黨도 프로레타리아 獨裁와 그리고 北傀의 그 이른바 社會主義的 制度를 인정한다는 條件 밑에서 結成된 政黨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그들의 執權黨인 朝鮮勞動黨의 路線에 追從하는 傀儡政黨을 의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어떻든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의 基本權은 存在하지 않는다.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全体」를 그 社會에 있어서의 唯一한 價値의 規範으로 規定하는 한 여기에 있어서는 그 全体를 위한 附屬品으로서의 部分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意思에 따라서 자기의 幸福을 追求하는 個人은 결코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個人의 存在가 否定된다면, 그것은 결국 基本權 그 자체의 終末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오늘에 있어서의 人類의 진정한 危機가 있다.

# 北韓住民의 不滿要因

權 光 明

( KBS 社會教育 專門委員 )

## 序 論

北韓住民들의 不滿을 把握하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北韓住民들의 不滿要因을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 北韓住民들을 對象으로 일일히 調査함으로써 分析하는 것도 重要的 方法中的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政策의 效果나 是正을 要하는 事項을 把握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現場調査方法만이 最上の 것이 아닐 것이다. 더우기 北韓住民들의 不滿要因分析의 目的이 北韓住民들을 對象으로 하는 意圖的 立場( 広範圍의 )이라면 北韓住民들이 處한 狀況의 諸般條件을 前提로한 不滿可能要因의 탐색에 의한 分析이 優先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現在로서는 直接的인 現場調査가 不可能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重要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는 現象的 事項에 집중하기 때문에 根原的 要因追跡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現象的 不滿의 發展過程에 對한 生理的 또는 心理的 機制( Physiological or Psychological Mechanism )의 把握이 소홀히 되기 쉬우며 不滿의 現象을 分類하는데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즉 標的對象( Target Audience )에 대한 企劃이 意圖하는 目標에 接近시키기 위해 計劃된 反應을 意圖적으로 誘發시키고 또한 誘導하기 위한 立場<sup>(1)</sup>에서 본다면 不滿現象을 나타내게된 心理的 構造와 이러한 構造를 통해서 可能하기 위한 刺戟으로서의 要因,



그리고 不滿의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대한 分析에 보다 比重이 주어져야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人間에 의한, 人間을 對象으로하는, 意圖的 企劃을 위한 設計를 결코 人間에 의한 皮상적 結果만으로는 解決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人間の 行動이 多樣하고 行動의 範圍가 넓기는 하지만 人間の 行動에도 基本이 되는 法則的 原理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法則的 原理에 의해서 行動의 現象的 狀態를 生成하는 條件이 어떤것임을 안다면, 적절한 條件을 人爲的으로 造成함으로서 意圖的으로 그러한 行動을 誘發시킬 수 있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行動을 誘發하는 條件을 排除함으로써 發生이 가능한 行動을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造成되어 있는 條件에 의한 誘發可能行動을 予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不滿의 現象的 把握보다도 不滿의 心理的 機制를 中心으로 北韓住民들의 不滿으로 가능한 要因들을 社会的 側面의 條件에서 把握함으로서 그 構造的 原理를 記述해 보고자 한다.

## 不滿의 心理學的 意義

人間の 모든 不滿은 慾求에서 비롯된다. 人間은 自己에게서 생기는 慾求를 充足시키지 못 할때 不滿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不滿의 狀態는 또한 여러가지 形態로 表現되게 된다<sup>(2)</sup>. 다시 말해서 人間の 모든 行動은 自己의 慾求充足의 方向으로 指向된다.

그것은 發生되는 慾求를 充足시킴으로서 生理的인 滿足感과 心理的인 均衡感 즉 安定感을 維持함으로 해서 快感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慾求充足의 行動이 妨害를 받거나 沮止되었을 때 人間은 不滿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不滿은 그 原因이 身体的이거나 精神的이거나 간에 心理的인 不均衡의 狀態를 가져오게 되고 또 不均衡이란 非正常的인 狀態는 正常的인 活動을 할 수 없게 한다.

人間은 生活을 營為하기 위하여 不斷히 行動을 持續하며 이러한 行動은 生活을 營為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慾求를 充足시키기 爲한 目的을 지닌다<sup>(3)</sup>.

生活을 營為하기 위한 人間의 慾求是 또한 生命을 維持하기 위해 呼吸에 必要한 酸素, 먹을 飲食, 마실 물, 身體内部로 부터의 排泄, 그리고 體溫을 一定하게 維持하기 위한 慾求가 있는가 하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必要하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名聲을 얻으려는等 많은 慾求들이 있다.

前者를 身體的 慾求 또는 1次的 慾求라고 한다면 後者は 非身體的 慾求 또는 2次的 慾求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범수에 屬하는 人間의 慾求是 多樣하고 匹範圍하다. 그러나 이러한 慾求들은 人間이 살아가고 生活을 營為하는데 必要한 基本的 慾求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1次的 慾求가 2次的 慾求보다 優先的이거나 2次的 慾求가 1次的 慾求보다 弱하다는 것은 아니다<sup>(4)</sup>. 사람이 우선 生命을 維持하기 위하여 숨을 쉬어야 하고 生活活動을 위해서 飲食物을 섭취하여야 하지만, 돈이 必要해서 애써 돈을 모았어도 돈을 벌기 위해 健康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財産을 모은 後에 健康이 나빠져 죽은 例도 있다.

또 1次的慾求를 身體的慾求라고 하는데, 2次的慾求를 心理的慾求라고 한다고 해서 身體的慾求內에 心理的慾求의 要素가 排除된 것도 아니며 心理的慾求에 身體的慾求의 要因이 不在한다는 뜻은 더욱 아니다.

人間은 모든 刺戟을 受容하고 刺戟에 대해 反應을 나타내는 有機體이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有機體의 反應은 身體的인 過程에 의한 刺戟-反應過程에 반드시 心理的인 節次와 現象을 수반한다<sup>(6)</sup>.

1次的인慾求가 有機體의 生理的土臺에 의해서 發生하지만 이러한慾求를 充足시키기 위한 行爲의 表現은 社會的 生活에 의해서 發生하기 때문에 2次的慾求를 社會的慾求라고 하기도 한다<sup>(7)</sup>.

따라서 人間의慾求發生의 根源이 生理的土臺에 의한 것이거나 社會的 環境에 의한 것이거나 간에 반드시 心理的 知覺節次를 거치게 되며, 따라서慾求充足에 대한 妨害나 沮止는 人間의 內的均衡을 破壞하게 되고, 內的 不均衡은 不滿을 誘發케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生活過程中에서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疲勞하다는 등은 生理的慾求의 原因이고, 또 돈이 있어야 한다. 名譽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必要하다는 등은 心理的慾求의 根本原因이 된다. 이러한 原因은 무엇을 먹어야 하겠다; 飲料水를 마셔야 하겠다. 休息을 취하여야 하겠다는 生理的慾求와 돈을 벌어야 하겠다. 名聲을 얻어야 하겠다. 또는 누구와 사랑을 해야 하겠다는 心理的慾求를 誘發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慾求는 비록 그것이 生理的이건 心理的이건 간에慾求發生 自体는 이미 心理的인 內的 均衡의 欠如狀態를 意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慾求是 均衡維持의 欠如된 狀態를 回復하기 위하여 飲食物과 飲料 水를 찾고, 休息할 수 있는 物件을 탐색하며, 돈을 벌기 위한 手段을 강구하고 사랑의 相對를 찾는 行動으로 指向되며, 이 目的이 達成됨으로서 快感과 心理的 安定을 누리게 되지만, 慾求充足을 위한 行動이 沮止나 妨害를 받게되면 不滿을 誘發하게 된다<sup>(8)</sup>. 이러한 不滿은 우선 內的 均衡狀態를 維持할 수 없게하며 心理的 不安定과, 不快한 狀態를 造成하기 때문에 緊張을 일으키게 한다.

이 때에 誘發되는 心理的 緊張은 不滿을 克服하기 위한 自己防禦 機制 ( Self-Defence Mechanism ) 的 形態를 지닌다. 즉 慾求充足을 위한 人間의 모든 行動은 自己에게 有利하게 指向되기 때문에 不滿을 克服하기 위한 人間의 行動은 반드시 그러한 不滿의 狀態에서의 脫皮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脫皮된 結果가 心理的 內的 不均衡을 解消하고 나아가서 安定感和 快感을 다시 누릴 수 있는 方向으로 推動된다. 그렇기 때문에 自己防禦的으로 作用하는 心理的 緊張은 不滿의 對象의 要素에 대해 忿怒, 抵抗 ( 또는 反感 ), 暴力 ( 破壞 ), 反撥의 即時的 類型과 不滿對象의 要素에 대한 두려움, 不滿對象의 要素에 의한 麻痺나 被支配의 消極的 類型으로 나타난다. 前者의 경우는 不滿을 克服하기 위한 行動이 主로 外現化하며 積極的이고 大體로 力動的 ( Dynamic ) 인 反面에 後者의 경우는 比較的 合理主義的인 傾向으로서 消極的이며 論理的 이긴 하나, 때에 따라서는 不滿을 解決하기 위한 行動의 趨動 ( Drive )<sup>(9)</sup>이 消滅해버리거나 抑制되어버리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不滿克服의 指向的 行動은 社會的 規範이나 道德

및 倫理觀에 의해서 積極的인 動因이 合理主義的인 方向으로 誘導되기는 하지만, 人間의 慾求充足을 위한 推動性은 相對的이기 때문에 지나친 社會的 統制나 抑圧은 오히려 合理主義的 傾向 自体를 積極的인 形態로 轉換하게 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慾求不滿이란 慾求充足을 위해 追求되는 人間生活에 대해 統制, 監視, 制限, 抑圧, 干涉, 禁止 등의 要因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不滿에 의한 內的인 不均衡의 心理的 要因을 累積시켜가기 때문이며, 비록 어느 한 刺戟이 即刻的 反應을 일으킬만한 強度가 되지 않더라도 一般 人間의 内部에 受容된 刺戟은 反應을 수반하지 않아도 人間이라는 有機體의 内部에 殘滓하며 이러한 殘滓는 類似한 刺戟이 行動을 誘發할 수 있는 強度에 이르기 까지 累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人間의 모든 知覺이 外部的 事件의 內面化된 結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10)

人間의 慾求是 行動을 作用시키며 行動을 引導하지만, 그 結果로 생긴 行動은 外部的 世界 즉, 環境에 變化를 生成시킨다. 따라서 人間의 行動이 目的이나 達成할 目標을 지니고 있다면 人間의 不滿은 目的達成에 必要한 것이 欠如되거나 要求되는 事項이 탈취되거나 또는 進行되는 行動過程에서의 障礙에 의해서 發生하기 때문에 環境을 慾求에 充足될 수 있도록 創造하거나 破壞한다. 그러나 慾求充足을 위한 不滿의 解決은 어느 경우에서나 可能하다.

## 北韓住民의 不滿要因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北韓住民들의 不滿要因은 우선 北韓住民들이 人間이라는 機制를 바탕으로 하는 社会構造的 与件이 檢討되어야 하며 이러한 要因이 不滿으로 可能的 心理的 作用이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 (1) 北韓의 社会構造

北韓社会는 그 組織体系가 全体主義와 独裁主義를 指向하는 共産黨組織을 骨幹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朝鮮勞動黨>으로 表現되고 있는 이들 共産黨員들은 金日成 共産独裁를 위한 하수분자들로서 共産独裁體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北韓社会의 모든 行政組織과 生産組織을 管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學校組織과 軍隊組織까지 統轄하고 있다. (11)

또 이러한 黨組織은 그들이 指向하는 共産独裁體制를 維持, 存続시키기 위하여 共産黨의 前衛的 役割을 하는 2次組織을 또한 掌握하고 있다. (12) 即 14才以上 30才未滿의 모든 靑少年 男女들을 對象으로 吸收하고 있는 <社勞靑>組織, 全体女性을 包括하는 <女盟>組織, 全体勤勞者들을 包括하는 <職業同盟>, 全体農民을 包括하는 <農勤盟> 등은 黨員이 아닌 모든 女性, 勤勞者와 農民 그리고 심지어는 靑少年 男女들을 勞動黨이 管掌할 수 있도록 組織한 團體들이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의 大部分은 全体住民의 約 12% (13) 에 달하는 共産分子들의 統制下에 속박되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것은 金日成 한사람이 소위 國家主席이라는 자리를 비롯하여

党的 實權的 上位機關으로서의 <政治委員會>와 <政治委員會 常任委員會> 委員長職을 兼職하면서 <黨秘書局>을 통하여 <內閣>, <最高人民會議>, <人民軍>을 비롯하여 <裁判所>, <檢察所> 등 各 分野에 대해 絶對權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金日成의 絶對權의 影響圈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도 없지만 住民들의 意思反映을 위한 壓力團體로서는 더욱 不可能하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모든 生活은 家庭生活이나 職場生活, 兵營生活 그리고 學校生活을 막논하고 全体主義的이고 機械主義的인 劃一的 政治生活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가 없는 實情에 있다.

이러한 北韓社會의 構造的 體系는 北韓住民들에 대한 基本的 慾求의 指向을 沮害할 뿐만 아니라 人間本來的 生活慾求의 推進을 抑壓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住民들의 可能的 生活의 範圍를 最少限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最少화된 生活의 可能限界를 부여하는것조차 金日成에 對한 無條件的 服從<sup>(14)</sup>을 條件附로 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모든 行動은 強要된 範疇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은 비록 北傀가 表面上으로는 勞動者 農民을 위한 民主的 政治形態를 標榜하고 있기는 하나, 1947年부터 最高人民會議代議員 選出에 있어 黑白函制度를 實施함으로써 單一候補에 대한 贊反의 意思를 묻던것이 1962年 第3期 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舉以後로는 이른바 單一函制를 實施함으로써 單一候補에 대한 贊成意思만을 強要<sup>(15)</sup>한 事實이 이를 立証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들은 各已 自己가 所屬하고 있는 各種組織의 組織成員으로서만 可能하기 때문에 이러한 組織으로부터 賦課되

는 課業 또한 履行에 絶對性을 지닌다. 그것은 비단 人間이 社会生活에서 集團的 所屬에 의한 社会成員으로서의 自己任務遂行은 어느 社会에서는 当然한 일이지만 北韓住民들의 경우는 住民個個人이 所屬하고 있는 組織의 上位組織인 黨으로 부터 一方的으로 課業이 賦与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課業은 強要되는 要求에 대하여 北韓住民으로서의 生活을 可能케하는 反對給付的인 條件이기 때문에 心理的 抵抗을 誘發하더라도 이를 受容하지 않으면 안되는 強制的 狀況이 不可避하게 된다. 왜냐하면 北韓住民들에게 주어지는 課業은 賦課의 意義만으로 可能한것이 아니라 課業遂行의 実績을 일일히 評價함으로서 北傀가 強要하는데 대해 反對給付的으로 부여되는 條件의 比重을 輕減시키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共產獨裁를 위한 北傀黨의 囑포는 모든 住民에 대한 強要가 金日成唯一思想에 歸一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의 行動自体를 機械化할 것을 항시 要求하고 있다. 北傀의 共產獨裁 維持를 위한 唯一的 体制가 北韓住民에게 強制하는 것으로서는 最少限의 基本的 人權조차 可能하게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이 追求해야할 價值觀을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達成해야할 社会構造的 價值觀의 慾求가 強制性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追從하고 맹종해야하며 나아가서 個人的 自己生活의 未來에 대한 希望이나 期待가 있을 수 없다. 黨이 一方的으로 強要함으로 해서 破壞된 自己內的인 心理의 不均衡은 復旧를 위한 方向感覺이나 推動力이 社会構造的 与件에 의해서 麻痺되고 있다.



## (2) 出身性分

北傀는 人間의 社会活動에 대한 價值基準을 階級的 出身性分에 두고 있다. 軍에 있어서 処遇와 進級을 決定하는 基準이 이른바 党性이기 때문에 出身性분이 復雜한 階層일 경우에는 入隊조차 不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出身性분이 敵對階層에 屬할 때에는 上級學校에 進學이 不可能하고 또 各級學校 學生들의 學業成績評價도 原來의 순수한 學問的 優秀性이 아니라 學園內에서의 政治的 活動에 依한 이른바 共產主義的 思想武裝의 強度를 基準으로 評價된다. (16)

이러한 北傀의 階層構造的 條件에 依한 制裁는 人間에 있어서 2次的 慾求의 原來의 指向을 탈취해 버린다. 即 能力이 있어도 이를 認定하지 않으며 意慾이 있어도 許容하지 않고, 慾求가 있어도 그 慾求를 實現할 수 있는 機會를 탈취해 버림으로 해서 內的 均衡의 維持를 不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不均衡의 復旧를 爲한 心理的 推動을 金日成에 對한 맹종으로 대치하려 劃策하며 이를 可能케 하기 위하여 最少限의 慾求지탱을 可能케 하는 生活의 條件을 條件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北韓住民들의 不滿의 發生 根原은 여기에 있으며 우선은 먹고 살기 위해 마음에는 없어도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不受容的 強要事項은 不均衡의 狀態를 더욱 惡化시키며, 惡化된 心理的 不安定은 安定으로의 回復力量에 對한 加重的 力動性을 增進하며 累積시키게 된다.

### (3) 住民生活

北韓에서는 私有財産制度를 撤廢함으로써 農業經營者는 農業勞動者로 轉落하였고 都市商工業者는 工場勞動者로 轉落하였다. 主食의 경우 農民들은 分配에 依하고, 勞動者와 其他 住民들은 配給制에 依해서 分配 또는 配給을 받고 있다. (17) 또 副食은 原則上 自由選擇購入이 許容되고 있으나 品種이 單調롭고 絶對量이 不足하며 또 一律的인 生産으로 인해 質이 極히 不良하다.

住宅은 集團化된 조립식 아파트의 협소한 空間面積에서 共同群居形式에 依存하고 있다. 衣服도 低質의 淸에 極히 單調롭고 劃一化되어 있으며 住民에 대한 黨의 <節約하고, 節約하고 또 節約하자> (18) 라는 내핍의 強要로 因하여 衣服自体에 對한 關心조차 抑制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個人의 收入이 關心에 이를 만큼의 範圍조차 許容하지 않고 있다.

또 劃一的 共同生活의 慣習을 注入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의 기틀을 잡으려는 託兒所制度가 勞動者, 農民, 심지어는 女性의 勞力조차 搾取해 내는데 貢獻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家庭은 共產主義的 全体主義가 要求하는 集團主義的 組織生活의 最小單位의 基本構造로서 存立하는 意義 (19) 以外에는 없다.

即 北傀는 北韓住民들에 對하여 人間의 本性的 慾求充足 行動의 可能性을 박탈하거나 탈취함으로써 그들의 住民에 對한 핏포가 빛어낼 住民들의 內的 均衡回復의 推動力 即 不滿을 解消하기 爲한 指向性을 事전에 意圖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北傀가 抑壓을 견지할 수 있는 能力의 限界와 逆으로 抑壓의 加重力과 더블

어 反動的 住民들의 推動力이 內的으로 累積되고 있음은 당연한 論理의 帰結이 아닐 수 없다.

#### (4) 其他要因

1958 年末부터 始作한 5戶擔當制는 北韓의 全世帯를 5戶씩 나누어서 熱誠黨員 한사람을 配置하여 家庭生活을 指導한다는 口實으로 夫婦間의 愛情生活에까지 干涉과 監視를 하게 하고 있다 (20).

黨의 許可없이 는 마음대로 移住할 수 없다. 任意로 옮겼을 경우에는 住居登錄이나 住民登錄을 못하므로 食糧配給을 못받으며 <不純分子>로 낙인이 찍혀 보다 苛酷한 制裁와 監視가 가해진다.

공개적으로 男女間의 愛情에 對한 意思를 表示할 수 없으며 黨의 許可없이 는 結婚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結婚年令도 制限한다. 뿐만 아니라 黨의 信任度와 忠誠度 그리고 出身性分에 따라 職業도 黨이 選擇하고 職場配置도 黨이 定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더우기 北韓住民들에 對한 統制와 監視를 強化하기 爲해 北傀는 既存機構인 <社會安全部>外에 1973 年부터는 이른바 <政治保衛部>까지 만들어 北韓住民들을 抑壓하고 있다 (21).

이러한 事項들은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北韓住民들의 生活營爲를 爲한 1次的 慾求와 2次的 慾求等 基本的 慾求를 沮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함으로써 不滿의 生成余地를 充分히 立証해주고 있는 反面에, 지나친 統制, 監視, 干涉, 抑壓의 諸般措置가 그만큼 北韓住民들의 不滿的 狀態를 또한 反証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以上에서 大體로 살펴본 바와 같이 北傀는 社會構造에서부터 發生되는 唯一的 思想의 強制性이 住民의 모든 基本的 人權의 余地

를 排除, 消滅하고 있는 한편, 그러한 余地의 可能性을 우려한 나머지 制限, 統制, 抑壓, 監視, 干涉, 禁止의 形態로 住民들의 生活活動을 속박하고 있다. 이러한 속박은 人間의 生活營為를 爲한 慾求의 達成機會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러한 現狀自身이 不滿心理의 現實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以上の 狀態로 發展할 可能性을 항시 잉태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機會의 박탈로 因하여 誘發되는 不滿을 復旧하여 均衡에 이르려는 推動性을 北傀는 金日成唯一思想으로 代置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達成目標에 對한 住民들의 慾求充足 포기나 慾求 自体의 消滅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 北韓住民의 不滿實態

다음은 越南歸順者 및 歸順間諜들에 對하여 이들이 越南前에 있었던 北韓에서의 犯罪事件을 아는 대로 진술하게 한 後, 진술된 事例들을 아이템別로 整理한 資料(※ 統一院資料)中에서 全體的인 不滿事例의 集計된 部分을 발췌한 것이다(아래表 參照)

<表>

北韓住民의 不滿實態

| 범 주                 | 불 만 요 인    | 계 층 구 분 |      |       | 계   |
|---------------------|------------|---------|------|-------|-----|
|                     |            | 핵심군중    | 기본군중 | 복잡한군중 |     |
| 계급차별                | 신분이력,은폐,고통 | 4       | 17   | 20    | 41  |
|                     | 계급차별       | 3       | 31   | 27    | 61  |
|                     | 공산정권협오     | 11      | 39   | 46    | 96  |
|                     | 소 계        | 18      | 87   | 93    | 198 |
| 획일적<br>분배체제         | 식료품부족      | 4       | 34   | 2     | 40  |
|                     | 재산물수       | 2       | 3    | 9     | 14  |
|                     | 당경제정책      | 15      | 15   | 3     | 34  |
|                     | 생필품부족      | -       | 15   | 2     | 17  |
|                     | 생활활고       | 1       | 4    | 1     | 6   |
| 소 계                 | 22         | 71      | 17   | 111   |     |
| 강제노역                | 강제노동       | 2       | 44   | 15    | 61  |
|                     | 강제군복무      | 3       | 24   | 5     | 32  |
|                     | 납과강요       | 2       | 2    | 2     | 6   |
|                     | 소 계        | 7       | 70   | 22    | 99  |
| 사회적우위<br>의가치관<br>강요 | 결혼억제       | 2       | 18   | 4     | 24  |
|                     | 사회체제       | 19      | 121  | 25    | 165 |
|                     | 복송교포의불만    | 1       | 11   | 2     | 14  |
|                     | 소 계        | 22      | 150  | 31    | 203 |
| 부당처벌                | 당간부횡포      | 16      | 71   | 11    | 96  |
|                     | 숙청·종파분자처리  | 15      | 19   | 14    | 48  |
|                     | 소 계        | 31      | 90   | 25    | 144 |
| 우상화강요               | 김일성우상화     | 7       | 45   | 17    | 69  |
|                     | 신앙억제       | 4       | 9    | 16    | 29  |
|                     | 창의력억제      | 1       | 1    | 1     | 3   |
|                     | 소 계        | 12      | 55   | 34    | 101 |
|                     | 총 계        | 112     | 523  | 222   | 856 |

우선 이 表에서 나타난 不滿의 全体的 實態는 社会的 優位の 價值觀強要에 對한 不滿이 가장 높다. 그리고 다음으로 階級差別, 不當處罰, 劃一的 分配體制, 偶像化強要的 順이며 強制勞役이 가장 낮다. 이러한 結果는 北韓住民들의 不滿要因이 1次的 慾求에 對한 不滿에서 보다 2次的 慾求에 對한 不滿이 優先하고 있음을 뜻하며 2次的 慾求에 對한 不滿은 心理的 不均衡의 狀態가 支配的이라는 意味로 解釈될 수 있을 것이다. 卽 人間다운 処遇를 못받고 被動的 生活에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構成比로 보아 基本群衆이 絶對多數이기는 하지만 基本群衆일 수록 不滿의 程度가 높은 것은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生活營爲를 爲한 人權이 그만큼 抑壓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核心群衆의 不滿은 核心群衆이라고 해서 基本的 人權이 全적으로 認定되는 것은 아니지만 強制勞役에 對한 不滿이 가장 낮고, 偶像化強要, 階級差別의 順位로 높아져 가고있는 現象으로 보아 黨員의 絶對的 優位體制를 反證하고 있기는 하나, 核心群衆이 階級構造上에서 바라는 慾求의 水準에 現實的 滿足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비록 人間이 慾求充足의 1段階的 目標達成은 繼續해서 生成되는 2段階的 目標의 設定으로 發展한다는 基本原理에 입각해서 理解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反面에 複雜한 群衆의 階級的 差別, 偶像化強要, 社会的 優位の 強要에 對한 不滿의 順位傾向은 核心群衆의 그것과는 상치되고 있으며 이는 自身の 出身性分에 對한 北傀의 1次的 慾求制裁는 감수할 수 있으나 心理的 不均衡을 回復하기 爲한 機會抹殺과 彈壓은 상당한 反

發的 要因으로 内面化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특히 基本群衆의 社会的 優位の 価値觀強要에 대한 不滿과 不当 処罰에 對한 不滿은 역시 基本群衆이라고도 하지만 이들에 對한 北傀의 諸般措置나 社会構造的 體制가 基本群衆의 期待慾求에 相應 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強制勞役에 對한 不滿이 一般的으로 낮은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것은 核心群衆에서는 階級的 優待에서 오는 現象이라고 한다면 複雜한 群衆에서는 生計維持를 爲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基本群衆의 경우에서도 北傀가 強要하는데 對한 反對給付의 條件으로서 合理化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제까지는 基本群衆以上の 群衆에서는 이른바 <社会主義建設을 爲한 革命的 課業>으로서 一般화된 認識의 結果라는 點도 그렇다고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며, 核心群衆에서 不当処罰에 對한 不滿이 가장 높은 現象에서 그 反証的 根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日成偶像化에 대한 参与가 결국 核心群衆으로서의 期待感에 對한 慾求의 充足 보다도 自意거나 他意거나 간에 偶像化強要에 對한 行動이 慾求할만큼 確固한 階層의 地位를 保障해주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他群衆보다 比較的 批判的 見解를 가질수 있는 것에 依한 것이라고 본다면, 核心群衆은 他群衆에 비해 一般的으로 不滿이 적다는 現象과도 一致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 結 論

北韓住民들의 生活은 不滿狀態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상 心理的 均衡이 破壞된 채로 生活이 營為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住民들의 경우 破壞된 內的 不均衡의 狀態를 回復하기 為한 行動的 反應이 現實化되지 않고 있는 現象은 1次的 慾求의 充足에 대한 最少限의 條件을 그러한 反應의 抑壓的 要因으로서 代置하여 作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苛酷한 勞力의 搾取와 思想的 檢討, 唯一思想의 教養, 그리고 政治學習等の 強要는 그러한 抑壓的 要素의 強度를 增大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抑壓의 作用이 人間의 慾求充足을 위한 指向的 動因을 消滅시킬 수는 없다. 北傀는 不滿을 回復하려는 價值觀의 發達을 차단하기 위한 手段으로 北韓社會를 폐쇄하고 住民들의 外部的 要素에의 接近을 封鎖하고 있지만, 北送僑胞, 北韓에 駐在하는 外交官들과 그 家族들, 그리고 北韓을 往來하는 外國人들은 北韓住民들의 慾求에 對한 北傀의 抑壓策動에 계동적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의 內在的 不滿의 統制手段이 弱化될 경우에는 어느때이건 外現化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러한 可能性은 漸增的으로 累積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北傀從黨의 抑壓을 持續시킬 수 있는 能力의 限界性を 考慮한다면 北韓住民들의 不滿으로 因한 內的 不均衡狀態를 벗어나려는 慾求를 增大시키고 이의 抑壓力을 弱化시키기 為한 企劃的이고 意圖的인 手段이 우리의 對北韓住民의 立場에서는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註]

- (1) W. Scham, et al.,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Univ, at Ill., 1971. p.1-2
- (2) Edwin G. Boring, et al: Foundations of Psychology. John Wiley and sons, Inc., New York(1969), p.112
- (3) Ibid. p.113
- (4) Ibid. p.114
- (5) Calvin S. Hall: Psychology. Howard Allen Inc., Publishers Cleveland(1960). p.44
- (6) Ibid. p.45-47
- (7) Edwin G. Boring, et al: op. cit., p.114
- (8) Calvin S. Hall: op. dit., p.83-84
- (9) Edwin G. Boring. et al., op. dit. p.115-118, 李鎮淑: 心理学 概論(1955), p.26
- (10) Calvin S. Hall: op. cit., p.115-118
- (11) 北韓總鑑: 共產圈問題研究所(1968), p.107, p.524
- (12) 北韓全書 上卷: 極東問題研究所(1974), p.213-223
- (13) 上掲書, p.129-130
- (14) 俞完植. 外: 北韓三十年史. 現代經濟日報社. 日曜新聞社(1975), p.262.
- (15) 北韓全書 上卷: 極東問題研究所(1974), p.145
- (16) 内外通信, 綜合版 1; 内外通信社(1975), p.296-297
- (17) 上掲書 p.301

- (18) 労働新聞 社説，8月10日
- (19)北韓의 家庭斗 婦女；共產圈問題研究所（1972），p.18
- (20) 内外通信，綜合版1；内外通信社（1975），p.298
- (21) 上掲書 p.298

# 北韓體制에 對한 宗教社會學的 考察

韓 完 相

社會學博士·前 서울大 教授

## 머 리 말

一般的으로 共產主義와 宗教를 相 剋的인 關係로 把握하려는 傾向이 있다. 共產主義는 無神論에 立脚해 있으며, 그것의 理論的 바탕이 唯物論이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宗教와 相 剋된다고 한다. 우리가 宗教의 特性中에서 Messian主義를 빠뜨릴 수 없고 또한 찬란한 未來社會에 대한 確信을 無視할 수 없다면, 오늘의 共產主義는 多분히 宗教的 性格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어떤 神이나 超越的 存在에 대한 믿음의 무너지고 나면, 반드시 다른 이름의 神이나 초월적 存在에 대한 믿음의 새로 생기는 법이다. 基督敎의 神觀이 비록 共產主義者들에 의해 깨어졌다 하더라도 대신 그 神觀이 담당했던 社會的 機能을 Marx와 Lenin에 대한 信仰이 담당하게 된다. 基督敎의 神觀이나 다른 宗教의 초월적 存在에 대한 信者들의 믿음의 담당해온 社會統合的機能(類型維持 (Pattern-maintenance)의 機能을<sup>1)</sup> Marx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崇拜에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宗教에 대한 機能的 代案 (functional alternative)<sup>2)</sup>을 共產主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傳統的 宗教에 있어서 超越的 神이나 觀念的 神에 대한 믿음의 그 社會統合에 必要한 共通文化의 精髓가 되듯이 그

리고 그러한 믿음이 社會成員을 社會化시키는데 必要한 價值內容이 되듯이, 共產主義에서는 메시아로 추방받는 Marx 와 Lenin에 대한 信仰이 곧 共產主義體制를 유지해 나가는데 必要한 共通文化와 共通規範의 核心이 된다. 전통적 종교를 唯心論的인 혹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唯物論的이며 內在的인 힘을 더욱 믿는 世俗宗教<sup>3)</sup>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는 그것이 唯物論的인가 아니면 唯心論的인가 하는 것에 注目하지 않고 그것이 갖는 社會的機能<sup>4)</sup>에 注目할 때 共產主義도 전통적 종교가 對內的으로 감당한 社會統合的인 機能을 수행하면서 對外的으로는 새로운 영토확장을 위한 “宣敎” 機能을 絶對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角度에서 보면 對內的 統合을 위해 不斷히 異端을 색출해내어서 숙청하고 학살하는가 하면 對外的으로 “異邦”을 規定하여 이것을 경계하면서 差別한다.

本論文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온 共產主義와 宗教와의 關係를 社會機能의 次元에서 새롭게 인식하려고 한다. 특히 오늘의 北韓 共產主義가 갖는 狂信的 宗教性을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 그들이 基督教을 위시한 諸宗教를 그토록 박해하였던 것도 따지고 보면 共產主義가 本質的으로 反宗教的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宗教的 性格을 너무나 지나치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異邦的 宗教성과 異端的 要素를 용납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던 教條的이면서도 狂信的인 모습을 오늘의 北韓體制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 北韓 共產主義 体制의 宗教的 特性

모든 共產主義는 既成宗教를 배척한다. 특히 기독교를 증오한다. 基督教의 超越的 人格神과 그것의 啓示性을 不信하고, 나아가 기독교의 組織力을 질투하고 혐오한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여기서 하나의 逆說이 가능하다. 이른바 革命에 광신적인 共產主義社會일수록, 閉鎖的 宗教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는 點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閉鎖的이고 獨斷적인 共產主義体制인 오늘의 北韓社會에서 가장 獨斷적이고 狂信的인 宗教의 특징을 가장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대체로 閉鎖的이고 狂信的인 宗教의 特徵은 似而非新興宗教에서 잘 나타난다.

오늘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야말로 Marx - Leninism을 가장 正統으로 계승한 純粹派임을 과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主体的的으로 그리고 創造的으로 適用한 金日成唯一思想을 자랑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의 北韓体制은 Marx - Leninism의 순수형도 아니고 또 이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主体的 共產主義도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北韓的 人間이란 Pavlov의 개나 Skinner의 쥐나 비둘기처럼 一方的으로 조종되는 不自由한 客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客體가 이룩한 社會란 결코 개방적이며 主体的인 社會가 될 수 없다.<sup>5)</sup>

여기서 筆者는 오늘의 北韓共產主義体制를 似而非新興宗教로 보고자 한다. 이 体制의 特性을 보다 잘 把握하기 위하여 閉鎖的이고 獨斷的인 性格을 띤 似而非新興宗教로 把握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로 사이비 종교일수록 그 似而非性을 은폐하기 위해 創造的, 開放的 宗教가 갖는 長點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反對의 결과를 자아낸다. 그렇다면 北韓體制를 宗教로 볼 수 있는 根拠는 무엇인가를 하나 하나 따져 보기로 하자.

제일 먼저 宗教는 教主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新興宗教일수록 카리스마적인 教主를 내세우게 된다. 似而非宗教일수록 教主에 맹목적 충성을 강요한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 教主는 Messiah로 인정되어야 한다. 세상의 不条理나 不當한 拘束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救世主여야 한다. 그는 비록 人間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조월적인 神의 대접을 받는다. 神으로서의 거룩한 아버지이다. 곧 聖父의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우상적 숭앙을 받는 宗教的 教主가 北韓에는 存在한다. 그가 바로 金日成이라는 教主이다. 金日成은 단지 社會主義革命의 旗手나 革命指導者로만 숭상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를 단순히 北韓 勞動黨의 黨首나 行政首班으로만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모든 北韓家族의 아버지로서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한마디로 그는 北韓이라는 巨大한 世俗宗教集團의 唯一한 神이요 神聖不可侵의 教主이다. 그는 全體住民의 生死與奪權을 한손에 쥐고 있는 唯一神이요 絶對者이다. 그에 대한 批判과 회의는 용납되지 않으며, 도전이나 反抗은 禁忌가 된다. 그는 君臨할 뿐 아니라 支配하고 초종한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은 살아있는 神과 같고 숨쉬고 있는 우상과 같다. 北韓住民들은 그의 은총을 입고서야

살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강요받는다. 어떤 광신자는 그의 고슴만 보아도 울먹이게끔 된다. 金日成앞에 서게 되면 마치 神앞에 선 것처럼 감격하여 운다. 마치 聖書를 벽에 걸어놓듯, 金日成의 초상화는 어디에나 걸려 있다. 그러니 오늘 北韓社會처럼 철저히 宗教化된 지역은 이 地球上에 별로 없을 것이다. 오늘의 北韓에서는 既成宗教를 탄압하는 새로운 金日成宗教가 생겨났다. 이점이 다른 共產主義國家와 다른 點이요, 이것이 바로 金日成主体性의 断面이기도 하다.

둘째로, 오늘의 北韓體制를 宗教로 끌려면, 教主 以外에 經典과 이것에 대한 體系화된 教理가 있어야 한다. 經典없는 宗教란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이 經典에 대한 “正統的” 해석이 없는 宗教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의 北韓社會에서 經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金日成의 語錄이 곧 經典이요 金日成의 唯一思想이 곧 教理(dogma)이다. 물론 Marx와 Lenin의 著作物들도 經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적절한 경전과 교회는 金日成唯一思想과 主体思想이다. 그러니 Marx·Lenin의 著書를 기독교식으로 말해서 旧約(Old Testament)이라고 하면, 金日成의 말과 뜻으로 된 金日成唯一思想은 新約(New Testament)이라 할 수 있다.

마치 似而非宗教일수록 그들의 신성한 經典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規則的인 說經을 맹신적으로 강조하면서도 律法主義的 態度와 行動에 빠져 버리듯이 오늘의 北韓共產主義에서는 金日成思想을 맹목적으로 받아드리도록 住民에게 강요하고 그 해석

도 반드시 公式的 機構인 黨을 통해 시야 그 正統性을 인정 받는다. 마치 閉鎖的인 宗教일수록 그 經典의 해석이 독단적이고 그 경전의 絶對無謬說을 내세우듯이, 오늘의 金日成唯一思想의 內容도 自由롭게 해석할 수 없다. 마치 基督敎內的 閉鎖的인 宗派에서 聖書의 逐字靈感說을 기계적으로 믿듯이, 오늘의 北韓住民들도 金日成의 語錄의 無謬性과 神聖性을 믿어야 한다.

세째로, 經典과 敎理 못지 않게 重要的 宗教의 特色은 儀式이다. 禮拜儀式이다. 이 중에서는 祈禱와 讚頌이 중요하다. 오늘의 北韓住民들, 특히 어린이들은 食事時間에 “金日成 수령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한다고 告白하고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傳統的 宗教人의 食事祈禱와 다를바 없다. 이같은 祈禱儀式은 信者로 하여금 敎主의 카리스마적 人格을 상상속에서 만나게 하므로써 宗教體制를 유지강화시킨다. 또한 宗教儀式에서 노래를 빠뜨릴 수 없다. 信者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므로써 宗教的 同志意識과 信仰共同体意識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대체로 노래는 情緒的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노래의 가사는 대체로 敎主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거나 敎主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같은 노래는 반드시 絶望적으로 불러야 한다. 마치 기독교의 復興會서처럼, 絶望적으로 불러야 한다. 오늘 모든 北韓住民들이 金日成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찬송가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미친듯이 불러야 하는 義務를 갖고 있다. 때로 종교의 찬송가는 單身的 內容을 담고 있다. 敎主를 위해 異端과 異邦을 무찌르기 위해서 軍歌처럼 씩씩하게 노래를 불러야 한다. 北韓의 노래가 거의 戰鬥



的인 軍歌처럼 들리는 것도 그것이 宗教性을 강하게 의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點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네째로, 宗教는 그 自体의 原初的 活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核心的인 人的 資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도 宗教的 自己反省을 대단히 강조한다. 基督教式으로 말하면 悔改이다. 그러나 기독교 경우, 절대자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조용하게 뉘우치는 悔改의 행위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일수록 여러 사람들 앞에서 公開的으로 잘못을 고백하도록 압박받는다. 물론 自發的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받게 된다는데 있다.

오늘날 共產主義社會에서는 自我批判이라는 共產主義式 悔改를 강요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告白하고 自己를 批判하도록 制度的으로 강요한다. 이러한 公開的 告白 強要는 似而非宗教의 특색이다. 이같은 공개적 告白強要는 심각한 人權유린이다. 오늘 北韓에서 金日成에 대한 “不敬한” 行為나 態度는 말할 나위도 없고, 黨에 대한 조그마한 “잘못”도 반드시 群衆 앞에서 고백하고 自我批判을 해야 한다. 고통스런 자기수모 과정 (mortification process) 을 거쳐야 한다. 既成 宗教에 있어서는 회개가 종교인의 순수성과 종교제도의 活性化를 위해 必要한 자발적 행위인데 오늘의 北韓體制에서는 金日成의 偶像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體制의 硬直한 維持를 위해 住民에게 강요되고 있다.

다섯째, 또 한가지 宗教制度의 特色으로서 聖職者와 平信徒間의

役割分化를 들지 않을 수 없다. 牧師, 僧侶, 神父의 役割이 있고 이들의 지도를 받는 羊倂로서의 平信徒의 役割이 따로 있다. 이른바 高等宗教에서는 聖職者와 平信徒의 役割区分은 명백하고 限定的이다. 反面 似而非新興宗教인 수룩 聖職者의 영향력은 莫強하여 教會밖의 世俗生活까지도 干涉하게 된다. 世俗生活까지 아니라 私生活 깊숙히까지 그 영향력이 침투된다. 宗教的 영향력에 의한 全体主義化가 생겨난다.

오늘의 北韓에서는 黨員이 金日成宗教體制속에서 이른바 聖職者의 기능을 담당하고, 많은 非黨員 住民은 平信徒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黨員은 非黨員의 思想的(또는 宗教的) 教養을 위해 經典을 해석해 주기도 한다. 黨員은 非黨員全体住民의 思想教養에 干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住民의 全体私生活領域을 관장하려 든다. 五戶担当制를 통해 黨의 統制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黨의 住民個人의 私生活의 獨自性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個人은 結婚문제까지도 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것은 北韓社會가 철저한 全体主義社會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似而非宗教인 수룩 平信徒를 同質的인 集團으로 보지 않는다. 平信徒의 性分을 가급적 자세히 分類한다. 그리고 平信徒의 忠誠心의 정도를 等級化한다. 이점 오늘 北韓體制도 例外가 아니다. 全住民에게 階層別 「性分調査事業」을 실시하여 그들을 核心階層, 基本階層, 複雜한 階層으로 分類하였다. 平信徒인 非黨員중에 누가 變절자, 배반자, 異端者가 될 것인지 항상 경계하면서 동시에 누구

를 쉽게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지를 밝혀 놓는다.<sup>6)</sup>

여섯째, 閉鎖的인 宗教일수록 憎惡를 강조하고 制度化시킨다. 이 경우 증오는 對內的 異端勢力과 對外的 異邦勢力에 대한 증오이다. 이같은 증오를 통해 既得利權層은 자기들의 立場을 강화시킨다. 궁지에 몰렸을때, 이들은 편리한 증오의 대상을 조작해 내거나 어떤 對象을 지적함으로써 이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반드시 그 어떤 속죄양 (Scapegoat) 을 만들어낸다. 自體內的 여러가지 모순과 不義理에 대한 正當한 批判의 兇점을 엉뚱한 대상에게 증오심을 쏟게 함으로써 흐려버린다. 開放的인 종교에서는 既得利權의 강화를 위하여 엉뚱한 대상에 대한 증오를 조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不當하게 억압하는 잘못된 構造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잘못된 구조란 결코 엉뚱하고 애매한 대상이 아닐 뿐더러, 이같은 증오심은 自己犧牲的 義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北韓에서는 自體內的 異端勢力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은 말할 할 것도 없거니와 美國과 大韓民國에 대한 증오심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制度化시킨다. 예컨대 國民學校 산수시간에 덧셈의 예로 人民軍이 美軍人을 죽이는 수를 들고 있다. 수학시간에까지 異邦勢力에 대한 증오심이 개발되고 있다. 이같은 증오심의 制度化는 自體虛弱性에 대한 광신적 방어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른바 “순수성”에 대한 변호에서 잘 나타난다. 자기 “순수성”에 대한 지나친 방어태세는 실제로는 순수성이 없을 때일수록 더욱 맹렬하게 강화되는 법이다. 오늘의 北韓의 각종 大量媒

체에 나타나는 그 농도같은 증오심은 바로 불순한 似而非性을 지닌 신흥종교가 흔히 갖는 증오심과 같은 것이다. 體制自体의 모순과 虛弱性과 불순수함이 뚜렷이 나타나서 그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이다. 異端과 異那勢力에 대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열광적으로 증오하게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종교가, 특히 사이비 신흥종교가 유토피아적인 共同体임을 내세운다. 初心者를 현혹시키기 위해서도 未來에 유토피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現在 自己集團이 곧 意味있는 共同体임을 力說한다. 마치 現在 자기 集團이나 社會가 地上 樂園인 것처럼 宣傳한다. 오늘의 北韓體制는 그 나름대로 “理想的”인 共同体임을 내세운다. 비록 工業化로 인해 共同体가 깨어지기 쉽지만 意味있고 매력있는 共同体가 견제함을 떠들어 댈다.

그러면 意味있는 共同体란 어떤 것인가? 모든 宗教가 그 나름대로 자기 信者들에게나 또 信者가 될 사람들에게 意味있는 共同体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北韓社會도 그렇다고 力說하기 때문에, 먼저 이같은 共同体의 성격을 간단히 이해해둘 必要가 있다. 그것이 기독교식 千年王國이든, Marx의 無階級社會이든, Fromm의 人道主義的 共同社會이든, 심지어 Hitler가 力說한 게르만 民族의 우수성에 입각한 社會이든, Skinner의 「Walden Two」이든간에 만일 그것이 그 成員에게 意味있는 理想的인 共同体가 되려면 다음 몇가지 共同体意識을 提示해야 한다.

(1) “우리”라고 하는 同志意識을 제공한다. “우리意識”은

“그들”이라는 外部集團에 대한 對稱意識이다. “그들”과는 달리 그 어떤 選拔된 同質性의 사람들의 意識이 곧 “우리”라는 意識이다. 이같은 “우리”라는 意識은 意味있는 共同体形成에 必要條件이다. 또 이같은 同志意識이 있어야만 그 共同体에 속하고 싶고 그속에 남아있고 싶다. 보람있는 所屬感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意識때문이다. 共同体成員들은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서로 인식할 때 보람과 의미를 그 集團에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더우기 同志意識이 일종의 選民意識으로 변진다든지 또는 選民意識에 基礎할 때 이것은 共同体를 의미있는 集團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욱 강한 集團으로 만든다.

오늘의 共產主義一般, 특히 北韓共產主義는 그들나름대로 강하고 뚜렷한 “우리”의식을 갖고 있다. 金日成個人을 위해 죽을 수 있는 同志라는 意識이 강조된다. 이같은 “우리”의식은 大韓民國이나 日本이나 美國이나 自由陣營을 “그들”로 봄으로써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런데 “우리”의식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은 閉鎖的인 自己集團中心主義 (ethnocentrism)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孤立的인, 잘못된 主体性에 사로잡힌 集團으로 전락되어 쓸데없이 많은 敵을 만들어 스스로 疎外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點, 오늘의 北韓體制가 경직하고 閉鎖的인 종교와 비슷하다.

(2) 同志意識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意味있는 共同体가 되는 것은 아니다. 成員들에게 使命意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적제는 자기가 해야 할 조그마한 役割이 그 共同体内に 있다는 인식이며, 크제는 자기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도 성취해야

할 使命이 그곳에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이같은 役割意識과 使命意識없이 보람있는 共同體의 成員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생겨야만 자기역할과 자기의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자기가 맡은 일이 보람있는 과업이라는 의식이 강할 때 그 共同體는 의미있는 共同體가 될 수 있다. 宗教에서는 이러한 使命意識이 쉽게 발견된다. 기독교의 경우 召命(Calling)意識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에서 이같은 보람있는 作業과 課業을 찾지 못한다면 宗教人은 宗教的 共同體를 떠나게 된다. 成員을 잡아두는 要因中에 보람있는 사명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共產體制下에서는 革命戰士란 사명의식,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役군이라는 自負心이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北體制에서는 金日成式의 共產主義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각종사업과 운동에 모든 住民들이 動員되고 있다. 이같이 動員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또 쉬운 일이 아니다. 大衆動員을 하기 위해서는 그 動員에 意味를 부여해야 하고, 해주어야 한다. 너무나 住民個人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作業割當을 맡게 될수록 거기다 使命意識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즉 그 作業을 중요하고 의미있다는 식으로 合理化시켜 주어야 한다. 金日成을 위한 革命戰士요,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役군이라는 自負心과 사명의식 없이 北韓式共同體를 끌고 갈 수 없다. 마치 信者를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해 神의 이름으로 "보람"을 부여하듯이.

(3) 사명의식이 너무 강하는지, 목표달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간 人和가 깨어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目標의 능률적 달성에만 신경쓰다 보면 同志가 경쟁자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homo homini lupus"나 "I and it"의 관계로 변질되기 쉽다. 즉 人間關係는物質化되든지 動物化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있는 共同体에서는 세 번째로 相互信賴意識이 要請된다. 成員들을 하나의 家族成員처럼 믿고 지내게 되어야 한다. 宗教에서 信者들끼리 한 兄弟 姉妹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家族과 같은 一次集團 (Primary group)임을 강조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경우, 모든 男女住民은 그 年齡의 高下를 莫論하고 아버지 金日成의 사랑을 받는 한 가족식구라고 생각한다. 아니 생각하도록 강요된다. 金日成의 아들 딸로서 모든 住民은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바란다. 한 父母 밑에 兄弟처럼 지내야 한다.

(4) 오래동안 견딜 수 있는 강인한 共同体를 만들기 위해서는 未來에 대한 希望意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어떤 未來時點에 必然코 到來하는 찬란하고 完全한 새로운 共同体와 새로운 歷史 (또는 無歷史)에 대한 낙관적이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집어넣어주어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예수 再臨이나 千年王國에 대한 믿음이고, 共產主義에서는 未來에 到來할 無階級社會에 대한 믿음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이같은 새 共同体가 必然코 到來한다는 歷史決定論을 믿는다. 그들의 歷史觀은 마치 獨斷的이고 閉鎖的 宗教처럼 결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歷史觀이다. 즉 歷史展開過程에 選擇이나 代案이 없다. 歷史속에 창조적이고 選擇的인 人間能力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 歴史는 主人이요 人間은 客体이다. 이러한 客体的 人間에게는 未來의 보다 의미있는 共同體의 到來에 대한 믿음이 必要하다.

이같은 未來에 대한 希望意識은 현재가 어렵고 괴로울수록 요청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괴로움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未來의 보다 큰 보람을 위해 현재의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는 天堂이나 地獄에 대한 믿음 때문에 苦海를 견딜수 있게 된다. 허리를 졸라매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대체로, 意味있고 강인한 共同體란 이상의 네가지 意識을 그 成員들에게 제공하는 共同體인데 宗教共同體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네가지 意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似而非共同體일수록 이 네가지를 모두 줄수 있다고 장담한다는 事實에 우리는 注目해야 한다. E. Fromm은 1930年代初 독일에서 Nazi가 번창할 수 있었던 社会心理的 素地를 소상히 밝혔다. 自由가 안겨주는 선택의 고통과 孤獨感때문에 自由가 不安의 源泉이 되고 오히려 정신적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自由로부터 도피하려는 傾向을 잘 그리고 있다. 急速한 社会變化로 인해 의미있는 共同體가 깨어짐에 따라 옛 社会性格이 급변하는 새로운 狀況에 適應하지 못해 뿌리뽑힌듯이 느끼는 사람들이 의미있는 새로운 共同體를 約束하는 독재자에게 쉽게 말려드는 傾向도 잘 묘사하였다.<sup>7)</sup> 혼 혼하고 의미있는 共同體로부터 疎外된 現代人, 原子化된 大衆의 一員으로 남아있는 現代大衆社会人間, 급속한 産業化 불결



속에서 漂流하는 現代人일수록 의미있는 共同体를 찾고 있다. 이 같은 現代人의 心理에 영합하기 위해 많은 似而非宗教나 政治勢力이 등장하여 너무나 쉽게 이같은 共同体를 약속한다. 독재 자일수록 萬病通治式의 藥을 방황하는 現代人에게 제시하여, 그들을 현혹시킨다. 마치 新興종교 教主처럼.

이點 1930年代 나찌와 파시스트, 그리고 오늘의 共產主義가 크게 다를것 없다. 그러나 Fromm式의 해석이 바이마르共和國의 경험을 가졌던 1920年代末과 1930年代初의 독일 사람들에겐 어느정도 타당한 해석이겠으나 이것이 오늘의 北韓狀況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金日成이가 그나름대로의 意味있는 共同体를 제시하긴 하나, 오늘의 北韓住民들이 바이마르時期의 自由와 混亂을 경험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미있는것 같은 共同体를 제시했다는 點에 있어서 Hitler나 金日成은 同一하나, Hitler때의 독일국민은 自由에 다소 싫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反面 오늘의 北韓住民들은 싫증을 느낄만한 自由를 가져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根本적으로 다르다. 그러니 金日成이가 강요하는 共同体를 北韓住民들이 1930年代의 독일국민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金日成의 共同体에 대한 不滿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불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다스리는 統治技術은 영악하게 - 발달하게 된다.

### Ⅲ. 맺는 말

우리는 위에서 오늘의 北韓體制를 政治的 似而非新興宗教로 보아 그 主要特色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Voltaire의 말을 융통성있게 적용한다면 傳統的 宗教를 그토록 강력히 否定하는 共產主義社會에서는 神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神을 오히려 창조한 것인지 모른다. 北韓體制에서는 金日成이를 教主로 받들 뿐만 아니라 그를 神으로 받드는 戰鬪的 無神論주의가 번지고 있다. 金日成의 語錄을 中心으로 經典이 있다. Marx와 Lenin의 著作物을 舊約이라고 한다면 金日成唯一思想의 冊은 新約일 것이다. 經典과 教理도 있고, 宗教的 儀式도 있다. 絶對적으로 미친듯이 박수를 치면서 “讚頌歌”를 부르는가 하면, 어버이 金日成의 恩寵을 감사하는 祈禱도 있다. 마치 基獨敎에서 復興會나 查經會가 있듯이, 그곳에서도 金日成 思想에 대한 規律적인 崇拜會가 있다. 그의 어록을 성경구절 외우듯 외워야 한다. 그리고 自我批判이라는 “悔改”를 해야 한다. 게다가 自體內的 異端과 外部의 異邦勢力에 대한 증오심을 돋우고 이것을 制度化해 놓았다. 그리고 金日成은 그나름대로 “의미있는” 共同體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金日成은 기독교의 神보다, 日帝下의 日本天皇보다 더 “至尊”하고 무서운 存在로 敬畏의 對象이 되고 있다. 金日成은 살아있는 神과 같다. 그러나 北韓體制는 살아있는 莫強한 人間神을 狂的으로 믿는 宗教集團으로 볼 수 있다. 金日成唯一思想을 Marx - Leninism을 北韓에서 主体的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할때의 “主体的”이란 바

로 金日成宗教의 특수성을 뜻하는 것이다. 즉 Marxism도 아니요  
Leninism도 아닌 金日成宗教에 기초한 독특한 共產主義가 바로  
北韓 共產主義라는 것이다. 오늘의 北韓 共產主義를 이같은 視角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소련体制과 東歐体制과 다른 點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8)</sup>

< 註 >

- 1)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1.; Max Black (ed.) The Social Theories of Talcott Pars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 2)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The Free Press of Glencoe, 1959.
- 3) 여기 世俗宗教란 H. Cox 를 위시한 이른바 世俗神學者들이 말하는 성숙한 종교로서의 世俗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Havey Cox, The Secular City: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1965
- 4) 社会的 機能이란 構造機能論者들이 말하는 保守的인 뜻으로 사용된다. 즉 어떤 종교나 이념이 기존사회체제의 유지에 공헌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 그것을 기능적이라고 규정한다.
- 5) B.F. Skinner, Beyond Freedom and Dign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71
- 6) 이른바 “복잡한 계층”은 宗教的인 異端者로 취급받는다. 즉 反革命不純分子인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① 월남가족, ② 反共團體加入者 및 그 가족, ③ 宗教人家族, ④ 地主家族, ⑤ 商工業者家族, ⑥ 宗派關聯者와 그 家族, ⑦ 南勞黨系사람, ⑧ 出所者와 그 家族, ⑨ 自由移住者와 그 家族, ⑩ 귀환포로와 그 가족, ⑪ 北送교포와 그 가족등이다.

7) E.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41.

8) 金日成体制의 특수성을 宗教的 性格以外에 氏族体制의 性格에서도 찾을 수 있다. 封建主義를 그토록 미워하는 共產主義者들이 金日成의 家族主義的 統治方式을 해석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金日成은 이른바 重要的 他者들 ( significant others ) 을 무시하도록 하므로써 正常的인 社會化過程 ( Socialization process ) 를 파괴하는 결과를 비저내고 있다. 자기를 어버이로 추앙케 함으로써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한다. 이것도 그의 “主体的” 特殊性의 하나이다.

# 制度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的 人權

—基本權의 規範과 그 實態에 대한 体系的分析—

張 明 奉

서울大大学院博士課程：法學

## 序 論

「共產主義 權力機構는 가장 洗鍊된 暴政과 가장 野蠻的인 搾取로 통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機構이다. 그 機構의 單純性은 共產黨이라는 一個 政黨만이 모든 政治的·經濟的·思想的 活動의 中樞를 이루고 있다는 事實에서 由來한다<sup>1)</sup>」고 한 Milovan Djilas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共產主義 國家는 共產黨의 一黨獨裁國家이다. 그래서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 共產黨은 國家와 政府의 主力이며 모든 것의 原動力이 된다.<sup>2)</sup> Lenin에게 있어 共產黨은 「完全한 社會」라는 「마르크스」主義的 「비전」이 成就될 수 있는 必要不可欠의 道具였고, 그것은 낡은 資本主義 秩序를 顛覆하는데 必要한 武器였으며, 또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의 本質이었다.<sup>3)</sup> Stalin에 의하면 共產黨은 「勞動階級의 前衛隊요 그 組織隊요 階級組織의 最高形態요 프롤레타리아 組織의 核心이요 分派를 許容하지 않는 單一意志의 統一」<sup>4)</sup> 이라고 한다. 따라서 共產黨은 통상 모든 國家機關 및 社會團體의 指導的 核心

(leading core) 으로서<sup>5)</sup> 國家權力の 源泉이며 中核體가 된다.<sup>6)</sup> 그러한 共産黨이 바로 共産主義 國家에서의 全體主義 獨裁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sup>7)</sup>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共産主義 國家에서 共産黨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指導者란 想像할 수 없는 것이다. 共産主義 國家에 있어서 共産黨 指導者의 絶對的인 「리더십」은 黨으로 하여금 獨裁權 行使에 能動的으로, 아니 狂的으로 獻身케 하며 黨의 最高指導者에 대한 黨員들의 隷屬的 態度는 한 社會를 全體主義的으로 形成시키게 마련이다.<sup>8)</sup> 이렇게 하여 共産黨 最高指導者의 「全體主義 리더십」(totalitarian leadership)이 構築되고, 나아가 「全體主義 獨裁」(totalitarian dictatorship)가 鞏固化하게 된다.<sup>9)</sup> 그래서 全體主義 指導者는 過去의 어떤 指導者보다도 더 한층 絶對에 가까운 權力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神秘的 또는 魔法的 團合 속에서 自己 自身과 追從者들을 一體化시키며, 그는 또 이 基盤 위에서 大衆宣傳과 「테러」의 뒷받침을 받음으로써 統治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全體主義 獨裁體制下에 있는 共産主義 國家에 있어서 基本的人權이 保障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自明한 常識이다. 蘇聯에서 人權이 어떻게 유린되었는가는 蘇聯의 反體制 作家인 Alexander Solzhenitsyn의 「收容所群島」가 雄辯的으로 証言해주고 있다. 이 作品에서 그는 自身の 實際經驗(8年間の 強制勞動收容所 生活)을 土台로 하여 共産主義 體制 속에서 한 人間이 보잘 것 없이 沒落되고 또 破滅되어 가는 過程을 描写하였다. 그러면

서 그는 暴力과 「테러」의 바탕 위에 서있는 共產主義 體制的 모든 虛構性, 그리고 無視당하는 勞動階級의 이름을 팔아 多數를 支配하는 少數의 獨裁體制에 대하여 抗議하였다. 그 때문에 계속 彈壓을 받아 온 Solzhenitsyn은 1974年 2月 蘇聯에 危囂한 活動을 했다는 理由로 蘇聯 政府로부터 市民權을 剝奪당하는 동시에 國外로 追放되는 懲運을 맞았다. 이 한 例로서도 蘇聯에서 人權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Solzhenitsyn이 한 演說에서 「어떤 사람은 蘇聯 指導者들이 이제는 非人間的 理念을 拋棄 했다고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단 一步도 拋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蘇聯體制는 「憲法조차 단 하루도 지켜지지 못하고 몇 名の 秘密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決定이 번개처럼 迅速하게 全國에 下達되는 體制<sup>12)</sup>」라고 指摘한 것을 보면, 蘇聯에서 基本的 人權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十分 窺知할 수 있다.

하물며 蘇聯體制보다 더 硬直된, 그리고 어떤 共產主義 體制보다도 強固한 金日成의 「單一的 全體主義」<sup>13)</sup> (monolithic totalitarianism) 아래의 北韓體制에 있어서 基本的 人權이란 한낱 虛構에 不過할 따름이다. 그 어떤 共產主義 體制보다도 閉鎖的인 北韓體制는 勞動黨의 一黨 獨裁體制이며, 勞動黨의 一黨獨裁는 결국 그 黨의 第一人者인 金日成의 一人獨裁에 帰着되는 것이고 보면, 北韓에서 絶對的 權力을 가진 金日成의 一人獨裁는 그야말로 絶對的 獨裁라 할 수 있다. 그러한 金日成의 一人獨裁體制下에서는 基本的



人權이란 存在할 수 없다. 오직 基本的人權에 대한 彈壓만이 있을 뿐이다. 단지 金日成과 같이 순을 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行動을 한 때에만 비로소 基本的人權이 賦與될 따름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住民들은 마치 George Orwell의 "1984年"이란 小說에 나오는 主人公처럼 되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면 北韓에는 制度上으로는 어떠한 基本的人權이 있으며 그 實態는 어떠한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共產主義 國家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에 관하여 考察하고, 다음에 北韓 憲法上的 소위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 대하여 論及하기로 한다.

## 共產主義國家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 — 自由民主主義國家의 憲法上 基本權 —

한마디로 自由民主主義的 權點에서 볼 때 憲法은 原則적으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國家權力의 行使와 國民의 自由와 權利에 對해 規範化해놓은 것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실상 近代憲法이 特殊한 內容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近代國家에 있어서의 憲法鬪爭의 目標가 된 自由民主主義的인 個人의 自由와 平等의 政治的 理念이었다.<sup>14)</sup> 그러한 意味에서 近代國家의 憲法은 個人의 自由를 위한 「自由의 技術」(technique de la liberte)을 意味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近代憲法에 있어서는 그 憲法秩序의 形成은 個人의 自由를 中心으로 國家의 權力行使도 그 自由에 奉仕할 수 있도록 서로 그 權限의 限界를 法的으로 拘束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特色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自由를 代表하는 것이 바로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Grundrecht)의 規定이며, 또한 여기에 奉仕할 수 있도록 그 權力構造를 規定한 것이 바로 「權力分立」(Gewaltenteilung)에 관한 規定이다.<sup>16)</sup> 그리하여 立憲主義的 내지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은 그 構成原理로서 ① 國民主權의 原理, ② 基本權 保障의 原則, ③ 權力分立의 原則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에 있어서 自由에의 要請은 必然的으로 個人의 基

本權의 確認을 意味하는 基本權的 規定의 權力構造的 規定에 對한 優位를 結果하고 있다.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에 있어서는 憲法 全體를 支配하는 것은 國家의 權力組織에 對한 規定이 아니라 오히려 그 制限을 意味하는 個人의 基本權에 對한 規定이며, 이러한 基本權에 對한 規定은 憲法의 「分割原理」(Verteilungsprinzip)로서 作用할 뿐만 아니라 그 權力構造的 如何까지를 支配하는 「組織原理」(Organisationsprinzip)로서도 作用하고 있다.<sup>18)</sup> 그 結果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原則적으로 國家의 權力에 對하여 비로소 認定된 權力的 創造物이 아니라 오히려 國家는 그것을 保障하고 尊重해야 하는 「前國家的·超國家的 權利」(droits antérieurs et supérieurs aux lois positives)를 意味하고 있다.<sup>19)</sup>

再言하면 美國의 「獨立宣言」(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이나 「프랑스」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個人의 自由와 그 自主的인 發展을 그 憲法的 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Carl Schmitt의 이론바 「市民的 法治國家」(bürgerlicher Rechtsstaat)의 경우에서 보듯이 近代憲法의 基本權은 다음과 같은 「秩序的 政策」(Ordnungspolitik)을 要請하고 있다. 즉 첫째로 國家는 個人의 基本權保障을 그 目的과 任務로 할 것. 둘째로 個人의 基本的 權利는 超國家的 權利인 것. 세째는 立法.

行政으로부터 獨立된 司法이 基本權을 위한 統制를 할 것. 네째로 基本權의 保障을 위하여 國家의 權力은 반드시 分立的이어야 할 것 등이다. 近代憲法의 基本權에 있어서의 이러한 組織的 要請은 또한 國家와 社會의 對立을 그 前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憲法의 組織的 規定과 各各 國家와 社會를 代表하는 規定으로 看做되고 있으며. 國家의 組織原理는 個人의 自由로서 國家는 이러한 自由로운 社會의 守護者(Hüter)로 看做되고 있다.<sup>20)</sup>

#### -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 基本權 -

어떻든 近代憲法의 基本權은 近代市民社會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發展해 왔던 까닭에 비록 憲法에 規定된 基本權에 관한 規定일지라도 그것이 立脚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政治的 理念이 다를 때에는 그 基本權이 性格이나 解釈이 根本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 代表的인 경우가 바로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憲法上의 基本權이다.<sup>21)</sup>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에도 形式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的 憲法에 있어서와 같은 基本權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基本權은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과는 그 性格이나 內容에 있어서 本質적으로 다르다.

첫째 自由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이 「人間의 權利」(Menschenrechte)를 意味하는데 대하여 共產主義國家의 基本權은 「市民의 權利」(Bürgerrechte)를 意味한다. 共產主義國家에 있

어서는 그 社會의 法秩序를 이루고 있는 法規範間的 質的 區別은 認定되지 않으므로 個人的 基本的 權利도 立法에 의한 자유로운 處分の 對象이 된다. 그것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모든 法秩序는 社會의 改造를 위한 黨의 指導의 政治的 道具를 意味하는데 不過하므로 그 權力의 行使에 어떠한 制限을 가한다는 것은 黨의 指導理念에 違背되기 때문이다. 그 結果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물론 不可讓的・超國家的인 人間의 權利가 아니라 오로지 國家에 의하여 賦與되고 保障된 市民의 權利를 意味한다.<sup>22)</sup> 따라서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그 本質에 있어서 國家權力에 의하여 비로소 認定된 權利이며, 또한 그 權利의 重點은 自由權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物質的 給付를 그 內容으로 하는 이른바 受益權에 있다.<sup>23)</sup> Karl Loewenstein도 指摘하다시피 結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權利와 自由는 人間本性에 不可讓的으로 附着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社會主義的 秩序에 의해서 비로소 創造되고 維持될 수 있으며 그 範圍와 그 實現의 程度는 共產黨의 利益에 따라서 測定된다.<sup>24)</sup> 하기는 「마르크스」主義 理論에 비추어 보더라도 人間의 自然的 權利나 天賦的 權利 또는 不可讓的 權利는 存在할 餘地가 없다. 오직 國家만이 그러한 權利를 賦與할 수 있다. 따라서 國家는 權利의 源泉이다. 그리하여 立法에 의하여 그 權利가 發生하고 그 權利에 實質이 주어지고 그것이 有效하게 되며, 또한 立法에 의하여 그 權利가 쉽게 廢棄될 수 있다.<sup>25)</sup>

둘째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目的에 結付된 「社會主義的 人格權」(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rechte)을 意味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個人的 자유로운 活動에 의한 國家秩序形成 그 自體를 認定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어서는 「國家로부터의 自由」(Freiheit Vom Staat)의 概念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만 妥當한 概念으로 規定된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모든 生産手段을 社會化함으로써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와 같은 國家와 個人的 對立이나 利己的 個人的 利益과 利益의 對立은 消滅되고, 그 代身 「프롤레타리아」的 國家의 利益과 個人的 利益은 根本적으로 一致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國家的 利益과 個人的 利益의 一致는 妥協에 의한 利益의 平衡에 의해서가 아니라 社會的 利益의 絶對的 優越性에 의하여 保障된다. 뿐만 아니라 社會的 利益의 優越性은 또한 黨의 指導的 意思에 의하여 代表된다. 그 結果 社會主義的 人格權으로서의 基本權은 黨의 指導的 意思에 從屬된다. 이와 같이 社會的 利益의 絶對的 優位性에 의한 社會的 利益과 個人的 利益의 自同性은 必然적으로 그 基本權의 主觀的 權利性을 否定하게 된다.<sup>26)</sup> 여기에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決定的 特色이 있다.<sup>27)</sup>

셋째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은 모든 市民으로 하여금 共產主義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改造 또는 形成하는 權利로 看做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의 基本權은 黨의 指導에 의한 社會主義 發展에 모든 市民으로 하여금 自覺적으로 協調하도록 하는

人間으로 改造하고 形成케 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의 基本權은 自由權을 中心으로 形成되고 있는데 대하여 共產主義 國家에서의 基本權은 經濟的·文化的 政治的 權利를 中心으로 形成되고 있다. 그래서 民主國家에서의 基本權은 自由權, 특히 良心의 自由와 宗教의 自由를 그 原初的 權利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共產主義國家에서의 基本權은 勤勞의 權利를 그 原初的 權利로 보고 있다. 그것은 勞動만이 生存과 社會發展의 基礎를 意味하기 때문이다.<sup>28)</sup>

- 自由民主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 基本權의 差異點 -

自由民主主義國家의 憲法上 基本權과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 基本權의 差異點을 여기서 總括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列挙할 수 있다.

① 한마디로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的 基本權은 國家內的인 權利로만 取扱하고 있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어 있는 國家·社會制度 아래에서만 保障될 수 있다<sup>29)</sup>」고 하면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制度는 勤勞者의 物質·文化的 福祉의 實現을 最大限 保障하며, 社會主義的 共同生活을 똑바로 保障하고, 人民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시키는데 이바지한다<sup>30)</sup>」고 主張한다. 그러나 이것은 基本的 人權의 歷史性과 그 本質을 忘却한 것이며, 個人이 無視되는 全體主義 아래에서 個人主義를 基本理念으로 하는 基本權의 保障이란 相互

矛盾되는 論理인 것이다.<sup>31)</sup> 따라서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的 基本權은 個人的 自然的 및 始源的 自由의 確保를 理想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의 自然法的 基本權과는 完연히 区分된다.<sup>32)</sup>

② 共產主義國家의 憲法上的 基本權은 人間一般의 權利가 아니고 社會의 構成員 즉 市民으로서 「프롤레타리아」獨裁權力에 의하여 全적으로 認定된 人間 즉 자기 나라에서 市民權을 갖는 市民 또는 公民만이 享有하는 權利이다. 따라서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人間에게는 基本權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基本權의 概念 自體가 自由民主主義憲法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sup>33)</sup>

③ 自由民主主義憲法의 基本權은 國家 權力의 濫用을 防止함과 동시에 國家에 대하여 그의 積極的 作用을 請求하는 權利임에 반하여,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의 基本權과 義務는 國家作用과 平行하는 權利 및 義務이다.<sup>34)</sup>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國家에서는 個人, 國家, 社會 相互間에 對立이 存在하지 않는 것을 前提로 하는만큼 「이三者는 歷史法則에 따라 같은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에 對抗하는 個人的 防禦手段으로서 人格은 存在할 餘地가 없다.<sup>35)</sup>」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人民의 權利는 곧 義務라는 論理가 나오는 것이다.

④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은 基本權의 保障을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物質的 手段에 의하여 確立하려고 한다. 즉 「憲法에 明記된 모든 權利는 宣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社會主義 經濟制度에 의하여 그의 實現이 物質적으로 確實히 保障되어 있다<sup>36)</sup>」고 한다.



換言하면, 物質的인 條件만 갖추어진다면 權力이 아무리 集中되더라도 人權의 保障은 實現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基本權을 權利로서가 아니라 制度的으로 保障하려는 것이다.<sup>37)</sup>

⑤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에 있어서는 市民의 基本的 權利는 前國家的·前憲法的 權利로 認定되지 않는다. 이것은 自然權思想을 否認하고 國家에 의하여 그 權利가 制定되고 保障되는 制度的 側面만을 強調하는 것이며, 基本權은 自然權이 아니라 國家가 賦與한 法定權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 그의 保障도 法律的 保障이나 司法節次에 의한 保障이 아니기 때문에 그 實効性이 거의 없다.<sup>38)</sup>

⑥ 自由民主主義憲法의 基本權은 歷史上 近代立法主義의 發展過程에서 自由와 平等을 理念으로 한 市民階級の 國家에 대한 鬭爭의 產物로서 얻어진 것으로서 性格上 個人主義, 人格主義, 反全體主義를 根本理念으로 삼고 있는데<sup>39)</sup> 반해 共產主義國家憲法의 基本權은 集團主義와 全體主義를 根本理念으로 하고 있다.

⑦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가장 核心的인 것은 勞動의 權利이다. 勞動權이란 生産手段이 社會化되고 勞動手段과 勞動生産物의 所有主體라는 擬制에서 出發한다. 그것은 個人的 勞動主體로서가 아니라 集團으로서만 所有主體로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歸結인 것이다. 따라서 資本家와 勞動者의 對立을 前提로 하는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勞動權 내지 勞動基本權과는 완전히 다르다.<sup>40)</sup>

⑧ 共產主義國家 憲法의 基本權 規定은 기실 名目에 不過한 宣言

의 意味 밖 에 없 으므로 實 際 로 그 基本權 이 保障 될 수 없다.  
따라서 基本權 規定 은 모두 가 Program的 이며 儗飾 的 인 것 이라 할  
수 있다.<sup>41)</sup> 이 런 意味 에서 共產主義 國家 의 憲法 은 基本權 에 관안  
한 Karl Loewenstein 의 憲法 의 「 存在論 的 分類 」 (ontologisc-  
he Klassifizierung) 에 따 른 「 裝飾 的 憲法 」 (semantische Ver-  
fassung) 에 該 當 한다.<sup>42)</sup> 이 憲法 은 儗飾 的 인 意味 밖 에 없 는  
憲法 이므로 憲法 規 範 과 憲法 現 實 이 遊離 되 어 있 음 은 勿 論 이 다.

##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的

### 基本的 人權과 그 實態

- 韓國憲法上的 基本的 人權과 北韓憲法上的 基本的 人權 -

#### (1) 韓國憲法上的 基本的 人權

韓國憲法은 基本權 保障을 그 特色으로 하고 있으며, 憲法 前文에서 基本權 保障의 大原則을 宣稱하고 第2章에서 이를 個別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즉 第2章의 「國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規定이 바로 基本權 또는 基本的 人權에 관한 規定이다. 특히 第2章의 첫째 條項인 條8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32條는 1項에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2項에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限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바, 이 第8條와 第32條의 規定은 우리 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 保障의 一般原則을 設定하고 있다. 第8條는 基本權 保障이 國家의 義務임을 規定하고, 第32條는 立法權의 基本權 拘束性 즉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第8條의 規定은 西獨 基本法(Grundgesetz) 第1條 1項의 「人間

의 尊嚴 (Würde des Menschen) 은 不可侵이다. 그것을 尊重하고 保護하는 것은 모든 國家權力의 義務이다」라는 規定에 相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憲法의 基本權에 있어서의 「價值와 變請의 體系」 (Wert und Anspruchssystem) 를 意味하거나 또는 「最高의 憲法的 原理」 (oberstes Konstitutionsprinzip) 를 意味하고 있다.<sup>43)</sup> 그래서 「人間의 尊嚴과 價值」의 尊重이야 말로 우리 憲法과 그 基本權의 指導的 理念으로 看做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支配하는 最高의 價值로서 모든 法秩序의 頂上에 位置하고 있다.<sup>44)</sup> 때문에 「人間의 尊嚴과 價值」를 規定한 第8條의 性格을 보면, ① 根本 規範性 ② 前國家的 自然權性 ③ 反全體主義的 性格을 지닌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sup>45)</sup> 여기에서 이러한 人間의 尊嚴과 價值에 관한 第8條의 實定法上的 意義로서 ① 그것은 모든 國家的 行爲에 대한 價值의 實踐的 規準을 意味하므로 國家의 目的과 그 課題들은 거기에 制約되고 또한 國家와 그 法의 正當性도 거기에 의하여 規律되며, ② 個人의 自由를 制限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그 制限의 限界가 된다<sup>46)</sup> 는 점 등을 指摘할 수 있다.

그리고 第8條의 後段은 人間의 尊嚴과 價值의 尊重을 위하여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하여 國家에 대해 基本權 保障의 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消極적으로 侵害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積極적으로 最大限의 保障을 할 義務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가 모든 基本的

人權의 前提가 되는 主基本權임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國民의 基本權을 名目的으로 保障하는 外見的 立憲主義 (Konstitutionalismus)가 아니라 基本權을 名實共히 絶對적으로 保障하여야 하는 진정한 立憲國家 (Verfassungsstaat)임을 알 수 있다.

## (2) 北韓憲法上的 基本的 人權

北韓에서의 說明에 따르면 公民<sup>47)</sup>의 權利와 義務는 「朝鮮勞動黨의 指導下에 主權이 人民의 手中에 들어있고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어있는 國家社會制度下에서만 保障될 수<sup>48)</sup>」있으며 이러한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制度는 「勞動者의 物質·文化的인 福祉의 實現을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社會主義的인 共同生活을 옹기 保障하며, 人民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시키는데 이바지한다<sup>49)</sup>」고 한다. 그리고 北韓에 있어서의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制度는 資本主義 國家의 그것과는 決定的으로 相異한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50)</sup>

① 公民은 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 걸쳐서 폭 넓은 權利와 自由를 가지고 있다. ②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平等하다. ③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그 實現이 物質적으로 保障되어 있다.

④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公民이 平等한 條件에 社會的 生産과 分配에 參加할 수 있도록 統一되어 있다. ⑤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國家社會의 隆盛 發展에 따라 그 內容이 보다 豊富해지며 擴大 發展되고 있다.

그러나 公民의 權利와 義務에 관한 北韓의 이 같은 主張은 事實上

하나의 虛構이며, 憲法의 基本保障도 實効性이 없는 것으로서 기실 基本權 規定이란 하나의 Program的, 假飾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北韓의 公民의 權利란 實際로 行使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라 단순히 宣言的 意味 밖에 없고 따라서 公民의 實質的인 權利는 確保되지 않고 있다.

餘他 共產主義 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北韓에서도 基本權의 性格을 國家內的인 것이며 自然權이 아닌 國家가 賦與한 實定權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國家의 目的을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實現이라고 보는 北韓에서 그 社會主義憲法 아래 진정한 基本權은 保障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國家의 基本權 保障 義務를 規定한 우리 憲法 第8條와 基本權 制限의 一般原則을 規定한 第32條와 같은 條項이 없는 北韓憲法下에서는 「人間的 尊嚴과 價值」가 尊重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基本權 保障이 이루어질 素地가 마린되어 있지 않다. 특히 北韓憲法은 第49條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는 基本權의 大前提를 내세우고 있는 바, 이것은 全體主義와 集團主義下에서 個人主義, 人格主義, 反全體主義를 根本理念으로 하고 있는 基本權이 保障될 수 없음을 端的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基本權의 全體主義的 性格의 實定法的 意義가 ① 個人과 國家間의 緊張關係가 있을 때에는 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出發할 것, ② 個人은 國家를 위하여 存在한다는 原則의 確認, ③ 基本權은

國家權力的 限界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고 보면, 近代 民主主義 思想의 根底를 이루는 個人主義 (Individualismus), 人格主義 (personalismus)의 尊重이란 北韓에서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基本的人權의 前提가 되는 主基本權으로서의 「人間의 尊嚴과 價值」가 尊重될 수 없는 北韓에서 그 社會主義法上的 基本權이란 실로 假飾的·名目的 意味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基本權에 관한 한 北韓憲法은 Loewenstein와 이른바 「裝飾的 憲法」에 不過하다는 면에서도 당연한 歸結인 것이다. 실상 Merle Fainsod가 共產主義國家의 憲法은 「國內外에서 重要的 宣傳役割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51)</sup>고 말하였듯이, 北韓憲法上的 基本權 規定이야 말로 國內外에 대한 重要的 宣傳役割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北韓憲法上的 「公民의 基本權利」와 그 實態—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은 第4章에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第49 ~ 72條). 이 第4章의 規定이 바로 基本權 또는 基本的人權에 관한 規定이다. 北韓憲法은 基本權에 대한 原則規定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第49條와 第50條이다. 第49條는 上述한 바와 같이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基礎한다」고 하여 基本權의 大前提를 明示하고 있다. 따라서 基本權은 이러한 集團主義 原則을 그 理念으로 하고 있다. 이어 第50條는

1項에서 「國家는 모든 公民에게 참다운 民主主義的 權利와 自由, 幸福한 物質・文化生活을 實質적으로 保障한다」고 하고, 2項에서 「公民의 權利와 自由는 社會主義 制度의 鞏固發展과 함께 더욱 擴大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主義에 立脚한 社會主義 制度의 發展에 따라 基本權도 擴大된다는 論理를 展開시키고 있다.

北韓憲法上の 「公民의 基本權利」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憲法 第8條에 規定된 모든 基本權의 前提가 되는 「人間의 尊嚴과 價值」의 尊重에 관한 것은 없으며, 또 거기에는 基本權중의 原初的 權利라 할 수 있는 우리 憲法 第17條에 規定된 「良心의 自由」가 없다. 이 良心의 自由는 精神的 自由중에서 가장 根源的인 것으로 이것은 内心의 自由로서의 一般的인 自由를 말한다. 良心의 自由는 内面的인 思想과 良心을 外部에 表明하도록 強制되지 않는 自由와 自己의 思想 및 良心에 反하여 行爲를 強制당하지 아니할 自由를 뜻한다.<sup>52)</sup> 批判과 自己批判이 行하여 지며 金日成의 唯一思想 以外에 어떠한 思想도 内心에 품을 수 없는 北韓에서는 이러한 良心의 自由가 存在할 수 없다.

그리고 共同生活을 要求하는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취하는 北韓에는 「居住・移轉」(우리 憲法 第12條)이라든가 「職業選擇」(同 第13條)과 같은 自由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自由를 認定한다면 財産公有制나 計劃經濟의 原則이 그 根底에서부터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에는 旅行의 自由와 通信의 自由도



없다. 旅行은 勞動 日數와 配給과 關聯되고 또 職場의 許可와 黨의 承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制限될 수 밖에 없으며 通信 역시 徹底한 檢閲制度의 實施로 統制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刑罰 不遑及・一事不再理 原則」(우리 憲法 第 11 條),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즉 「裁判請求權」(同 第 24 條), 「刑事補償請求權」(同 第 25 條), 「國家賠償請求權」(同 第 26 條) 등과 같은 우리 憲法에 規定된 權利는 北韓憲法에는 없다. 이러한 裁判請求權, 刑事補償請求權, 國家賠償請求權 등은 請願權, 訴願權과 함께 國家에 대하여 特定한 行爲를 要求한다든가 또는 國家의 保護를 要請하는 積極的인 權利이기 때문에 이들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 權利保護請求權, 또는 請求權的基本權이라 한다. 北韓憲法에 이들 權利에 대한 規定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金日成 一人獨裁體制下에 北韓에서는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이 抹殺당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憲法上의 「公民의 基本權利」를 北韓에서 分類한 體系에 따라<sup>53)</sup> 「政治的 權利」, 「社會經濟的 權利」,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등으로 区分하여 個別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 (1) 政治的 權利

北韓憲法上의 이른바 「政治的 權利」에 속하는 것으로는 「選舉・被選舉權」, 「言論・出版・集會・結社・示威의 自由」, 「信仰・反宗教 宣傳의 自由」, 「申訴・請願權」등이 있다.

### (i) 選舉權과 被選舉權

北韓憲法 第52條는 1項에서 「滿17세 以上の 모든 公民은 性別, 民族別, 職業, 財産 및 知識程度, 黨別, 政見, 信仰에 關係없이 選舉할 權利와 選舉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2項에서 軍隊에 服務하는 公民」도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며, 3項에서 「裁判所의 判決에 의하여 選舉할 權利를 빼앗긴 者와 精神病者」는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갖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舉(第74條)와 地方人民會議代議員選舉(第116條)는 「一般的·平等的·直接的 選舉原則에 의하여 秘密投票」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8條 1項)

周知하는 바와 같이 復數政黨制를 基本原則으로 하는 議會民主主義制度를 基本原則으로 하는 議會民主主義制度를 採択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와는 달리 共產黨의 一黨獨裁體制下에 있는 共產主義國家에서의 選舉制度<sup>54)</sup>는 全體公民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의 實質的인 制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선 共產主義國家의 選舉制度에 있어서의 共通點을 살펴보면, ① 選舉權者 및 被選舉權者의 年齡은 一般的으로 낮고, ② 自由投票가 아니라 強制投票가 행하여지며, ③ 法에서 宣傳하고 있는 秘密投票는 實際에 있어서는 公開投票와 다름이 없고, ④ 候補者 推薦制度를 採択하고 있으며, ⑤ 推薦되는 候補者數와 代議員의 定員數가 同數라는 점 등을 指摘할 수 있다.<sup>55)</sup>

勿論 北韓의 選舉制度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인데, 北韓의 選

선거제도의 特色인 候補者 推薦制度和 世稱 黑白函投票方式(從前)에 의하여 公民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은 實質的인 制限을 받아왔다.<sup>56)</sup> 這間 北韓에서의 모든 選舉는 單一候補制에 의한 黑白投票을 內容으로 하는 選舉制度에 의하여 實施되어 왔다. 單一 候補制은 北韓政權이 勞動黨 一黨 獨裁를 原理로 하고 있다는 必然的 歸結인 것이다.<sup>57)</sup> 北韓의 候補者 推薦制度란 單一選舉區에 單一候補者만을 推薦하되 實은 勞動黨이 내세운 特定人이 「大議員候補者 推薦合議」의 推薦節次를 거쳐 候補者로 推薦되는 것이다.<sup>58)</sup> 그래서 北韓에서는 事實上 勞動黨과 金日成에 忠誠을 바치는 熱誠分子만이 代議員 候補者의 指名을 받도록 되어 있다.<sup>59)</sup>

이러한 候補者 推薦制度는 選舉過程의 力點을 候補者에 대한 指名의 段階에 두는 것이며, 選舉運動이란 그 「宣傳煽動」이고 投票란 이미 내려진 決定에 대한 形式的 確認에 지나지 않는다.<sup>60)</sup> 이렇게 볼때 北韓에서의 選舉는 純粹한 選舉라기 보다는 復數選拔肢의 存立을 許容치 않는 一黨獨裁에 대한 信任投票의 方策에 不過한 것이다.<sup>61)</sup>

從前에 北韓의 投票方式은 이른바 「黑白函投票制」였으나 現在는 「單一函投票制」이다. 單一函投票制은 最高人民會議 第3期 代議員 選舉(1962年 10月 18日 實施)때 부터 施行되었다. 單一投票方式이란 候補者에 대해 反對하면 投票紙에 「×」表를 하여 投函하고, 贊成하면 그대로 投函하는 것이다. 이러한 投票方式 아래서는 아무리 反對投票를 하고 싶어도 反對投票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래서 投票結果는 언제나 100% 贊成이라는 發表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北韓에서는 患者나 老人에 대하여는 移動投票函을 가지고 다니며 投票케 하고, 緊急 出張証과 公民証을 내면 現地에서 投票하게 되므로 단 한 사람도 棄權없이 投票에 參加하게 되어 投票率은 항상 100%가 된다.<sup>62)</sup> 1972년 12월 12일에 있었던 最高人民會議 第5期 代議員 選舉에 있어서도 選舉權者 100% 投票參加와 100% 贊成投票라는 結果가 나왔다.<sup>63)</sup>

이러한 現象은 勞動黨 一黨獨裁體制下에 있는 北韓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도저히 民主選舉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北韓에서의 選舉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選舉를 實施했다는데만 意義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選舉가 公明하게 實施되었는가의 與否하고는 無關한 것이다. 즉 外形上 選舉의 形式을 갖고 추고 그것에 대하여 一定한 意義와 合理性을 賦與할 수 있는 口實에 不過한 것이다.<sup>64)</sup> 따라서 北韓에서의 選舉란 19世紀 前半에 있어서 「나폴레옹」1世와 3世가 自己의 政權 獲得과 維持를 正當化시키기 위하여 使用한 plébiscite와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金日成에 의하면, 北韓에서의 選舉의 意義는 「勞動黨과 人民政權에 대한 우리 人民의 絶對的인 支持와 信賴」를 보여주며, 「勞動同盟을 基礎로 하는 全人民의 確固不動한 政治道德的 統一을 示威」하는것<sup>66)</sup> 이라고 한다. 結局 北韓에서의 選舉制度란 勞動黨에 대한 人民의 信任을 確認케 하고 一黨獨裁를 正當化하며 나아가서는 그 業績을 宣傳할 뿐더러 對外的으로 소위

「民主主義」를 假裝하는데 寄与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sup>67)</sup>

다음에 北韓에서의 候補者 推薦制度는 公民의 被選舉權을 制限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事實上 勞動黨의 熱誠分子만이 候補者로 推薦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北韓에서의 公民의 被選舉權이란 有名無實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形式上이나 憲法에 根拠한 公民의 被選舉權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名級 人民會議 代議員 被選舉權(第74條, 第116條), 國家主席 被選舉權(第76條③), 國家副主席·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被選舉權(第76條④),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議員 被選舉權(第76條⑤), 政務院 總理 被選舉權(第76條⑥), 國防委員會 副委員長 被選舉權(第76條⑦), 中央裁判所長 被選舉權(第76條⑧), 各級裁判所의 判事·人民參議員 被選舉權(第87條⑨, 第134條, 第118條⑤), 地方各級 人民委員會 委員長·副委員長·書記長·委員 被選舉權(第118條③), 地方各級 行政委員會 委員長 被選舉權(第118條④) 등이다.

#### (ii) 言論·出版·集會·結社·示威의 自由

北韓憲法 第53條는 1項에서 「公民은 言論, 出判, 集會, 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고 하고, 2項에서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言論·出版등의 表現의 自由를 「社會主義 建設을 促進하는 肯定的인 것에 대해서는 評價하고, 反對로 社會主義 建設을 妨害하는 것에 대해서는 批判하는 自由<sup>68)</sup>」라고 풀이한다.

첫째로 言論·出版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것은 ① 北韓  
 政權의 命令과 指示에 呼應할 자유를 뜻하는 것이며, ② 各 個人  
 이 속해있는 地域 및 職場에서 同僚의 行動을 告発하는 자유이고,  
 ③ 또 自己 自身の 内心을 表出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sup>69)</sup> 이  
 세가지 를 아울러서 北韓에서는 「批判과 自己批判」이라 하고, 이 批  
 判과 自己批判의 자유를 言論·出版의 자유라고 한다.<sup>70)</sup> 즉 「言論  
 의 자유는 批判과 自己批判을 위하여 광범히 利用하면서 그것은  
 人民의 利益에 相應하며 우리나라 人民民主主義의 強化와 人民經濟  
 의 加一層의 發展을 促進한다<sup>71)</sup>」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모든  
 出版物은 「勤勞者들의 積極적인 支持와 参加下에 宣傳煽動者的·組  
 進者的 役割을 遂行하면서 人民大衆을 社会主義 思想으로 教養하며,  
 그들에게 革命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을 注入하며, 批判과 自己  
 批判을 發展시키고……勤勞者들을 動員하는 것<sup>72)</sup>」을 主된 任務로  
 하고 있다. 그래서 「新聞, 雜誌, 書籍, 標語, 漫画 등의 出版物을  
 통하여 自己의 見解를 發表할 자유를 가지는 公民은 勞動者階級の  
 利益과 社会主義 建設에 有利한 모든 思想과 見解를 出版物에 發  
 表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人民을 勞動黨과 祖国에 無限히  
 忠實한 精神으로, 資本主義에 反對하여 社会主義的 國家社会制度를  
 사랑하는 精神으로, 社会主義國家의 人民들과의 國際主義的 親善團結  
 의 思想으로 教育할 자유가 있다」<sup>73)</sup> 고 한다. 北韓에서는 이러  
 한 言論·出版의 자유를 實現, 保障하기 위하여 印刷所와 用紙 등  
 必要한 物資를 提供함으로써 이 자유의 實現을 實質적으로 保障

한다고 한다.<sup>74)</sup> 그러나 실상 北韓에는 官製言論과 官製出版만이 存在하므로 言論·出版의 自由는 保障될 餘地가 없다.<sup>75)</sup> 北韓에는 個人이 經營하는 新聞社나 放送局 또는 出版社라는 것은 없고 모든 言論機關과 出版機關은 勞動黨과 政權機關 그리고 黨의 外廓團體인 各種 社會團體에서 運營한다.<sup>76)</sup> 따라서 勞動黨과 政權機關을 批判하거나 攻擊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즉 報道나 出版에 있어서 金日成 支配體制나 勞動黨 政策에 대한 批判은 原初적으로 封鎖되고 있으며, 오직 金日成體制的 擁護나 勞動黨의 政策을 讚揚하고 그에 대한 服從과 忠誠을 促求하는 自由만이 許容되고 있다.<sup>77)</sup> 특히 新聞이나 放送의 報道는 黨의 外廓機關인 「中央通信社」<sup>78)</sup> 에서 記事를 一律적으로 配分하고 있어 이 通信의 傳達 구실밖에 하지 못한다. 出版의 경우에 그 計劃과 生産은 黨의 統制를 받아야 하며, 그것도 黨의 엄격한 檢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sup>79)</sup> 여기에서 北韓에는 民主主義國家에서 말하는 진정한 表現의 自由로서의 言論出版의 自由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0)</sup>

둘째로 集會와 結社의 自由를 말하고 있으나, 北韓에는 黨의 指示에 의해 그 外廓團體가 主催하는 集會와 黨의 必要에 의한 結社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어떤 反黨的인 集會나 結社등의 政治活動은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北韓에서의 모든 集會와 團體는 하나같이 勞動黨의 政策과 指示에 의해 住民들을 煽動하고 組織·動員하는 機能만을 맡고 있다. 그 結果 北韓에서의 團體는 모두

가 勞動黨의 外廓團體들 뿐이다.

세계로 示威의 自由가 있다고 하나, 기실 自由로운 意思에 의하여 自己들의 要求와 主張을 貫徹하기 위한 示威란 容納되지 않으며, 오직 勞動黨의 政策을 支持하고 黨의 指示下에 움직이는 官製 示威만이 있을 따름이다.<sup>81)</sup>

한편 第 53 條 2 項에서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虛構的인 宣傳文句에 지나지 않는다. 北韓에는 「朝鮮民主黨」, 「天道教育友黨」과 같은 政黨이 存在하나 이들은 一般黨員과 下部組織이 없는 名目上의 政黨으로서 단지, 勞動黨의 衛星政黨(友黨)에 不過할 뿐이며, 또 北韓에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職業總同盟」, 「農業勤勞者同盟」, 「民主女性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과 같은 社會團體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勞動黨의 外廓團體들이다.<sup>82)</sup> 이들 友黨이나 社會團體들은 한결 같이 勞動黨의 路線을 支持하고 그 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들 友黨이나 社會團體들은 勞動黨과 勤勞大衆을 連結하는 이른바 引傳帶 (transmission belt)의 役割을 하는 것이다.<sup>83)</sup>

### (iii)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

北韓憲法 第 54 條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宗教는 人民의 何片이다」(Religion ist Opium des Volkes) 라는 Marx의 敎理는 모든 「마르크스」主義者의 宗教觀의 支柱가 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



이지만, 「마르크스」主義는 모든 宗教를 勞動階級을 麻醉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브르조아」的 反動을 위한 手段이라고 생각한다.<sup>84)</sup> 그리하여 共產主義者들은 「브르조아社會에 있어서 教會는 支配階級の 支柱가 되고 道具가 되는 것인바 이들은 教會를 勞動者들을 奴隸化하는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다<sup>85)</sup>」고 보면서 「우리는 宗教가 一種의 精神的으로 惡한 술이며……宗教的 思考方式으로 人民이 中毒되고 魅惑되며, 廓醉되고 弱화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sup>86)</sup>」고 한다.

이에 따라 北韓에서는 宗教가 害毒的인 것이라고 認定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의 殘滓들을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強調해 왔다. 그래서 宗教는 抹殺되어야 한다는 反宗教運動을 党的 權威로써 強行하여 北韓 全域에서 教會와 寺刹등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勞動黨은 「宗教는 科學과 進歩의 敵이며 우리 人民의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을 위한 自覺的이고 意識的인 鬭爭을 妨害하는 障礙物」이라 하고, 「우리들 속에 남아 있는 非科學的인 宗教迷信에 대한 殘滓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하여<sup>87)</sup> 公公然히 宗教抹殺政策을 썼던 것이다. 그러한 宗教抹殺政策으로서 일찌기 北韓에서는 宗教財團과 宗教施設을 沒收하였고, 宗教的 行動을 反革命活動이라 規定지어 宗教儀式的 舉行을 禁止시켰다.<sup>88)</sup> 즉 8.15 解放 후부터 宗教에 대한 制限, 彈壓, 抹殺의 3段階政策을 통하여 1955年까지 모든 宗教團體와 宗教儀式을 없애버렸고, 全 宗教人들을 反動分子라는 罪名으로 虐殺하거나 迫害를 加하였다.<sup>89)</sup> 北韓에

서는 住民의 階層의 性分에 있어서 宗教人과 그 家族을 이른바 「復雜한 群衆」으로 分類하여 높고 監視의 對象으로 삼아 왔으며, 教會나 寺刹등의 宗教關係 建物이나 施設도 協同農場의 倉庫, 託兒所, 休養所등으로 改造하여 使用해 왔다.<sup>90)</sup>

北韓에서의 說明에 따르면, 「朝鮮勞動黨과 共和國 政府는 이와 같이 信仰의 自由를 認定함과 동시에 勤勞大衆이 넓은 科學的 世界觀을 갖도록 社會가 어떻게 產生, 發展하였으며 宗教의 機構와 그 役割은 어떠한가를 認識하도록 教育하고 있다. 共和國 北半部의 學校에서는 青年들이 모든 宗教的 偏見에 매이지 않고, 오직 自己의 힘과 勤勞者들의 集合體的 힘만을 믿는 人間이 되도록 自由롭게 幸福한 社會主義社會 建設을 위한 自覺的인 일꾼이 되도록 教育하고 있다」<sup>91)</sup>고 한다. 여기서 結局 宗教를 外面하고 멀리하도록 強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北韓에는 信仰과 宗教의 自由가 存在할 수 없거니와 오직 宗教를 믿지 않을 自由, 宗教에 反對하여 宣傳할 自由만이 保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北韓에는 外形上으로는 「朝鮮仏教徒聯盟」, 「朝鮮基督教聯盟」, 「天道教靑友黨」과 같은 宗教團體들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信仰生活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는 것처럼 假裝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宗教團體들은 官製宗教團體들로서 거기에는 任員만 있고 平信徒들은 없다. 이 宗教團體들의 設立目的은 布教가 아니라 宗教的인 影響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을 注入시켜 信仰心을 뿌리뽑는데 있다. 이 宗教團體들도 社會團體들

과 마찬가지로 勞動黨의 政策을 宣傳하는 外廓團體로서의 구실을 한다.

#### (iv) 申訴權과 請願權

北韓憲法 第 55 條는 「公民은 申訴와 請願을 할 수 있다」고 하여 申訴權과 請願權을 規定하고 있다. 北韓憲法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에 대하여 特定한 行爲를 要求하거나 또는 國家의 保護를 要請하는 積極的인 權利인 이른바 請求權的 基本權으로서의 裁判請求權, 刑事補償請求權, 國家賠償請求權 등은 없고, 오직 申訴權과 請願權만을 認定하고 있다. 이처럼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基本權이 없다는 것은 北韓에서의 公民의 權利가 保障될 수 없다는 것을 端的으로 말해준다.

#### (2) 社會經濟的 權利

北韓憲法上的 소위 「社會經濟的 權利」에는 「勞動에 대한 權利」, 「休息에 대한 權利」,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權利」, 「教育에 대한 權利」, 「科學·文學·藝術活動에 대한 自由」등이 包含된다.

##### (1) 勞動에 대한 權利

北韓憲法 第 56 條는 「公民은 勞動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勞動能力이 있는 모든 公民은 希望과 才能에 따라 職業을 選擇하며 安定된 일자리와 勞動條件을 保障받는다. 公民은 能力에 따라 일하며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北韓憲法 第 2 章의 經濟條項에서 第 27 條는 「勤

勞大衆은 歷史의 創造者이며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는 數百萬 勤勞大衆의 創造的 勞動에 의하여 建設된다. 우리나라 勤勞者들은 모두 다 勞動에 參加하며 祖國과 人民과 自身에 대하여 自覺的 熱誠과 創造性을 내어 일한다. 國家는 勤勞者들의 政治思想意識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勞動의 量과 質에 의한 社會主義 分配原則을 正確히 適用한다」고 하고, 第 28 條는 「勤勞者들의 하루 勤務時間은 8 時間이다. 國家는 勞動의 힘든 程度와 特殊한 條件에 따라 勞動時間을 보다 짧게 適用한다. 國家는 勞動組織을 잘하고 勞動規律을 強化하여 勞動時間을 완전히 利用하도록 한다」고 하며, 第 29 條는 「公民이 勞動하는 나이는 滿 16 세부터이다. 國家는 勞動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小年들의 勞動을 금지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憲法에는 勞動關係條項이 많다. 이는 北韓憲法上 公民의 權利 가운데 勞動權이 가장 核心的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勞動權이란 ① 勞動의 量과 質에 따른 分配를 받을 權利, ② 勞動組合과 같은 組織을 통해 生産管理에 參加할 수 있는 權利, ③ 勞動生産物의 取得權(個人的 所有權), ④ 勞動主體의 勞動能力 喪失의 경우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追加的 分配를 받을 權利), ⑤ 教育을 받을 權利등을 그 內容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바,<sup>92)</sup> 公民의 勞動에 대한 權利란 「唯一한 人民經濟計劃에 기하여 生産의 體系的인 發展에 따라서 失業이 없게 되고, 完全就業이 保障되어 비로소 實際에 實現될 수 있는것」<sup>93)</sup> 이라고 한다. 勿論 北韓에서 모든 生産手段은 公有化(國家 및 協同團體

의 所有, 第 18 条) 되어 있으므로 失業狀態에 있는 公民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sup>94)</sup>는 根本原則 때문에 勞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勞動이 強要되기 마련이며 男女平等權을 強調하면서 女性들을 家庭의 무거운 負擔에서 解放한다는 것 (分 62 条 2 項)도 실은 女性을 男性과 같이 勞動에 參加시켜 女性의 勞動力을 動員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는 滿 16 歲 以上 59 歲 (女子는 54 歲)에 이르는 住民들에 대하여 社会勞動에 參與할 것을 制度化하고 있다. 소위 「社会主義 勞動競争運動」이란 것을 「共產主義 敎養의 어머니」로 表現하고 있는 北韓에서는 靑山里方法, 大安事業體系 등을 標榜하면서 千里馬運動에 住民들을 動員하여 勞力을 擄取하고 있다. 이는 北韓憲法이 第 13 条에서 北韓에서 「千里馬運動은 社会主義 建設의 總路線」이며 「國家는 千里馬運動을 끊임없이 深化 發展시켜 社会主義建設을 最大限으로 다그친다」고 規定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明白히 알 수 있다. 실상 北韓住民들의 社会勞動 參與가 얼마나 徹底하게 制度化하고 있는가 하는것은, 就業者에 限하여 食糧配給을 1 日 600g 주는데 비해, 未就業者에게는 1 日 300 ~ 400g 밖에 주지 않는다는 事實과 모든 勞動이 相互競争 條件下에서 強要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學生들에게는 이미 1959년 4 月부터 社会義務勞動 制를 實施하고 있다는 事實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95)</sup>

北韓에서는 勞動力의 党的 管理에 重點을 두고 소위 「社会主義 勞動競争」이라는 名目 밑에 集團의 監視에 의한 強制勞動을 實施하고

있는데,北韓에서의 「社會主義 勞動競爭」의 具體적인 形態로는 1957년부터 始作된 「千里馬 運動」을 비롯하여 「6個高地占領運動」, 「1.0大課業完遂運動」 등이 있고, 最近에는 「速度戰」이 있다. 여기에서는 勞動報酬을 따지지 않고 「社會主義 建設者」라는 榮譽과 긍지를 가지고 千里馬처럼 빠른 速度로 일하며 個人別, 作業班別, 職場別, 工場 및 企業所別의 多元的 競爭組織을 통해 集團적으로 生産性的 提高를 督促하고 있고, 最近에는 生産部門 뿐 아니라 教育·文化機關 등 非生産部門에서도 이와 같은 運動을 擴大하여 소위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党的 總路線」이라고 그 意義를 強調하고 있다.<sup>96)</sup>

한편 北韓憲法에서는 希望에 따라 職業를 選擇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既述한 바와 같이 北韓에는 職業選擇의 自由란 있을 수 없고, 오직 強制的인 職場配置만이 행해질 따름이다.<sup>97)</sup> 따라서 個別的으로 就職運動을 하여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두 人民委員會(現在の 行政委員會)의 「勞動部」(勞動者의 경우) 또는 「黨幹部部」(事務員과 幹部職員의 경우)를 통하여 配置狀 또는 紹介狀을 發付받아 該當職場에 就業하게 된다.<sup>98)</sup> 일단 就業한 후 自己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職場으로 옮긴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것은 計劃經濟를 遂行하기 위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大原則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職場이 없으면 당장 食糧 配給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야하므로 北韓住民들은 勞動黨이 指定해준 일자리에 싫으나 좋으나 얹매어 살아야만 한다.

(ii) 休息에 대한 權利

北韓憲法 第 57 條는 「公民은 休息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8 時間 勞動制, 有給休暇制, 國家費用에 의한 靜・休養制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文化施設등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北韓의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sup>99)</sup> 에서는 8 時間 勞動制(第 1 條)와 勞動時間 外의 勞動에 대한 原則的인 禁止(第 5 條), 勞動者의 休暇制(第 12 條, 第 13 條) 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憲法과 勞動法令의 規定은 하나의 形式的인 것에 不過한 뿐 實際로는 履行되지 않는다. 北韓에서는 「自發的 愛國 勞動」이니, 「社會勞動」이니, 「增產鬭爭」이니 하는 名目下에 時間 外의 勞動을 強要해 왔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동안 千里馬運動을 뒷받침하기 위한 갖가지 運動<sup>100)</sup> 을 展開함으로써 北韓住民들은 休息한 겨를도 없이 勞動力을 榨取당해 왔다. 예컨대 勞動者들은 하루 12 ~ 15 時間의 勞動을 해야하며 勞動競爭運動이 벌어지거나 責任量 未達 때에는 몇 밤을 새워서라도 完遂하지 않으면 엄중한 責罰을 받게 된다.<sup>101)</sup> 農民들은 하루 14 ~ 16 時間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별보기 運動」이란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婦女子의 경우에 있어서도 勞動時間은 炭鉞과 같은 重勞動 職場에서까지 男子와 同一하다.<sup>102)</sup> 北韓에서는 이러한 時間 外의 勞動에 대하여 「時間 外의 勞動은 党的 強要가 아니라 各種 社會團

體의 自發的인 決議에 의한 愛國勞動」<sup>103)</sup> 이라고 하여 이를 合理化하고 있다.

한편 北韓의 勞動者와 事務員들은 1년에 한번씩 休暇를 받게 되어 있지만 실은 勞動黨과 各種社會團體로부터 直接的인 壓力을 받아 계속 職場에 出勤하지 않을 수가 없다.<sup>104)</sup> 그래서 休暇 또는 休養은 模範勞動者나 英雄稱呼를 받은 勞動者, 事務員 등에 限한것 뿐이며, 단 한번도 休暇 또는 休養의 惠沢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屢見不鮮이다.<sup>105)</sup>

### (iii)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權利

北韓憲法 58條는 1項에서 「公民은 無償으로 治療받을 權利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病 또는 不具로 勞動力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物質的 幫助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고, 2項에서 「이 權利는 無償治療制, 계속 늘어나는 病院, 療養所를 비롯한 醫療施設, 國家社會保險 및 社會保障制度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第48條는 「國家는 全般的 無償治療制를 더욱 鞏固發展시키며 豫防醫學的 方針을 貫徹하여 사람들의 生命을 保護하며 勤勞者들의 健康을 增進시킨다」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에서의 이른바 社會保障制度는 社會保險制度和 公衆衛生制度로 集約된다고 할 수 있는데,<sup>106)</sup> 端的으로 北韓에서의 社會保障의 機能은 人民生活의 向上이라는 名分보다도 經濟發展의 重要底辺으로서의 勞動力의 保存과 그 質的 擴大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北韓에 있어서 現在 強調되는 것은 소위 社會主義 工業國家 建設을 위한 全人民의 鬪爭 그 自體에 있고 결코 社會保障을 통한 全人民의 物質的 生活水準의 向上에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107)</sup>

앞에서 言及한 「勞動法令」에는 모든 勞動者 및 事務員에 대한 義務的 社會保險制가 規定되어 있는 바(第 18 條), 이를 具體적으로 實施할 目的으로 制定된 것이 소위 「社會保險法」<sup>108)</sup>이다. 이 社會保險法에 의하면, 被保險者는 每月 自己가 받는 賃金 또는 報酬의 1%를 保險料로 納付하도록 되어 있으며(第 14 條), 社會保險은 그 給付의 種類에 따라 ① 補助金(第 53 ~ 第 79 條), ② 年恤金(第 80 條 ~ 第 106 條), ③ 醫療上 幫助(第 107 ~ 第 136 條)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社會保險과 아울러 北韓에서는 公衆衛生에 대한 關心을 가져 일찍부터 이에 關聯된 諸規程<sup>109)</sup>을 制定하였는데, 이것은 社會主義建設과 社會主義 生産擴大를 위하여 勞動能力의 保存, 補充의 機能을 遂行하는 公衆衛生制度에 重要性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110)</sup>

한마디로 말해 北韓에서의 社會保險은 住民全體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黨 및 行政幹部들, 勞力英雄들, 千里馬騎手들, 模範軍人들에게 優先적으로 提供되는 社會扶助의 한 方法이 되고 있다. 지금 北韓의 勞動者나 事務員이 病이 나거나 災害를 당하여도 社會保險의 惠沢을 받아 救濟되기는 힘든 狀態에 있다.<sup>111)</sup> 무릇 社會保障制度의 意義는 勤勞條件이 이른바 最低文化生活을 營

為할 수 있는 水準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實質的 價値를 나타내며도 不拘하고, 北韓에서의 勤勞條件은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苛酷性을 보이고 있다.<sup>112)</sup> 그러한 最惡의 勤勞條件下에서의 社會保障制度란 結局 하나의 裝飾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iv) 教育에 대한 權利

北韓憲法 第 59 條는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先進的인 教育制度와 無料義務教育을 비롯한 國家의 人民的인 教育施策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憲法 第 3 章의 文化條項에서 第 39 條는 「國民은 社會主義 教育學의 原理를 具現하여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키운다」고 하여 教育의 目標를 闡明하고 있고, 第 40 條는 「國家는 人民教育事業과 民族幹部養成事業을 다른 모든 事業에 앞세우며 一般教育和 技術教育和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시킨다」고 하고, 第 41 條는 國家는 「全般的 10 年制 高中義務教育」<sup>113)</sup> 을 實施하며 「모든 學生들을 無料로 工夫시킨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第 42 條는 「國家는 學業을 專門化하는 教育體系와 일하면서 工夫하는 여러가지 形態의 教育體系를 發展시켜 有能한 技術者, 專門家들을 키워내며 「大學 및 高等專門學校 學生들에게는 獎學金을 준다」고 하고, 第 43 條는 「國家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 年동안 學校前 義務教育」<sup>114)</sup> 을 實施」하며 「國家는 모든 學年前 어린이들을 託兒所, 幼惟園에서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키운다」<sup>115)</sup>

고 規定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憲法에는 教育에 關聯된 條項들이 많다. 이는 勿論 共產主義的 人間을 養成하기 위한 教育의 重要性을 보여 주는 것이다. 北韓에서는 教育은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을 形成하는데 그 目標가 있으므로 共產主義 思想偏向的 教育만이 實施된다.<sup>116)</sup> 그래서 北韓에서는 「共產主義 教養」의 重点으로서 ①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優越性, ② 새 것은 반드시 勝利하고 낡은것은 滅亡한다는 真理에 대한 認識, ③ 社會의 共產主義的 改造에서 障礙가 되는 個人主義와 利己主義에 대한 反對, ④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精神 涵養, ⑤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 培養, ⑥ 不斷한 革命의 思想으로 계속 革新하는 革命的 思想 鼓吹등을 強調하고 있다.<sup>117)</sup> 이같은 共產主義 教育의 基本內容은 北韓에서 바로 「이데올로기」教育<sup>118)</sup>의 指標로 되고 있다.

이렇듯 北韓에서는 共產主義的 새 型의 人間 形成을 그 教育目로 하는만큼 그런 目標達成을 위하여 黨의 干涉이 徹底하리라는 것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學校指導에 各級 黨委員會가 干與하고 學校指導 및 管理에 不斷한 黨의 干涉이 介在한다. 學校內에는 黨組織體系 뿐만 아니라 「小年團」(9 ~ 13 歲) 및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14 ~ 27 歲)의 組織體系가 있다.

한편 北韓에서는 「教育과 生産勞動을 結付시킨다」는 口實下에 各級 學校의 學生들을 갖가지 勞動에 動員하고 있다. 1959年 3月

2日 内閣決定 第18号에 의하여 同年 4月1日부터 「学生社会義務勞動制」가 實施됨으로써 学生勞動이 制度化되었고, 그와 함께 모든 學校에서 授業料가 廢止되었다.<sup>119)</sup> 이것은 「學生은 勞動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原則의 擴大인 바, 모든 學生은 自己 스스로 벌어서 工夫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勞動에다 또 學校에서는 軍事教育까지 實施하는데, 大學의 경우는 年間 240時間, 高等中學校(高等班)과 技術專門學校의 경우는 年間 120時間이 軍事教育에 割當되어 있다.<sup>120)</sup> 이 學校에서 軍事教育 以外에도 大學生들의 大部分은 「勞動赤衛隊」의 隊員으로서 軍事訓練을 받아야 한다. 勞動赤衛隊의 年齡에 未達되는 學生(17歲 以下로 高等中學校 3~5年까지)은 「붉은 青年近衛隊」에 編入되는데, 그 數는 무려 70萬名에 이르고 있다.<sup>121)</sup>

다 아는 바와같이 北韓에는 私立學校나 宗教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黨과 國家가 管理하는 學校만이 存在한다. 그리고 學問의 教授와 研究에 있어서도 黨을 위한다는 政治的 限界性의 테두리 안에서만 可能하며 個人의 創發性과 研究의 自由도 이 限界 內에서만 認定된다.<sup>122)</sup> 그리고 進學問題에 있어서도 黨은 徹底하게 關与한다. 大學進學의 경우 市·群別로 構成되는 「大學新入生 推薦委員會」에서 志願者의 出身性分, 家庭環境, 思想傾向 및 素質 등을 考慮하여 어느 大學을 指定하면 그 志願者는 그 大學에서 入學試驗을 보게 되는데, 入試成績이, 아무리 좋아도 出身性分과 社會團體生活評點이 不良하면 合格될 수

없다.<sup>123)</sup> 이와 같이北韓의 教育에는 党的 統制가 徹底히 加해지므로 거기에는 教育의 機會均等이란 없으며, 하물며 教育의 自主性和 政治的 中立性이란 있을 수 없다.

(v) 科學·文學·藝術活動의 自由

北韓憲法 第 60 條 1 項에서 「公民은 科學과 文學·藝術活動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創意考案者와 發明家들에게 配慮를 돌린다」고 하고, 2 項에서 「著作權과 發明權은 法的으로 保護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第 36 條는 北韓에서 「文化革命을 徹底히 遂行하여 모든 勤勞者들을 自然과 社會에 關한 깊은 知識과 높은 文化技術 水準을 가진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者로 만든다」고 하고 第 37 條는 前段에서 北韓은 「社會主義 勤勞者들을 위하여 服務하는 참다운 人民的이며 革命的인 文化를 建設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또한 第 44 條는 「國家는 科學研究 事業에서 主體를 徹底히 세우고, 科學者들과 生産者들의 創造的 協調를 強化하여 나라의 科學技術 發展을 促進시킨다」고 하고, 第 45 條는 「國家는 民族的 形式의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主體들이며 革命的인 文化·藝術을 發展시킨다. 國家는 作家, 藝術人들의 創作活動을 獎勵하며 勞動者農民을 비롯한 勤勞大衆을 文芸活動에 널리 參加시킨다」고 規定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의 藝術과 科學에 대한 理論에 따르면, 藝術과 科學은 社會의 「上部構造」의 모든 分野와 마찬가지로 階級的 利害에 의해서 支配되며, 이것 들은 그 本體가 政治的인 것이므로 非政治的

인 藝術과 科學은 있을 수 없고, 黨은 藝術家와 科學者들이 무엇을 어떻게 創造해야 된다는 것을 指示함으로써 藝術과 科學을 支配 할 수 있으며 黨의 具體的인 政治的 目標가 變함에 따라 藝術家와 科學者에 대한 指示도 變한다고 한다.<sup>124)</sup> 이에 따라 北韓에서는 文學·藝術의 創作을 個人的 私的인 일이 아니라 黨的·國家的 事業의 하나라는데 力點을 두어 왔고, 아울러 無思想性, 政治에 대한 無關心性을 排斥하고 共產主義 以外的 利益을 일체 認定치 않는 思想性을 가지는 소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Socialist realism)라는 것을 그 創作의 基本精神으로 삼아 왔다. 이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의 거의 不可侵의 唯一한 文藝思想의 基本原理로서 「마르크스」主義의 藝術의 鬪爭武器이다.<sup>125)</sup>

北韓의 文藝政策의 基本도 創作方法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를 具現하고 文藝活動에 있어서 「党性·級階性·人民性」의 原則을 固守하는 것이다.<sup>126)</sup> 北韓의 소위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의 規約 第1章을 보면,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下에 文學·藝術活動을 통하여 勤勞人民을 共產主義思想과 革命傳統으로 보답하는 事業을 自己의 基本任務로 한다<sup>127)</sup>」고 되어 있다.

金日成도 勞動黨 第5次大會 報告에서 「文學藝術은 勤勞者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하며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큰 役割을 맡고 있기 때문에 勤勞者들을 共產主義 世界觀으로 武装시키기 위한 革命的인 作品을 더 많이 創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sup>128)</sup>」고 力說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北韓의 모든 文學과 藝術은 「党的 統制」下에 勞動党的 宣傳煽動的 手段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며 党政策의 具現에 動員되고 있다. 그리하여 党和 政權이 文學・藝術에 대하여 深大한 配慮」를 한다는 것은 文學・藝術의 自由를 擁護 한다는 것이 아니고 党和 政權의 路線을 文學・藝術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를 監視하는 것이며, 그 結果 肯定的인 것에는 榮譽를 賦与하고 否定的인 것에는 反動이라는 烙印을 찍는 것을 말한다.<sup>129)</sup> 그동안 北韓의 많은 文學・藝術人들이 反党反革命分子로 불려 肅清된 事例는 許多히 있었다.<sup>130)</sup> 北韓에서는 作家, 藝術人들이 自由職業人이 아니라 共產政權에 雇傭된 宣傳要員이기 때문에 이들은 徹底的한 党的 統制下에 作品活動을 하게 된다.<sup>131)</sup> 여기에서 北韓에는 文學・藝術活動의 自由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端的으로 소위 金日成 思想의 宣傳이나 金日成 偶像化를 위해서만 文學・藝術活動의 自由가 認定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憲法에 規定된 科學・文學・藝術活動의 自由란 것도 하나의 假飾에 不過한 것이다.

### (3)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

北韓憲法의 「人身上의 自由와 權利」에는 「男女平等權 및 女性의 保護」, 「結婚 및 家庭의 保護」, 「人身 및 住宅의 不可侵犯」, 「書信의 秘密保障」등이 包含된다.

#### (1) 男女平等權 및 女性의 保護

北韓憲法 第 62 條는 1 項 前段에서 「女子는 男子와 똑같은 社會的 地位와 權利를 가진다」고 하여 男女平等權을 規定하고, 그 後

段에서 「國家는 産前・産後休暇의 保障,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勞動時間의 短縮, 産院・託兒所 및 幼稚園類의 擴張, 그 밖에 施策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특별히 保護에 대해 規定하고 있으며, 2項에서는 「國家는 女性들을 家庭의 무거운 負擔에서 解放하여 그들이 社會에 進出할 온갖 條件을 保障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 北韓에서는 1946년에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sup>132)</sup>을 制定, 公布한 바 있는데, 北韓에서 男女平等에 관한 徹底한 規定은 두드러진 特色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男女平等이란 概念을 北韓에서는 「勞動에 있어서의 平等」, 「國防責務에 있어서의 平等」등으로 歪曲함으로써 女性도 男性과 마찬가지로 勞動에 參加해야 하며, 「勞動赤衛隊」에 編入해야 하는 등 男性과 같은 國防責務를 強調하여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끌어내고 있다.<sup>133)</sup>

前術한 「勞動法令」에서는 女性의 保護에 대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즉 企業所와 事務所에서 일하는 女性의 産前・産後休暇(第14條), 妊娠中인 女性에 대한 輕한 勞動(第15條), 胎母와 乳母에 대한 時間外의 勞動이나 夜間勞動 禁止 등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事實上 北韓에서는 女性들의 社會的 進出이 顯著하여, 女性들이 進出하고 있지 않은 職場이라고는 없다. 鉸山, 炭鉸에서의 坑內勞動에 이르기까지 男性들과 똑같은 條件下에서 女性들은 肉體勞動에 參加하고 있다. 勞動者 및 事務員 中에서 女性들이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53.7% (1971年)나 된다.<sup>134)</sup> 北韓의 한 報告<sup>135)</sup>에



의하면, 1971年 10月 現在 近·200萬 女性이 人民經濟部門에 從事하고 있으며, 이들은 工業部門에서 45.7%, 農業部門에서 60% 以上の 就業比率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136)</sup>

이와 같이 北韓의 女性들은 勞力動員에 參加하고 있는데, 위의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이란 것도 실은 女性들도 男性과 똑같이 勞動해야 한다는 것을 規制하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실 勞動力이 不足한 北韓에서는 소위 人民經濟의 計劃量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女性들의 勞動力을 最大限으로 動員하지 않을 수 없는 処地에 있다. 그래서 北韓의 女性들은 「千里馬作業班運動」을 비롯한 各種 「社會主義 勞動競爭運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突擊隊」, 「100日戰鬪」 「45日戰鬪」와 같은 심한 勞動에 까지 女性의 參與가 強要되고 있다.<sup>137)</sup> 北韓에서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킨다」는 것도 結局 女性을 勞力動員에 參與시키기 위한 口實에 不過한 것이다.

그런데 北韓의 女性들을 勞動에 몰아넣고 그들을 家庭으로부터 組織으로 끌어들이는 作業은 모두 소위 「民主女性同盟」(「女盟」)에 의해 進行된다. 北韓에서 唯一한 女性團體인 이 女盟에는 滿 18歲부터 55歲까지의 女性이 義務적으로 加入하도록 되어 있다. (現在 女盟員의 數는 約 270萬名)<sup>138)</sup> 女盟員의 첫째가는 任務는 바로 社會主義建設의 勞力戰線에 積極적으로 參加하는 것이다.<sup>139)</sup> 女盟의 課題 가운데는 ①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積極 벌여 모든 女性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해야 하고, ② 經濟建設과 社會生活의

모든 分野에서 女性들에게 男性들과 똑같은 條件을 賦与함으로써 그들이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에 더욱 積極的으로 參加하도록 해야 하며, ③ 女性들을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直하고도 熱烈한 革命家로, 참다운 共產主義者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 強調되고 있다.<sup>140)</sup>

이처럼 北韓의 勞動黨은 婦女子들로 하여금 家庭의 主婦로서 貞淑한 아내로서, 慈愛로운 어머니로서 그 役割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黨에 無限히 忠實한 革命戰士」인 동시에 「勞動力 提供者」가 되라고 強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男女平等을 내세워 首領인 金日成과 勞動黨에 忠直할 것과 그들이 내세운 經濟課業 達成을 위해 全 女性들이 犧牲될 것을 強要하고 있다.<sup>141)</sup> 이에 그치지 않고 北韓에서는 「全人民的·全國家的 防衛體制」(憲法 第 14 條)에 依拠하여 女性들도 戰時動員體制로서의 民兵組織인 「勞農赤衛隊」에 編入시켜 軍事訓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勞農赤衛隊에 編入되어야 할 女性은 18歲부터 35歲까지의 処女와 獨身女인데, 女性赤衛隊員들도 男性 赤衛隊員들과 同一하게 年間 訓練計劃에 따라 訓練을 받아야 한다.<sup>142)</sup> 이렇게 볼때 女性 勞動力의 搾取에 汲汲해온 北韓에서 말하는 男女平等과 女性保護라는 것이 얼마나 虛構的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iii) 結婚 및 家庭의 保護

北韓 憲法 第 63 條는 「結婚 및 家庭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社會의 細胞인 家庭을 鞏固히 하는데 깊은 配慮를 돌린다」

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家族은 社會主義 革命 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最底單位」<sup>143)</sup> 라고 한다. 이처럼 北韓社會에서의 家族의 概念은 從來의 儒敎的 傳統性을 완전히 否認하는 그야말로 革命的인 것으로 表現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의 家族觀念은 이미 愛情을 資本主義的 遺物로 敵對視하며 傳統的 文化繼承作用을 保守的인 思考라고 唾棄하고 있다. 端的으로 北韓社會에서 家族의 目標은 ① 社會主義的 教育場이라는 점 ② 生産單位라는 점 등 두가지 事實에 集中되고 있다.<sup>144)</sup>

그리하여 結婚에 있어서도 男女間의 愛情보다는 社會主義的 革命 戰士間의 結合이라는데 重點이 두어지고 있다.<sup>145)</sup> 뿐만 아니라 傳統的인 韓國社會의 觀念이 同族 또는 親戚間의 結婚을 禁하고 있으나 北韓社會에서는 三寸 以外의 直系婚姻도 認定하고 있다.<sup>146)</sup> 이는 傳統的인 家族 概念을 變質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北韓에서는 結婚配偶者選擇에 있어서도 黨이 絶對的인 影響力을 行使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黨의 承認없는 婚姻은 不可能하게 된다.<sup>147)</sup> 結婚年齡에 있어서도 「政務院 決定」에 따라 1976年 8月 1日부터 男子는 30歲 以上 女子는 27歲 以上으로 制限되어 있다.<sup>148)</sup> 이것은 最近들어 北韓이 勞力動員의 極大化로 生産 提高를 적극 劃策하기 위한 措置라고 풀이될 수 있다.<sup>149)</sup>

그런데 北韓社會에서는 家族에 대한 徹底한 統制가 加해지는 바, 여기에는 法制度的인 統制와 組織에 의한 相互統制의 方法이 있다.

먼저 法制度的인 統制로서는 「公民証制度」를 들 수 있다. 北韓에서는 1947년에 住民들의 戶籍을 없애고 이에 代身하여 公民証制度를 마련하였는데, 軍人을 除外한 北韓의 모든 成人男女는 「公民証」을 發給받도록 되어 있다. 戶籍制度가 家族主義 또는 門閥主義를 維持하는 社會的인 制度라는 점에서 이것을 廢止한 것은 社會主義 理論上 당연한 帰結이다. 이와같이 戶籍制度를 廢止하고 公民証制度를 採択한 것은 그야말로 北韓에서 傳統的인 家族概念을 완전히 除去한 것이었다.<sup>150)</sup> 뿐만 아니라 北韓社會에서 傳統的인 家族觀念을 除去하기 위한 또 다른 試圖는 社會主義的 組織化로 나타난다. 이들 組織 중에서 代表的인 것이 「人民班」이다. 人民班에는 班長과 副班長을 두고 소위 人民班會議를 열어서 各 世帶內의 非違事實을 찾아내고 이를 批判한다.<sup>151)</sup> 이러한 人民班 組織과 함께 家族의 集團化를 試圖한 또 다른 組織體는 바로 「五戶擔當制」<sup>152)</sup>를 들 수 있다. 五戶擔當制는 1958년부터 實施되었는데, 이는 北韓의 全 世帶를 五戶씩 나누고 熱誠黨員(宣傳員이라 稱함) 1名이 配置되어 夫婦간의 愛情問題를 包含한 家庭生活 全般을 指導하는 것이다. 五戶擔當制는 責任指導者들이 五戶 內외의 작은 世帶를 分擔하는 만큼 每 家庭, 每 個人을 쉽사리 接觸하고 接觸을 통하여 그들의 知識, 素質, 趣味, 希望은 물론 思想 動向을 精確히 把握할 수 있다.<sup>153)</sup> 오늘날 北韓에서는 이 五戶擔當制를 소위 「붉은 家庭創造運動」이라 하여 이를 積極化하고 있다.<sup>154)</sup> 이처럼 北韓에서는 五戶擔當制를 통하여 家庭生活的 干涉과 統制

를 制度化하고 있거니와 「家族主義制度는 破壞되어야 한다」는 強力한 施策에 따라 北韓에서는 家庭生活을 監視의 対象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sup>155)</sup> 이렇게 볼 때 北韓憲法에 있어서의 結婚과 家庭에 대한 國家의 保護란 것은 結局 그에 대한 國家의 干涉과 統制를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人身 및 住宅의 不可侵과 寤信의 秘密保障

北韓憲法 第 64 条는 1 項에서 「公民은 人身 및 住宅의 不可侵과 寤信의 秘密을 保障받는다」고 하고 2 項에서 「法에 依拠하지 않고는 公民을 逮捕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勞動黨 一黨獨裁體制下에 있는 北韓에서 超憲法的 地位에 群臨해 온 黨은 그의 獨斷的 判斷으로 「反動分子」라는 疑心만 가면 아무런 節次없이 逮捕, 拘禁, 搜索, 審問하는 등 人權을 함부로 유린해 왔음은 公知의 事實이다. 하물며 公民의 權利를 保障하기 위한 「正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裁判請求權)가 없는 北韓에서는 이 人身의 不可侵權이 保障될 理가 없다. 게다가 個人의 權利保障을 위한 最後의 橋頭堡라 할 수 있는 裁判所의 機能을 보면 個人의 權利가 保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裁判所의 構成은 通常 判事 1 名(裁判長)과 判事와 同等한 權利를 가진 2 名의 人民參審員으로 이루어지는데<sup>156)</sup> (憲法 第 137.), 判決은 多數決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sup>157)</sup> 그런데 判事나 人民參審員은 特別한 資格要件이나 法律知識을 가진 者들이 아니라 黨的 原則에 의하여 各級 「人民會議」에서 選舉된 者들이다.<sup>158)</sup>

(同 134 條 2 項：中央裁判所の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選舉, 第 134 條 1 項：中央裁判所長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選舉, 第 76 條 (8)) 따라서 判事나 人民參審員이라고 하여도 專門的인 法律知識을 갖추지 않은 者들이므로 이들이 행하는 裁判의 結果라는 것은 法律과 良心에 의한 正當한 判決이 될 수 없고 오직 黨이 意圖하는 바에 따른 判決이 될 수 밖에 없다.

北韓憲法 第 140 條는 「裁判所는 裁判에서 獨自的이며 裁判活動은 法에 徹底히 依拠하여 遂行한다<sup>159)</sup>」고 하여 이른바 「裁判의 獨立」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有名無實한 規定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第 100 條)인 「中央人民委員會」는 裁判機關의 事業을 指導하므로(第 103 條 (3)), 裁判機關은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 裁判事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게다가 勞動黨의 指導的 地位가 憲法規範化됨으로써(第 4 條) 裁判機關도 勞動黨의 指導下에 놓이게 된다.<sup>160)</sup> 여기에서 北韓에서는 「司法權의 獨立」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結局 北韓에서는 裁判機關도 餘他 國家機關과 마찬가지로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는 「벨트」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sup>161)</sup>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獨裁體系의 一部分을 이루고 있는 共和國裁判所는 朝鮮勞動黨의 司法政策을 貫徹하는 道具」<sup>162)</sup>라고 說明된다. 이렇게 볼 때 北韓에서는 正當한 裁判을 통한 人權 保障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檢察機關<sup>163)</sup>도 裁判機關과 마찬가지로 「勞動黨의 司法政策을 貫徹하는 道具」이며, 이른바 「社會的 遵法性의 監視者<sup>164)</sup>」로서 「프롤레타리아」獨裁體系의 一部를 이룬다.

檢察機關은 社会主義的 遵法性 唯一性を 確立하는 最尖端에 서 있는 機關으로서<sup>165)</sup> 諸般監視機能을 遂行하는데, 党은 檢察機關을 내세워 住民을 監視, 彈圧하는 手段으로 利用한다. 다음의 金日成의 말은 北韓에서의 司法機關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잘 表現해 주고 있다.

「法이란 政治의 外部的 表現에 不過하다. …… 우리나라의 法은 國家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 우리의 國家政策은 곧 党的 政策이기 때문에 우리 党的 政策을 理解하지 못하는 者들은 우리나라 司法일꾼이 될 資格이 없다. …… 우리의 法 自体가 우리 党的 政策을 擁護하고 實現시키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인 한 法을 正確히 執行한다는 것은 곧 党的 政策을 正確히 執行한다는 것으로 党的 指導에 服從한다는 말이 된다.<sup>166)</sup>」

이처럼 法을 党政策의 表現形式으로 보고 그 党政策을 貫徹하는 道具가 곧 司法機關이라 하여 그를 党的 指導와 統制 아래 두고 있다. 더욱기 「共和國 裁判所는 우리 党 政策의 忠實한 執行者이기 때문에 判事는 嚴格히 党政策에 立脚하여 法令의 內容을 自主적으로 判斷하고 事件을 解決할 義務가 있다. 判事들의 活動은 人民의 意思, 우리 党的 意思에 嚴格히 合致되어야 한다. 党的 政策과 法令에 正確하게 依拠하여 活動하는 것이 判事獨立의 本質이다.<sup>167)</sup>」라는 主張에 이르면 司法權의 獨立이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北韓의 司法制度 아래서는 人身의 自由와 權利에

대한 保障이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北韓의 刑法에서는 刑罰法規의 類推適用을 許容함으로써 (刑法 第9條)<sup>168)</sup> 이른바 「罪刑法定主義」의 原理를 否認하고 있다<sup>169)</sup>는 것과 또 北韓의 辯護士들은 單獨으로 事件을 受任하여 獨自적으로 이를 處理할 수 없고 党的 路線과 指導에 服從해야 하며, 被訴者가 裁判所를 欺瞞하지 않고 犯罪事實을 明白하도록 設得하는 것이 그들의 任務인 바,<sup>170)</sup> 결국 그들은 被訴者의 利益보다는 國家的·党的 立場을 優先시켜야 한다는 것을<sup>171)</sup> 볼 때 人身의 自由와 權利는 保障될 길이 없다. 그런데다 住宅의 不可侵과 書信의 秘密保障이란 하나의 裝飾에 不過한 뿐 아무런 實効的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

#### - 北韓憲法上の 「公民의 基本義務」 -

公民의 基本權利와 마찬가지로 公民의 基本義務도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 (第49條). 그리하여 北韓憲法 第68條는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公民의 基本義務에 대한 原則을 闡明하고 있다. 北韓에는 國家에 對抗하는 個人의 防禦手段으로서의 基本的人權은 存在할 수 없으므로 公民의 權利는 곧 義務라는 論理가 나온다. 따라서 權利와 義務는 不可分의 一體를 이루고 있으며 公民의 自由와 權利도 실은 公民의 義務를 強調하기 위하여 내세운 것에 不過한 것이다.



北韓憲法에 規定된 公民의 基本義務로는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 規範 및 行動準則 遵守主義」, 「勞動義務」와 「勞動規律遵守義務」, 「國家財產 및 共同財產 愛護義務」 「國家秘密 遵守義務」, 「祖國防衛 義務」 등이 있다.

#### (1)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및 行動準則 遵守義務

北韓憲法 第 67 條는 「公民은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社會主義的 行動準則을 徹底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法이라는 것은 憲法을 비롯한 모든 制定法律과 政令, 決定, 命令, 指示 등을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北韓에서의 法은 勞動黨의 政策을 表現한 것으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武器로서 反革命勢力을 抑壓하는 方便일 뿐만 아니라 人民의 意識構造와 思想을 改造하기 위한 道具인 것이다.<sup>172)</sup> 즉 北韓에 있어서 「共和 國 法令은 高尚한 社會主義的 道德의 重要한 原則들을 그 속에 담으면서 共和國 公民들이 새로운 社會主義的 人間의 高尚한 道德的 품성을 所有하도록 教養한다<sup>173)</sup>」고 한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法을 內心的 道德律로까지 發展시켜 이를 習慣化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 및 行動準則까지 公民의 義務로서 지킬 것을 強要함으로써 共產主義的 人間을 形成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義務란 結局 새로운 型의 共產主義的 人間을 만들어내기 위한 強制的 教育的 役割을 強調하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 (2) 勞動義務과 勞動規律 遵守義務

北韓憲法 第69條는 1項에서 「勞動은 全人民의 神聖한 義務이며 名譽이다」라고 하고, 2項에서 「公民은 勞動에 自覺적으로 誠實히 參加하며 勞動規律과 勞動時間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서는 勞動能力이 있는 사람은 勞動의 義務를 지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原則에 의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分配를 받는 社會主義分配原則이 適用된다(第27條, 第56條), 그래서 北韓에서는 勞動은 榮譽라고 하면서 勞動의 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北韓憲法 第29條는 公民이 勞動하는 나이를 滿16歲부터라고 定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또 社會主義的 勞動을 保障하기 위하여 勤勞者들 스스로가 만든 規則이 곧 社會主義的인 勞動規律이라 하면서 이의 遵守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勞動의 內部秩序의 規程이나 組合의 規約 遵守義務를 憲法에서 嚴格하게 強要하는 것은 바로 「法에 의한 制裁」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74)</sup> 그리고 勞動時間 遵守義務까지 憲法에 規定한 것은 生産目標達成 및 그 超過達成을 위하여 北韓이 勞動力 動員에 얼마나 腐心하고 있는가를 端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 (3) 國家財産 및 共同財産 愛護義務

北韓憲法 第70條는 「公民은 國家財産과 共同財産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貪汚, 浪費現象을 反對하여 鬭爭하며 나라의 살림살이

를 主人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國家 및 社會協同團體의 財產은 神聖不可侵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私的 所有制度를 抹殺하고 오직 國家와 協同團體의 所有 즉 社會主義的 所有만을 認定하고 있는 北韓에서 이러한 國家財產 및 共同財產 愛護義務를 規定한 것은 人間의 財產所有本能을 改造하여 個人所有의 財產보다도 國家 및 協同團體所有의 財產을 「노동자처럼 保護하는」<sup>175)</sup> 本能을 育成코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國家 및 共同財產 愛護라는 것은 性質上 人間의 自發的인 本性에서 우리나오는 것이지 強制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北韓에서는 國家 및 共同財產은 神聖不可侵이라 하여 憲法上 이의 愛護를 義務化하고 있다.

#### (4) 國家秘密 遵守義務

北韓憲法 第71條는 「公民은 帝國主義者들과 우리나라 社會主義制度를 反對하는 온갖 敵對分子들의 策動에 대하여 革命的 警覺性を 높이며 國家秘密을 嚴格히 지켜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역시 憲法上 義務로까지 規定한 것은 北韓政權의 閉鎖性과 獨裁性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서 國家秘密 遵守라는 名分 아래 北韓住民에 대한 無慈悲한 彈壓의 素地가 發見되는 것이다.

#### (5) 祖國保衛義務

北韓憲法 第72條는 1項에서 「祖國保衛는 公民의 最大의 義務이며 榮譽이다」라고 하고, 2項에서 「公民은 祖國을 保衛하여야 하며 法에 定한데 따라 軍隊에 服務하여야 한다」고 하며, 3項에서

「祖国과 人民을 背反하는 것은 가장 큰 罪惡이다. 祖国과 人民을 背反하는 者는 法에 따라 嚴重히 処罰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憲法 第1章의 政治條項에서 第14條는, 北韓은 「全人民的·全國家的 防衛體制에 依拠하며 自衛的 軍事路線을 貫徹」하고 北韓의 「武裝力의 使命은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社會主義 制度와 革命의 戰取物을 保衛하며 祖国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데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은 「全國土 要塞化」·「全人民 武裝化」·「全軍 幹部化」· 「軍裝備 現代化」라는 소위 「四大軍事路線」을 推進하면서 戰爭準備에 拍車를 加해 왔다. 더우기 北韓은 男女를 不問하고 約 144萬名에<sup>176)</sup> 이르는 「勞農赤衛隊」를 組織하여 訓練을 시켜왔는가 하면 約 70萬名에 이르는 學生들로 構成된 「붉은 青年近衛隊」까지 編成하여 軍事訓練을 시켜왔다. 그래서 오늘도 北韓에서는 「勞農赤衛隊員들을 비롯한 全体 勤勞者들은 軍事를 誠實히 배우고 軍事訓練에 熱誠的으로 參加하여 全人民武裝化를 더욱 全面的으로 實現하여야<sup>177)</sup>」한다고 主唱하고 있으며, 또한 붉은 青年近衛隊員들은 한 손에는 冊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銃을 잡고 主体的인 科學知識과 現代軍事技術을 兼備해 나가면서 金日成을 保衛하는 近衛隊, 決死隊가 되고 革命路線을 擁護 貫徹하는 先鋒隊이며 實踐隊가 될 것을 盟誓하고 있다.<sup>178)</sup>

이처럼 「全人民的·全國家的 防衛體制」를 構築하면서 戰爭準備에 注力해 온 北韓이 위의 憲法 第14條에서 自衛的 軍事路線을 貫徹한다고 한 것은 하나의 偽裝이다. 這間 南侵을 敢行하여 6.25

動亂을 誘發시켰던 北韓이 1.21 事態, 蔚珍, 三陟地區 事態 등 一連의 武裝共匪 侵透에 의한 對南排外行爲를 恣行해온 점을 勘案 할 때 이는 自衛的인 것이 아니라 侵略的인 것을 糊塗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第 14 條에서 北韓의 武裝力은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한다고 하나 소위 人民軍은 人民의 軍隊가 아니라 오직 勞動黨의 利益을 擁護하고 그에 盲從할 뿐이다<sup>179)</sup>. 그리고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킨다고 하나 오직 戰爭準備에 狂奔해 온 北韓이 平和의 維持가 아니라 平和의 破壞를 劃策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結局 北韓의 全人民的·全國家的 防衛體制는 「全國土가 要塞化되었고, 全人民이 銃을 쏠 줄 안다」<sup>180)</sup>는 그들의 豪言壯談처럼 北韓全體를 戰時體制로 轉換시켜 하나의 커다란 兵營으로 만들어 놓았고 계속 戰爭準備와 軍事強化路綫을 걸도록 하고 있다.

## 結 語

以上에서 北韓의 社會主義 憲法上的 이 른바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에 대하여 考察해 보았다. 그에 대한 規定과 그의 實態分析을 통하여 北韓憲法上的 基本權에 있어서의 憲法規範과 憲法現實의 엄청난 乖離現象은 既述한 바와 같이 北韓憲法이 結局 裝飾的 憲法이라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帰結이다. 따라서 北韓憲法上的 基本權規定이란 실로 名目的·假飾的 意味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北韓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를 指導하는 最高의 原則은 「集團主義」로서,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 (第 49 條)고, 北韓憲法은 宣言하면서 「公民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하고 「公民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氣風을 세워야 한다」(第 68 條)고 強調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基本權의 集團主義的性格을 볼 때 그 根本思想을 個人主義에 둔, 自由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과 같은 진정한 意味의 基本權이란 北韓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社會主義社會에서 個人의 利益은 全的으로 社會의 利益에 依存하며, 社會的 利益은 勤勞者의 個人的 利益을 担保하는 必須的이며 一次的인 條件으로 된다. 따라서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에서는 個人의 利益보다는 集團과 社會의 利益을 貴重히 여기며 個人의 利益을 社會의 利益에 服從시키

는 것이 生活原則으로 된다」<sup>181)</sup> 고 한다. 이처럼 個人的 利益이 默殺되는 社會에서는 個人主義에 바탕을 둔 基本的 人權이 存在할 수 없다. 結局 北韓에서 말하는 集團主義原則이란 것도 全体主義를 美化하기 위한 虛構에 不過한 것이며, 따라서 北韓에서는 全体보다는 個人이 그 價値에 있어서 重要하다는 個人主義는 許容될 餘地가 없고 또 거기에서 基本的 人權의 尊重이라고 하는 民主主義의 要請은 完全히 無視되고 마는 것이다.<sup>182)</sup>

하물며 勞動黨의 一黨獨裁體制는 그동안 北韓에서의 基本的 人權을 無慈悲하게 彈壓해 왔다. 더구나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은 勞動黨의 地位를 規定함으로써 勞動黨獨裁를 合法化하고 있다. 즉 北韓憲法은 北韓이 社會主義國家임을 宣稱하고(第1條), 「프롤레타리아」獨裁를 規定(第10條)하게 된 만큼 소위 勞動階級의 前衛인 勞動黨에 관한 規定(第4條)을 두게 됨으로써 勞動黨의 指導的地位가 憲法規範化되었다. 그래서 모든 國家機關과 社會團體에 대한 黨的 指導가 從前의 超憲法的 機能에서 憲法規範化된 機能으로 바뀌지게 되었다. 이처럼 北韓憲法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를 規定함과 동시에 勞動黨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는 것은 실상 勞動黨의 獨裁를 憲法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3)</sup> 그것은 Stalin의

「黨(共產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實現한다. 黨은 「프롤레타리아」의 直接的인 統治前衛이다」<sup>184)</sup> 라는 말에서 보듯이 「프롤레타리아」獨裁는 곧 그 「프롤레타리아」의 前衛인 共產黨의 獨裁를 意味하기 때문이다.<sup>185)</sup> 이와 같이 勞動黨의 指導的地位가 憲法規範化됨으로써 勞動黨의 獨裁權力에 憲法的 正當性이 賦與되어 있다

는 점을 勘案할 때 北聯에서의 基本的人權이 어떠한 狀況에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직 「모든 人民은、黨(勞動黨)의 思想, 黨의 意志로 武裝하며, 黨의 思想體系를 確立하고 黨中央委員會와 같이 숨을 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行動을 할」 때에만 비로소 基本的人權이 許容될 수 있다.<sup>186)</sup> 따라서 北韓에서의 基本的人權이란 그러한 範疇 속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基本的人權의 前提가 되는 主基本權으로서의 「人間的 尊嚴과 價值」가 尊重될 수 없는 北韓에서 그 住民들은 마치 機械의 한 附屬品처럼 組織의 한 構成分子로만 取扱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集團主義, 내지 全体主義의 흐름 속에 人間的 尊嚴과 價値를 喪失당한 채 스스로 埋沒되어 버리고 만다. 그 結果로 北韓 社會에는 劃一主義에 의한 人間的 機械化現象이 支配하고 있다. 이러한 人間的 機械化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北韓에서 그 住民들은 基本的人權은 且置하고 最少限의 自由마저도 剝奪당한 가운데 모진 抑壓속에 呻吟하고 있다. 하기는 共產主義國家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金日成의 唯一獨裁體制 아래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들 住民들에게 最少限의 自由조차 許容할 理가 없으며 그 住民들을 그러한 體制의 徹底한 屬物로 完全히 轉落시키고 있다. 기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지금 생각만 해도 몸서리나는 저 天人共怒한 8·18 板門店事件을 저질러 도끼로 사람을 쳐죽이는 그야말로



極惡無道한 野獸的 蠻行까지 서슴치 않은 者들이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人間의 尊嚴과 價值나 基本的 人權이니 하는 것은 실로 一沫의 意味조차 없는 것이다.

< 註 >

- 1) Milovan Djilas,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 Washington, Praeger, 1957, p.70
- 2) Ibid., p.78.
- 3) Gohn A. Armstrong,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An Introduction, New York, Praeger, 1962, p.47
- 4) Stalin, Foundations of Leninism, Chap.8 白肖健, 政治思想史, 一湖閣, 1966, P.433
- 5) 蘇聯憲法 第126條, 中共憲法 第2條 및 第16條 1項, 北韓憲法 第4條 등 參照.
- 6) 이에 관한 詳論은 Boris Meissner, "Party Supremacy: Some Legal Questions,"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April 1965, pp.28 ~ 33 張明奉, "北韓의 權力構造上 勞動黨의 地位", 北韓, 1975, 9月, pp.126 ~ 136 參照.
- 7) Wolfgang Leonhard, The Kremlin since Stalin, New York: 1962, pp.506 ~ 507
- 8)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1965. 崔雲芝 訳, 全体主義 独裁政治論, 正林社, 1972, pp.72 ~ 73
- 9) 「全体主義 리더쉽」은 Max Weber 가 設定한 合法的 리더쉽, 「카리스마의 리더쉽」 등 세계의 「리더쉽」의 類型 가운데 그 어느 것에도 該當되지 않는 것으로서 前例없는 「全体主義 独裁」의 獨特한 特性에서 비롯된 새로운 類型의 「리더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上掲書 pp.53 ~ 56
- 10) 上掲書 p.56
- 11) Alexander Solzhenitsyn, "Words of Warning to America,."

- U.S. News and World Report, July 14, 1975, p.48
- 12) Ibid.
  - 13) Selig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No. 17. Winter 1974 ~ 75, p.45
  - 14) Koellreutter, Deutsches Staatsrecht, 1953, S.30.
  - 15) Mirkine Guetzevitch, Les constitutions europeennes, I. 1951, pp.151 ~ 154.
  - 16) 韓泰淵, 憲法, 法文社, 1963, p.96
  - 17) 金哲洙, 憲法學概論, 法文社, 1973, p.31.
  - 18)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1954, S. 126.
  - 19) Carl Schmitt, a.a. O., S. 164. derselbe, Inhalt und Bedeutung des zweiten Hauptteils der Reichsverfassung, in, Handbuch des Deutschen Staatsrecht, von Anschütz und Thoma, II, S. 508.
  - 20) Carl Schmitt, 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in, Handbuch des Deutschen Staatsrecht, a.a. O., S. 580; 韓泰淵, 憲法學, 法文社, 1973, pp.184 ~ 185.
  - 21) 韓泰淵, ibid., p.185.
  - 22) Dietrich Müller - Röner, Die Grundrechte im neuen mitteldutschen Verfassungsrecht, in, Der Staat, Bd. 7. 1968, S. 308.
  - 23) Karl Braunias, Grund-und Freiheitsrechte nach der neuen Sowjetverfassung, 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 Bd. XVII, S. 349; Theodor Maunz, Deutsches Staatsrecht, 6. Aufl. 1957, S. 306.
  - 24) Karl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3. Aufl. 1975, S. 347.
  - 25) George Giensburgs,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April 1965, p.26.

- 26) Dietrich Müller-Römer, a.a. O., S. 312.
- 27) 韓泰淵, 憲法学(前掲), p.187.
- 28) Dietrich Müller-Römer, a.a. O., S. 315.  
 參考로 共產主義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에 관한 日本의 文獻으로는, 針生誠吉, “人權保障における近代立憲主義型と社會主義—その原理的試論”, 東京大学 社会科学研究所 編, 基本的人權 I (編論), pp.293 ~ 314, 勝田勇, “社會主義憲法と基本的人權,” 同 pp.347 ~ 383, “ロシア革命と基本的人權”, 同 基本的人權 III, pp.301 ~ 354 등 參照.
- 29) 北韓 科学院 經濟法學研究所 編, 在日本朝鮮人科學者協會 社會科學部 法政部會 訳,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日本評論社, 1966, p.175.  
 以後부터는 이 冊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로 表示함.
- 30) Ibid.
- 31)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南北韓法體制的 比較研究 ( I ) — 公法關係를 中心으로,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 1972, p.30.
- 32) 金雲竜, “北韓憲法秩序의 理論과 實際”, 高麗대학교 亞細亞問題研究所, 北韓法律體系研究, 1972, p.78.
- 33)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9.
- 34) 金雲竜, 前掲書 p.78.
- 35) Michael Bothe, “The 1968 Constitution of East Germany.”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17, 1969, p.283.
- 3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p.176 ~ 177.
- 37)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10.
- 38) Ibid.
- 39) 金哲洙, 憲法学(下) 志學社, 1972, p.454.
- 40)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10.

- 41) Ibid., p.32.
- 42) Loewenstein은 憲法의 存在論的 分類에 따라 「規範的 憲法」( normative Verfassung ), 「名目的 憲法」( nominalistische Verfassung ), 「裝飾的 憲法」( semantische Verfassung )으로 나누고 있다. Karl Loewenstein, a.a.O., SS. 151 ~ 157.
- 43) Maunz-Dürig, Grundgesetzkommentar, Abs. 1 Art. 1, 119.
- 44) H.C.Nipperdey, Die Würde des Menschen, Die Grundrechte, von Betterman-Nipperdey-Scheuner, Bd.2, 1954, S.9.
- 45) 金哲洙, 憲法概論(前掲), pp.162 ~ 164.
- 46) Günter Dürig, Der Grundrechtssatz von der Menschenwürde,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d. 81, 1956, S.123.
- 47)北韓에서는 人民 가운데서 選舉權과 被選舉權, 그리고 其他 基本的 權利를 가진 者를 뜻한다.
- 4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175.
- 49) Ibid.
- 50) Ibid., pp.175 ~ 188.
- 51)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350.
- 52) 金哲洙, 憲法學概論(前掲), p.250.
- 5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에서 分類한 體系에 依拠함.
- 54) 이에 관하여 Herbert McClosky and John E. Turner, "The Soviet Electoral Process," in Randolph L. Braham(ed.), Soviet Politics and Government, New York: Knopf, 1965, pp.410 ~ 416; George B. Carson, Electoral Practice in the U.S.S.R., New York: Praeger, 1955, John N. Hazard,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rev.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p.46 ~ 51. 參照.

- 55) 金奉玄, “北韓의 選舉制度”, 國際問際, 1973. 4月, pp.56~57.
- 56)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p. 41.
- 57) 韓東燮, “北韓憲法の 基礎”, 共產主義問題研究所, 共產主義問題研究, Vol.IV, No.2, 1967, p.11.
- 58) 候補者 推薦節次는 「代議員選舉에 관한 規程」第5章 參照. 同 規程 全文은 亞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下卷), 1974, pp.276~281.
- 59) 金奉玄, 前掲文, p.59.
- 60) 朴東雲, 前掲書, p.43.
- 61) Ibid.
- 62) 蘇聯의 경우에 관하여 Robert Conquest, op.cit., p.45 參照
- 63) 参考로 最高人民會議 歷代 代議員選舉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期別 | 選舉日      | 代議員數                   | 人口比     | 標票方法 | 投票率    | 資成率    | 勞動黨所屬率 | 任期     |
|----|----------|------------------------|---------|------|--------|--------|--------|--------|
| 1期 | 43. 8.25 | 572 (北韓 212<br>南韓 360) | 5萬名당 1名 | 黑白函  | 99.97% | 98.49% | 25%    | 9年(4年) |
| 2期 | 57. 8.27 | 215名                   | "       | "    | 99.99% | 99.92% | 82.8%  | 5年(4年) |
| 3期 | 62.10.18 | 383名                   | 3萬名당 1名 | 單一函  | 100%   | 100%   | 96.8%  | 5年(4年) |
| 4期 | 67.11.25 | 457名                   | "       | "    | "      | "      | 96.7%  | 5年(4年) |
| 5期 | 72.12.12 | 541名                   | "       | "    | "      | "      | 97.6%  | (4年)   |

△ 第1期 代議員數에 있어 南韓의 360名은 地下連判狀으로 選出했다고 云云함.

△ 任期에 있어 ( )안의 憲法上 任期를 意味함. 그러나 法定 任期는 지켜진 적이 없다.

64) 韓東燮, 前掲文, p.11

이와 關聯하여, Vernon V. Aspaturian, "The Soviet Union," in Roy C. Macridis and Robert E. Ward(eds.), Modern Pol-

itical Systems: Europ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3, p.511 参照

- 65) 韓東燮, 前掲文, p.12.
- 66) 金日成, 最高人民會議 第3期 1次會議에서의 演說 (1962年10月)
- 67) 朴東雲, 前掲書 p.44
- 6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180.
- 69) 金雲竜, 前掲書, p.81
- 70) Ibid.
- 71) 北韓 教育省批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金日成綜合大學 國家法講座), 學友書房(日本), 1960, p.50.  
以下부터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으로 表示함.
- 72) Ibid., p.51.
- 7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180
- 7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p.50.
- 75) 北韓의 言論制度에 關하여 中央日報 東西問題研究所, 北韓의 言論制度研究,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 1972 参照.
- 76) 北韓의 新聞·放送·出版現況에 關하여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中卷), 1974, pp.239 ~ 263 参照.
- 77)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北韓의 政治現態分析,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 1976, p.85.
- 78) 北韓에는 通信社로서는 「中央通信社」하나 밖에 없다.
- 79)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前掲 報告書, p.85.
- 80) 北韓의 言論統制에 關한 詳論은 京鄉新聞社, 北韓의 言論統制政策에 關한 研究, 國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 1974 参照
- 81) 柳憲, 北韓二十年, 大韓反共教育院, 1966, p.365.
- 82) 友黨과 社會團體에 關하여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上卷), 1974, pp.206 ~ 225. 参照.
- 83) 이와 關聯하여 Boris Meissner, op.cit., p.29 参照.

- 84) Lenin, "The Attitude of the of the Workers, Party toward Religion," Selected Works, X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p.664.
- 85) Resolu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Pravda, November 11, 1954.
- 86)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eds), Handbook on Communism, New York, Praeger, 1962: 韓國反共聯盟 調查研究室 訳, 共產主義批判全書 4, 韓國反共聯盟 1966, p.94 에서 引用.
- 87) 「우리는 왜 宗教를 反對하여야 하는가」, 勞動黨出版社, 1959, pp.1,45: 柳憲, 前掲書, p.332.
- 88) 柳憲, ibid., pp.333~334.  
宗教彈壓에 관하여 詳細한 것은 崔光石, "北韓에서의 信仰生活", 北韓, 1972, 7月, pp.176~187 및 8月, pp.300~308 参照.
- 89) 平和統一研究所, 南北韓社会文化現況比較, 1975, p.45.  
宗教彈壓事例는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中卷(前掲), pp.234~238 参照.
- 90) 平和統一研究所, ibid.
- 91)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p.6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会体制」, p.181.
- 92)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p.101~1.
- 9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会体制」, p.183.
- 94) 蘇聯憲法 第12條
- 95) 金炯旭, 共產主義 活動과 實際, 光明出版社, 1972, p.942.
- 96) 平和統一研究所, 前掲書, pp.40~41.
- 97)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43.
- 98)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 1972, p.1068.



- 職場配置에 관하여 詳細한 것은 同 總鑑, pp. 1069~1070 參照.
- 99) 1946年 6月 24日에 公布된 이 法令의 全文은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下卷(前掲), pp. 272~274;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45~'68), 1968, pp. 680~682.
- 100) 詳細한 것은 共產圈問題研究所, *ibid.*, pp. 413~415 參照.
- 101)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前掲), p. 1056.
- 102) *Ibid.*, pp. 1056~1057.
- 103) *Ibid.*, p. 1056에서 引用.
- 104)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 1973, p. 188.
- 105)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前掲), p. 1057.
- 106) 박길준, 北韓社會制度의 法的 構造 分析—社會保障立法을 中心으로, 國土統一院學術用役報告書, 1972, p. 12.
- 107) *Ibid.*, p. 14.
- 108) 1945年 12月 19日에 公布된 이 法은 車洛勲·鄭慶謨 共編, 北韓法令沿革集(第1輯),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pp. 517~540.
- 109) *Ibid.*, pp. 427~492 參照.
- 110) 박길준, 前掲 報告書, p. 28.
- 111)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前掲), p. 1078;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前掲), p. 447.
- 112) 박길준, 前掲 報告書, p. 47.
- 113) 이의 實施法令이 1973年 7月 最高人民會議 第5期 2次會議에서 採択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全般的 10年制高中義務教育을 1972~73 学年부터 漸次的으로 實施하여 1976~77 学年度까지 北韓의 모든 地域에서 全面的으로 實施한다고 되어있다. 이 法令의 全文은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下卷(前掲), pp. 281~283.
- 114) 이의 實施法令은 實施法令에 包含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年制 学校前 義務教育을 1972 ~ 73 学年부터 漸次的으로 實施하여 1975 ~ 76 学年까지 北韓의 모든 地域에서 全面的으로 實施한다고 되어있다. 1年制 学校前義務教育을 받을 対象은 滿5歲의 모든 어린이들이다.

- 115) 이에 根拠하여 지난 4月 最高人民會議 第5期6次會議에서는 모든 어린이를 週·日 託兒所 및 幼稚園에서 保育 教養하도록 한 소위 「어린이 保育教養法」을 採択하였다. 이에 의하면, 1歲부터 3歲까지의 어린이는 託兒所에서, 4歲부터 5歲까지의 어린이는 幼稚園에서 키우도록 되어있다. (同法 第45條)

1976年6月1日부터 施行된 이 法에 관한 詳論은 国土統一院, 北僞의 「어린이 保育教養法」 評價報告會議資料, 1976 參照. 이 法의 全文은 勞動新聞, 1976.4.30.

- 116) 詳細한 것은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北韓의 思想教育 實施分析, 国土統一院 學術用役報告書, 1973. 国土統一院, 北韓의 教科書內容 分析研究, 1972 參照.

- 117) 金日成, 「共產主義教養에 대하여」(1958年11月20日 全國市·郡黨委員會 煽動員講習會에서의 演說), 金日成選集, 第6卷, 1966, pp.131 ~ 138.

- 118) 이의 詳論은 崔光石, “北韓의 「이매올로기」教育”,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北揭), pp.931 ~ 943; 崔光石, “北韓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이매올로기」教育”, 高麗大學校 亜細亞問題研究所, 北韓政治體系研究, 1972, pp.170 ~ 267; 金泰端, “北韓의 唯一思想教育”, 国土統一院, 国土統一, 1973, 2月, pp.52 ~ 61 參照.

- 119)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知文閣, 1961, pp.271 ~ 272.

各級學校 學生의 勞力動員實施는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中卷(前揭), p.423 參照.

- 120) 平和統一研究所, 前揭書 p.55.

- 121) Ibid;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前掲), pp.568~569.
- 122) 柳憲, 前掲書, p.328.
- 123) Ibid,, pp.322 ~ 9.  
 学校進学制度에 관해 詳細한 것은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前掲), pp.547 ~ 550;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中卷(前掲), pp.379 ~ 381 参照.
- 124) Joseph M. Bochenski and Gerhart Niemeyer(eds.); op.cit... 韓国反共聯盟 調査研究室 訳, 前掲書, pp.19 ~ 20.
- 125) 趙要翰, 芸術哲学, 法文社, 1973, pp.168.  
 共產主義文學과 社会的 「리얼리즘」에 관하여 詳細한 것은 白鉄, “正統民族大學의 定立과 社会主義的 리얼리즘에의 戲評,”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第2卷2号, 1976, pp.190 ~ 190 参照.
- 126) 詳論은 鄭錫弘, “北韓文學의 事例的 研究”,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第2卷1号, 1976, pp.191 ~ 195; 李恒九, “北傀의 文芸政策”, 共產主義問題研究所, 共產主義問題研究, Vol. V, No. II, 1968, pp.51 ~ 53.
- 127) 柳憲, 前掲書, p.335에서 引用.
- 128) 平和統一研究所, 南北韓社会文化現況比較(前掲), p.64에서 引用.
- 129) 金昌順, 前掲書, p.275.
- 130)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前掲), pp.708 ~ 728; 公報部, 現代史와 共產主義, 第1輯(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1968, pp.420 ~ 426 参照.
- 131) 詳論은 鄭錫弘, 前掲文, pp.195 ~ 196; 李恒久, 前掲文, pp.53 ~ 60.
- 132) 全文은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下卷(前掲), pp.274 ~ 275;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前掲), pp.682 ~ 683.
- 133) 北韓, 1972, 1月, p.107.
- 134)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前掲), p.1074.
- 135) 1971年10월에 열린 「女盟」第4次大会에서의 中央委員會 委

員長 金聖愛의 報告

- 136)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 (前掲), p.1074.
- 137) 共產圈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 (前掲), pp.302 ~ 306.
- 138) 金奉玄 “党外廓团体로서의 女盟”, 國際問題, 1973, 12 月, p.54.
- 139)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 (前掲), p.1074.
- 140)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 (前掲). pp.284 ~ 285.
- 141) 北韓의 女性들은 勞動으로 酷使당한 나머지 時집을 가도 아기  
들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国土統一院, 朴明夏嬢이 証  
言한 北韓의 社会実態, 1976, p.31.
- 14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中卷 (前掲), pp.105, 110.
- 143) 咸秉春, “南北韓 單一文化圈形成 發展에 관한 研究” (上),  
国土統一院, 国土統一, 1972, 4 月, p.66에서 引用
- 144) Ibid.
- 145) 이와 關聯하여 「폴랜드」의 最高法院은, 結婚은 「理念的 結  
合」( ideological unity )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前提하고, 政治的 社会的 問題들에 관한 理念이 相衝할 때,  
특히 夫婦중 一方이 進歩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고 他方이  
反動的인 見解를 가지고 있을때 理念的 結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離婚은 正當한 것이라  
判決한 바 있다. Polish Supreme Court, Judgement of a  
civil division of the PSC of December 11, 195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崔雲芝訳, 前掲書, p.348;  
Kazimierz Grzybowski, Soviet Legal Institutions:  
Doctrines and Social Function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p.152.
- 146) 咸秉春, 前掲書, p.66.  
이와 關聯하여 崔達坤, “北韓婚姻法研究”, 高麗大学校 亞細亞  
問題研究所, 北韓法律体系研究, 1972, p.128 및 註(156) 参照.

- 147) 咸秉春, Ibid.  
 結婚에 대한 制約에 관하여 詳細한 것은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前掲), pp.250 ~ 252 参照.
- 148) 東亞日報 및 中央日報, 1976年9月14日
- 149) Ibid.
- 150)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關係資料集(前掲), pp.229 ~ 235.
- 151) 咸秉春, 前掲文, p.67.
- 152) 詳細한 것은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圈總鑑(前掲), pp.1066  
 ~ 1067 :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前掲), pp.432 ~ 433  
 参照.
- 153) 勤勞者, 1962年11月下期号 参照, 韓載德, 金日成과 北傀의  
 実相, 共產圈問題研究所, 1969, p.134.
- 154) 咸秉春, 前掲文, p.67.
- 155) 韓載德, 前掲書, p.135.
- 156) 北韓의 「裁判所構成法」 第15条; 第17条.  
 이 「裁判所構成法」의 全文은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博英  
 社, 1975, pp.291 ~ 296.
- 15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p.106; 尹明善, “北傀司法  
 制度論”, 共產主義問題研究所, 共產主義問題研究, Vol. V, No.  
 1, 1968, p.112.
- 158) 選舉權을 가진 모든 公民은 判事 또는 人民參審員이 될 수  
 있다. (「裁判所構成法」 第14条).
- 159) 이와 關聯하여 「裁判所構成法」 第8条 参照.
- 160) 張明奉, 北韓의 社会主義憲法上 統治構造에 관한 研究, 서울大学  
 校 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75, p.109.
- 161) 北韓에서의 國家機關은 「프롤레타리아 独裁体系의 有機的인 構  
 成部分을 이루고, 프롤레타리아 独裁体系 가운데 指導的 力量  
 이 되고 있는 朝鮮共產党的 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는 「벨트」

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社會體制」, p.113.

162) Ibid., p.161.

163) 檢事는 任命되는데, 中央檢察所長은 最高人民會議가 任命하고 (憲法 第76條 ⑧), 檢事는 中央檢察所가 任命한다. (同 第145條).

164) Andrei Y. Vyshinsky, The Law of the Soviet State, trans. Hugh W. Ball, New York: Macmillan, 1948, p.537; 尹明善, 前揭文, p.118.

16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167.

166) 金日成, 「우리 黨의 司法政策의 貫徹을 위하여」(1958年4月29日 全國司法·檢察일꾼會議에서 행한 演說); 金日成選集, 第5卷, 勞動黨出版社, 1960, pp.451 ~ 452.

16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家·社會體制」, pp.161 ~ 162.

168) 刑法 第9條는, 「犯罪的 行爲로서 그에 직접 該當하는 規定이 本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本法 중 그 重要性和 種類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罪에 관한 條項에 準拠하여 그 責任의 基礎와 犯罪 및 刑罰을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刑法 全文은 姜求真, 前揭書, pp.297 ~ 326; 刑事訴訟法 全文은 同書, pp.327 ~ 354.

169) 姜求真, Ibid., p.182; 姜求真, “大韓民國과 北傀의 法的體系比較”,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北韓法律體系研究, 1972, p.196.

170) 姜求真, 上揭文, pp.189 ~ 190.

171) Ibid., p.190.

辯護士에 관한 規程과 辯護士의 任務와 役割에 대하여는 姜求真, 前揭書, pp.141 ~ 159; 이와 함께 朴鉉珪, “北韓共產治下에 있어서의 辯護士의 實情”, 서울第一辯護士會, 辯護士, 第1輯, 1969, pp.172 ~ 184 參照.

- 172) 金雲竜, 前掲文, pp.82 ~ 83.
- 17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pp.71 ~ 72.
- 174)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 前掲 報告書, p.51..
- 17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p.39.
- 176) 李漢喆, “北韓의 民兵動員能力”, 國際問題, 1973, 8月 p.77.
- 177) 「全人民武裝化 方針을 더욱 全面的으로 實現하자」, 民主朝鮮, 1973年1月14日.
- 178) 極東問題研究所, 世界共產黨總鑑(前掲), p.1171.
- 179)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改正된 黨 規約 第46條는, 人民軍은 「勞動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黨規約全文은 極東問題研究所, 北韓政治論, 1976, pp.566 ~ 582.
- 180) 金日成, 「勞動黨 第5次 大會에서 한 中央委員會事業總和報告」에서
- 181) 北韓 人民科學社,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解說」, 平壤印刷所, 1973, p.80;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前掲), pp.93 ~ 94.
- 182) 姜求真, Ibid., p.93.
- 183) 詳細한 것은 張明奉, 北韓의 社會主義憲法上 統治構造에 관한 研究(前掲) pp.13 ~ 20과 121 ~ 122 參照.
- 184) Stalin, Lenin 主義諸問題, 國民文庫社(日本), 1960, p.25; Julian Towster, political Power in the U.S.S.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p.180.
- 185) Andrew M.Scott, The Anatomy of Communism, 鄭泰燮 譯, 思想界社, 1961, pp.136 ~ 150; Sydney Hook, Marx and the Marxists, 梁好民 譯, 思想界社, 1962, pp.127 ~ 131; Hans Kelsen, The Political Thoery of Bolshevism, 李東華 譯, 思想界社, 1961, pp.96 ~ 102 參照.
- 186) 民主朝鮮, 1959年4月19日 社說 參照. 柳憲, 前掲書 pp.70, 367.

# 實 際 編

( 證 言 編 )



## 財産權은 이렇게 剝奪되었다

- 나는 當時 北傀 農業相 金一의 補佐官으로  
農業集團化를 計劃하였다 -

吳 基 完

- 1949.12 金日成大學卒業
- 1956. 8 蘇聯알미아따 大學院卒業
- 56.9~62 北傀 金一農業相의 補佐官
- 1965 越南歸順

財産權은 이렇게 剝奪되었다.

## 머 리 말

北傀는 1946 年の 소위 「産業國有化」를 비롯하여 個人商工業 말살, 農業集團化等 모든 生産手段과 營利手段을 완전히 剝奪하고, 勞動者, 農民, 漁民, 商工人 할것없이 모조리 賃金勞動者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로부터 일체의 生産手段은 黨에 귀속시키고 주민 개개인에게는 그 私的 所有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生産手段은 北傀 勞動黨의 統制下에서 運營되도록 私的所有를 일체 許容하지 않고 있으며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財産마저도 교묘한 방법으로 거의 모두 수탈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私有財産에 대한 概念解釋인데 北傀 共產主義者들은 個人이 가지고 있는 私有財産마저 이를 수탈하기 위해서 私有財産과 個人財産의 解釋差異를 억지로 내세우고 있다.

本人과 直系家族을 위해서 直接 奉仕하는 財産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家財道具인 이불, 식기 등과 같은 財産을 個人財産이라 하여 個人所有를 인정하나, 本人과 直系家族을 위해서 直接 奉仕하지 않고 제 3 자를 통해 不勞所得을 얻을 수 있는 財産은 비록 個人의 所有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私有財産으로 規定하여 몰수해 버린다는 것이다.

北傀憲法 22 條에서 「個人所有는 勤勞者들의 個人的 消費를 위한 所有」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땅도 집도 生産業체도 그리고 祖上 대대로 물려받은 여러가지 農機具나 값진 물건같은 것까지 거의 모두 黨에 의해 수탈되고

北韓住民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賃金勞働者, 노예와 같은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 財産權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수탈되었는지를 몇가지 事例를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農 業 集 團 化 過 程

北傀는 「重要産業國有化 法令」에 의하여 重要 産業, 交通, 運輸 通信, 銀行등의 모든 手段을 完에 沒收시킨 뒤 農民들의 重要 生産手段인 土地, 農機具, 家畜 등도 이를 수탈하기 위해 農業集團化를 強行하였다.

이것은 해방직후 소위 土地改革이라는 명목하에 土地를 耕作하는 農民에게 分与해준 뒤 「土地는 영원히 밭갈이 하는 農民에게라는 口號를 외쳐냈으나 그것이 얼마나 가만적인 것이었던가는 農業集團化 強行에서 여지없이 들어났다.

農業集團化 政策은 한마디로 農民들의 個人所有로 되어 있던 土地, 家畜, 農機械등 生産手段을 社会的 所有로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農業協同組合(協同農場)을 組織하고 農民들을 強제로 이에 加入시키도록 推進한 것이다.

나는 金日成大學 農學部를 卒業하고 소련 「모스크바」大學에서 農業碩士過程을 밟고 歸國하여 農業省에 配置되어 당시 農業相 金一(現副主席)의 補佐官으로 있으면서 이 農業集團化 計劃의 核心 「멤버」로 參與하여 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體戰直後인 1954年初부터 農業集團化를 本格的으로 強行하기 시작하였는데 初期에는 「自願的 原則에 따라 協同組合에 加入하는」形式을 취하기 위해 이른바 試驗段階를 거쳤다.

즉 몇개의 模範 協同農場을 만들어 個人農보다 集團農業經理가

월선 우월하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보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썼으며 黨에서 集中的으로 支援하였으나 農民들은 쉽게 이에 응하지 않았다.

土地에 대한 愛着, 家畜, 農機具 其他 個人財産에 대한 所有辱등을 쉽사리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北傀는 그야말로 강제적인 手法으로 이를 強行하기로 方針을 세우고 協同農場에 加入하기를 주저하는 農民에게는 노골적인 裁制를 가하는 措置를 취하였다.

그래도 反抗하는 農民이 끝이지 않자 金日成은 측근자들을 모아 놓고 緊急會議를 열었다. 나 역시 金一 補佐官으로 이 會議에 參席하였다.

「도대체 農民들이 어째서 協同化에 反對하고 있는가?」

金日成의 호통에 측근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직도 農民들의 수중에 먹을게 남아 있어 그런거야! 자기 手中에 먹을게 없어 봐! 그래도 協同化에 반대하겠는가? .....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種子까지도 모조리 몰수하라구... 먹을 食糧이 없고 농사지을 種子마저 없다면 제놈들이 協同農場에 들어오지 않고 배길거야?」

그리하여 1954年 겨울과 1955年 봄에 이르는 사이에 악명 높은 「強制收買事件」이 實施되었다.

즉 協同化에 응하지 않는 農民에게는 生産量 以上の 收買量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로 納付하라고 다구치자 農民들은 種子까지 합하여도 收買量에 미달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서 시달된 收買量을 채우지 못한 농민들은 동네 倉庫에 가두어 拷問 毆打를 감행하는등 中世紀的인 收奪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協同化를 반대하던 農民들은 당장 굶어죽게 된 형편에서 協同農場에 加入하지 않을 수 없었고 土地를 비롯한 모든 生産手段을 고스란히 매앗기고 만 것이다.

北傀는 農業集團化를 강행하기 시작한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아 集團化를 完成했고 1958년 8월 소위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끝냈다고 선전했다.

결국 北傀 農民들은 모두 財産을 송두리채 수탈 당한채 자기 勞動力을 제공하여 最少限度의 分配(勞力代價)를 타먹는 완전한 雇用勞動者로 전락되었고 노예와 같은 처지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 個人商工業의 抹殺

農業集團化 강행으로 農民들의 手中에 있던 私有財産(土地, 家畜 農機具 등 生産手段)을 完全히 収奪한 北傀는 계속해서 그때까지 都市에 남아있던 個人商工業을 完全히 말살하는 政策을 강행하였다.

그동안 個人商工業에 대한 制限政策을 써오던 北傀는 1957년 12월 1일 中央黨 決定 「個人商工業의 改造를 完遂할데 대하여」라는 決定에 근거하여 個人商工業의 抹殺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個人이 所有했던 中小 工場 企業體, 그리고 이에 따른 設備 등을 개인수중에서 모조리 수탈하기 위해 生産協同組合을 만들어 이에 加入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農業集團化 과정에서 보여준바와 마찬가지로 個人商工業의 協同化 과정은 個人이 所有하고 있는 모든 生産手段을 社會的 所有로 轉換시킨다는 명목하에 모조리 수탈한 것이다.

특히 個人商業에 대한 制限抹殺 政策은 各種의 새로운 規定을 만들어 税金의 급격한 增額, 廢業稅의 新設등으로 個人商業으로 하여금 결국은 全財産을 몽땅 黨내 내놓지 않을 수 없게끔 措置를

취했던 것이다.

廢業稅란 이 시기에 個人商工業者들이 廢業屈를 提出하면 營業其間中에 많은 財産을 축적하였으리라는 전제하에 廢業에 따라 特別稅金을 부과하는 惡法이었는데, 이에 따라 이 時期 個人商工業者들은 빈손만 들고 나올 정도로 徹底하게 수탈당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個人商工業者들은 맨몸으로 生産協同組合에서 勞動하거나 다른 炭鉞 鉞山등에 勞動者로 配置되어 겨우 연명하는 賃金勞動者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1958년에 이르러 農業集團化 完成과 함께 個人商工業도 完全히 抹殺되고 만 것이다.

#### 北送同胞의 財産收奪

北傀와 朝總聯의 기만선전에 속아 北送되기 시작한 在日同胞들은 日本에서 所有하고 있던 모든 財産들을 몽땅 꾸러가지고 北韓으로 왔다.

나는 當時 在日同胞帰還 迎接委員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帰還에서부터 事後對策, 財産收買 計劃까지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確實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 乘用車를 비롯해서 갖가지 物件들을 잔뜩 가지고 왔고 日本에서 企業體를 運營하던 사람은 北韓에 가서도 個人經營을 할줄 알고(勿論 宣傳은 그렇게 했다) 機械設備, 原資材 등까지 모두 가지고 왔다. (北傀는 北送同胞를 통해 많은 機械設備를 들여오려고 이렇게 機械類, 施設用 物資, 工作裝備, 自動車등을 많이 가져올수록 환영했다.)

그러나 個人財産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物件들을 어떠한 方法으로 北傀 手中으로 수탈하느냐 하는것이 問題였다.

여기에서 北送同胞들의 私有財産을 어떻게 수탈해 냈느냐 하는것을 살펴보면 北傀의 財産剝奪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日本 大阪에서 식당과 ㆍ빠징꼬ㆍ를 經營하던 李晋燮이란 사람은 비교적 營業이 잘 되었던 모양으로 돈도 많이 貯蓄할 수가 있었고 自家用 乘用車는 물론 「트럭」도 두대나 가지고 있었다.

李晋燮일가가 北送될 때 自動車를 비롯해서 온 식구가 수십년을 그냥 먹고도 남을만한 財産을 가지고 淸津港에 닿았던 것이다.

淸津에서 北送同胞 迎接委員中 財産關係를 擔當한 迎接委員인 나는 그의 신상「카드」 뒷면 재산난에 빨간 글씨로 「上」字를 기록해 놓았다.

財産程度가 「上」에 속한다는 말이며 本人이 배치되는 職場의 黨委員會에서 財産關係에 特別한 주의를 경주하라는 암호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本人들에게 惡感情을 사지않도록( 특히 對外的으로 北傀가 個人財産까지 마구 수탈한다는 印象을 주지 않기위해 ) 하면서 그의 財産의 大部分을 소위 黨과 「國家」에 예속시키도록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個個人에 따라 財産의 수탈과정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수탈에 所要되는 時日도 달랐다.

물론 中央黨으로부터 原則問題는 시달되어 있었지만 사람마다의 처한 立場이나 환경 등이 상이했던것 만큼 그에 따른 節次도 同一할 수가 없었다.

李晋燮一家는 우선 淸津에서 職場配置를 위해 며칠간 收容되어 있는 동안 迎接委員으로 부터 朝總聯에 맡긴 돈의 領收証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것은 北送同胞들이 가지고 오는 財産 말고도 現金으로 持參해오는 것인데 日本貨幣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일단 朝總聯 中央本部에 그 돈을 위탁하고 해당 領收証을 가지고 오면 그 額數에 해당하는 돈을 北韓에서 支払해주시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기만수법이라는 것이 곧 판명되었고, 朝總聯은 그런 식으로 위탁받은 돈을 물론 北傀에 一括적으로 送金했다.)

李晉燮은 8千萬원(日貨)의 領收証을 가지고 있었다.

「이 領收証은 우리 黨에서 맡아두겠소」하고 나는 각본대로 領收証을 保管했다.

「아니... 그게 없으면 어떻게 여기(北韓)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 안해도 돼요... 黨에서 다 알아서 할테니까...」

그러나 北傀는 이에 해당하는 돈을 물론 支払하지 않고 고스란히 黨의 수중으로 수탈했던 것이다. 現金에 대한 수탈방법은 어느 北送同胞나 동일했고, 심지어 몇億엔의 領收証을 가지고 온 北送同胞도 고스란히 수탈당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北送同胞 全員에게 소위 定着金이라 하여 한 世帶當 10원~20원(北傀貨)씩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李晉燮一家가 배치된 곳은 江界 農機械工場이었다. 물론 勞動者로 配置됐다.

自家用 乘用車까지 가지고온 李晉燮이 北韓에서 農機械工場의 勞動者로 전락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모든 北送同胞들이 거의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승용차의 수탈과정은 참으로 교묘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약탈하면 共產主義者들의 本性이 그대로 들어날것이 두려워서인지 個人財産은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 는 原則을 宣傳하기 시작했다.



고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온 北送同胞들은 처음 얼마간은 타고 다니도록 許容했다.

3개월쯤 경과되고는 揮發類 配給을 끊었다. 個人売買란 있을 수 없는 北韓社會에서 個人이 휘발유를 구한다는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李晉燮은 무용지불이 된 승용차를 집앞에 세워놓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李晉燮이 일하는 農機械工場 黨委員會 委員長(지금의 黨責任秘書)이 저녁에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저기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는 동무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왜 타지않고 저렇게 세워두시오?」

「휘발유 배급이 안나와서 못타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黨委員長은 한참이나 뫼인가 생각하는듯 하더니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석힐바에야 차라리 저 차를 黨에 바치는게 어떻소 동무가 自進해서 말시오」

黨委員長은 특히 自進해서라는 말에 힘을 주어 같은말을 몇번이나 反復하는 것이었다. 이왕 개인으로 타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치해 둘바에야 黨에 「自進해서」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說得工作을 그후에도 몇번 더 되풀이 했다. 결국 李晉燮이도 이왕 자기가 타지도 못하는 바에야 黨의 強要를 끝까지 거절할 용기가 나지않아 자기 소유 자동차(승용차와 트럭)를 모두 黨에 헌납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江界 農機械工場에서는 전체 従業員이 참가한 가운데 會議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李晉燮이 自進해서 자기 個人財產을 黨

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찬양한다」면서 「이제야 日本에서 받았던 붉은 부르주아사상 잔재가 청산되고 새로운 共產主義 人間形으로 변모되어 간다고 떠들어댔다.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동이었으나 이런 수법으로 北送同胞가 가지고 왔던 승용차를 비롯한 값진 물건들은 거의 남김없이 党的 수중으로 수탈되어 갔다.

機械設備나 自動車같은 大型機械類들은 얼마간의 時日을 요하면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탈해 갔으나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直接 國營收買商店을 통해 없어졌다.

결국 北送된지 얼마간의 시일이 경과되면 北韓住民들과 비슷한 水準의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편 日本 大阪에서 製造業(洋服, 帽子 기타 衣類製造)을 하다가 北送된 金容皙의 경우는 自己所有의 工場을 그대로 옮겨온 대표적 케이스였다.

그러니까 그 工場의 機械設備는 물론이고 20년간 쓸 수 있는 原料까지 있는대로 몽땅 옮겨가지고 北送船을 탄것이다.

北傀는 이렇게 機械設備와 原料까지 몽땅 가지고 온 자에게 특별히 우대해 준다는 명목아래 해당한 生産協同組合을 設立하도록 해주었다.

金容皙은 西平壤에 衣類生産協同組合을 만들고 管理委員長이 되었다. 표면상 그 모든것이 그의 個人財産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에 그를 管理委員長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리고는 그 衣類生産協同組合의 黨委員長과 기타 幹部들은 黨에서 파견했고 生産活動은 黨的 指示下에 움직이게 한것이다.

얼마간의 시일이 흐르자 이곳 黨委員長이 명색상 管理責任者로 있는 金容皙을 조용히 불러냈다.

「동무! 동무는 아직 日本에서 온지 얼마 되지않아 잘 모르겠지만 企業所 運營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소... 말하자면 동무는 무엇보다 먼저 社會主義的 經營方式을 배워야 한단말이오...」

「이봐요... 난 日本에서 30年間이나 내손으로 이 工場을 運營해 왔소... 그래도 훌륭히 해냈는데...」

「여기는 日本이 아니라 社會主義祖國이란 말이오」

「그래서요? 저한테 요구하는게 뭣입니까?」

「아무래도 責任者 자리를 내놓고 우선 社會主義 經營原則을 배워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日本에서 받았던 낡은 사상장재도 뿌리뽑구 말이오...」

「그렇지 않아도 매일처럼 政治學習을 하고 있지 않소?... 지긋지긋하기는 하지만 말이오!」

「바로 그런 생각부터가 틀렸다는거요. 그러니까 이런 思想단련은 直接 勞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소... 따라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시 말을 끊고 金容哲을 바라보던 黨委員長은

「우리 黨에서는 동무를 茂山鉉山의 勞動者로 배치하기로 했소!」

「예? 아니 여기 工場은 어떻하구요?」

「이건 우리 黨에서 맡아서 잘 運營할 거요...」

「이...이건 日本에서 40여년간 피땀흘려 모은 제 個人財産입니다...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우리 黨에서 管理한다고 하지않소?... 당장 오늘중으로 茂山鉉山으로 떠나시오」

결국 金容哲은 자기의 모든 財産을 黨에 매앗긴채 맨몸으로 茂山鉉山 勞動者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후 몇년만에 그는 울화통을 견딜 수 없었던지 아니면 地下

抗道에서 고된 重勞動을 견디어 낼 수 없었던지 勞動現場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동시에 그가 가지고 온 모든 財産이 黨에 귀속되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하여 北送同胞들의 財産은 거의 大部分 北傀 手中으로 들어갔고 그들에게는 日常 사용하는 간단한 家材道具만이 남았을 뿐이다.

個人的 自由權이 保障될려면 우선 個人財産權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個人的 財産權이 掠奪당하고 있으니 言論, 出版, 結社, 職業 選択 居住移轉의 自由가 있을리 만무하다.

나는 国家 政治保衛部 指導員이었다.

- 平等權을 主張하면서 가장 不平等한 社会 -

孔 卓 虎

- 1945. 10. 24. 함경남도 북청군 후창면 당우리 출생
- 1962. 9. 함경남도 북청군 고등경공업학교 졸업
- 1962. 10. 함경남도 북청군 사회안전부안전원으로 입대
- 1963. 9.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입학
- 1967. 9.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졸업
- 1969. 8. 개성 사회안전국 지도원으로 전출
- 1973. 1. 정치보위부 산하 개성시 정치보위부 지도원
- 1974. 6. 14. 월남 귀순
- 1975. 5. 1. 국민은행 본점 입행
- 1976. 4. 현재 국민은행 본점 인사부 근무

나는 国家政治保衛部 指導員이었다.

나는 祖国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解放되던 해인 1945年 10月 24日 咸鏡南道·北青郡 후창면 당우리에서 부친 공인수와 모친 이경춘의 세째아들로 태어났다.

抑圧과 가난속에서 成長한 내가 18歲되던 해인 1962年 10月 나는 北傀軍에 徵集形式으로 北青郡 社会安全部 戒設員으로 入隊 하게 되었다.

當時 나의 希望과 포부는 金日成大学으로 進学하는 것이였고 또 이미 그 準備에 여념이 없을 때였지만 党的 命令에는 복종이라는 두자만이 따라야 하는 独裁社会에서 나의 希望과 포부는 社会安全機關 入隊로 끝나고 말았다. (勿論 그後 安全機關에 服務中 出身性分이 좋다는 条件으로 通信教育으로 金日成 大学을 卒業했다)

戒設員(간수)으로 入隊한 내가 단독 勤務에 들어간지 한달이 지난 어느날 戒護責任者의 命令으로 戒設員 6名 全體가 事務室에 集合하였다.

戒設員들의 얼굴을 쪽 훑어보던 그는 「오늘 또 새로운 犯人이 들어온다.

이 犯人은 다른 犯人和 달리 特別히 考慮해야 하며, 境遇에 따라서는 監房에 拘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犯人을 다루듯이 구타하거나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犯人이라고 하면 욕설과 함께 구타하는 것이 예사였던 狀況속에서 나는 戒護責任者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戒護員 經驗이 많은 다른 동료들은 모두가 알아 들었다는 態度였다.

그날 午後 4時頃 나는 事務室에서 自體學習을 하고 있었다.

그 때 問題의 犯人이 나타난 것이었다.

當時 豫審指導員이던 大尉 김창훈이가 풍채 좋은 한 사나이와 함께 들어 오더니 김창훈이는 함께 들어온 사나이에게 공손한 말로 의자에 앉기를 권한 다음 담배까지 권하면서 친절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직감적으로 거만을 떠는 그 사나이가 相當한 職位에 있는 黨 幹部가 아니면 道安全局에서 내려온 副局長 程度의 幹部로 느꼈다.

그런데 豫審指導員은 손님과 이야기 할게 있다면서 침실에 가서 學習하라는 것이었다.

침실에 들어온 저는 戒護責任者에게 事務室에 있는 저 손님이 어디서 온 幹部인가고 물었다.

戒護責任者는 빙그레 웃더니 幹部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던 犯人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戒護責任者의 말에 의하면 풍채 좋은 사나이는 北靑郡 黨 組織秘書의 동생으로 北靑紡織工場 經理課長인데 3年間

現金 3千원(北韓에서 一般 幹部級 노임 3年分以上)을 횡령  
 하였고 직포공 3명을 강간까지 한 犯人이라는 것이었다.  
 一般 住民이나 平黨員이라 해도 몇년 동안 징역살이를 해야 할  
 罪였지만 郡黨組織秘書의 동생이라 하여 特別 대우를 한 것이었다.  
 나는 그 전날 저녁 郡黨組織秘書한테서 온 電話를 豫審指導  
 員에게 바꾸어 주면서 들은 내용이 상기되었다.  
 고양이를 앞의 쥐마냥 부동자세를 取한채 「걱정 마십시오 비서  
 동지! 簡單히 文件이나 形式上 만들고 돌려 보내겠습니다.」  
 라고 電話로 답변하던 말이 바로 그 犯人의 형인 組織秘書의  
 党的 勢道였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 × × ×

北靑郡 社会安全部에서 戒護員으로 勤務하던 나는 1963年  
 5月頃 上級機關의 措置로 新北靑 社会安全部 警備中隊로 전출  
 하게 되었다.  
 新北靑 安全部에서 金日成 大學을 4年間 通信過程으로 卒業한  
 나는 1967年 초순 金日成과 黨 高位層놈들을 設衛하는 設衛  
 警備 分隊長으로 발령되었다.  
 한달이 멀다하게 地方으로 싸다니면서 호령질이나 하던 高位層  
 놈들의 地方 행각이 뜸해지자 設衛警備 分隊는 基本任務는  
 아니었지만 초소근무로 전출하게 되었다. 當時 우리 分隊가  
 擔當한 초소는 신포시 역전으로부터 북쪽으로 500 m程度 떨려  
 있던 첫 터널이었다. 分隊員들을 데리고 초소에 도착한 나는  
 11 초소와 12 초소에 각각 隊員들을 配置 시키고 勤務에 任하



게 했다.

當時 내가 나간 12 초소는 앞에는 마양도 (섬이름) 넘어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해발 300 m 程度의 야산이 주름잡혀 있었으며 우측으로는 신포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별일 없이 1주일간 지난 어느날 밤 11시경 보초병이 뒷산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린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여름 밤이었지만 11시면 늦은 시간인데 여자의 울음소리를 確認한 나는 필시 그 어떤 곡절과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하고 隊員 한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의 꼭대기에 오른 우리는 한참동안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야 밧줄로된 올라미를 목에 걸친채 실신해 있는 한 여인을 発見, 단숨에 업고 초소로 내려왔다.

초소에 到着한後 얼마 있다가 精神을 차린 그 여인은 나의 심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자살미수의 내용은 이러했다.

여자의 집은 신포시 포항동으로 당시 신포시 통조림공장 經理員으로 4年째 일하고 있는 24歲의 미혼 여성이었다.

그런데 1年前 한 職場에서 일하는 미혼청년과 눈이 맞아 비밀리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남들의 눈을 피해가며 北韓에서 所謂 말하는 「도둑사랑」으로 서로 사귀는 과정 중에 발각되어 수 없는 批判까지 받아 오면서도 서로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女子는 基本階級 出身 성분으로서, 父親은 新浦市 行政委員會 經理課長, 오빠는 北傀軍 海軍大尉로서 나무랄대 없는 基本階級 이었다.

그러나 青年의 가정은 좀 달랐다. 부친은 中農出身으로 新浦 水産事業所 어로공이었고 그 청년의 만형이 6.25 당시 월남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 청년의 出身 性分은 中農으로 또 越南者 家族으로 不純階層에 속하였다. 그런데 여자측에서는 當事者 서로는 좋다고 하지만 남자측 出身性分이 나쁘다 하여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여성은 父母들의 반대에도 不拘하고 그 청년과의 무조건 결혼을 주장하였으며 만약 父母들이 정 반대 한다고 해도 結婚式이 없이도 그 남자집에 가서 살겠다고 몸부림쳤다.

그만큼 그들 둘사이의 끊을 수 없는 정으로 밀착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 여성의 오빠인 北傀軍 海軍大尉가 그 여성을 방안에 가두어 놓고 매질을 해가면서 「너하나 때문에 온집안이 하루 아침에 돼지 굴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 같이 階級的 原則이 없고, 党性이 미약한 것은 동생이라는 立場을 떠나 党的 原則에서 볼 때 人民의 敵이며 党的 敵이라」며 굴복 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집을 뛰쳐 나와 사랑하는 그 남자와 살지 못할 바에는 죽겠다는 각오로 자살을 기도 했던 것이다.

그 여자로부터 자초 지종을 다 들은 저는 그 사실을 安全部長에게 보고 하고, 安全部長의 指示에 따라 隊員 1名을 시켜 그 여자를 집에 까지 데려다 주게 했다.

그일이 있은후나는 신포시 청년 이발관에 이발하러 갔다가 그 두칭춘 남녀가 階級的 차이로 결혼이 성사될 수 없게 되자 함께 신포 앞바다에 빠져 자살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모래 사장위에 발견된 두명의 시체, 그 누구도 빼여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그들은 죽음으로써 쟁취했던 것이다.

X X X

1969年 6月頃 나는 上級機關의 措置로 新北靑 社会安全部로부터 開城市 社会安全局 指導員으로 昇級轉出하였다.

開城市 社会安全局에서 1年間 勤務하던중인 1970年 末 開城市 자남동에 있는 「10号 商店」 (党幹部와 政權機關幹部用特別 商店)에서 큰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問題의 10号商店이란 바로 고위층 놈들만 상대하는 商店이다.

70年代前에는 「65号 商店」이라 불러 오다가 一般 住民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그 여론을 없애기 위해 「10号商店」이라 다시 명칭을 고치고 그 10号商店 앞에는 「兒童商店」이라는 간판까지 써 붙혀 놓았다.

말하자면 「10号 商店」을 兒童商店으로 위장 시키자는 것이었다. 바로 이 「10号商店」은 党 機關에서는 課長級 以上 幹部, 行政機關에서는 部長級 이상만 상대하는 商店으로서 一般 住民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의류품을 비롯한 必需製品들과 食料品들을 소위

간 부들에게만 공급하는 상점이였다.

바로 이 商店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였으니 問題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當時 나는 政治保衛部가 獨立 개편하여 정식으로 발족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安全局 政治保衛部 指導員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事件에 동원되지 않았지만 동료들을 통해 그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當時 安全局 산하 政治保衛部는 政治的인 問題만 관여하고 있었다)

사건의 내용인즉 이러했다.

開城市 自動車 事業所 運轉手 4名, 구들로 말하면 出身 性분이 나쁘다는 條件으로 中學校를 겨우 卒業하고 上級學校로 進學하지 못한채 운전수로 배치 받게 되었다.

어릴 때 부터 階級的 差別을 받아온 그들, 말한마디 잘못하거나 사소한 行動이라도 잘못하면 出身 性분이 나쁘다고 하여 批判 받거나 따돌림을 받았다.

더우기 社會的으로 버림을 받고 經濟的으로 차별을 받다보니 生活도 말이 아니였다. 모순으로 짝찬 억압사회 인간이하 멸시와 천대로 설음만 당해오던 그들이 을분을 참아오던 속에 하루는 「10號 商店에 들리게 되었다. 理由는 그들 4名中 한 청년의 부친이 병으로 자리에 눕게되자 사탕 과자를 사다가 대접하자는데 있었다.

一般住民을 相對하는 商店은 명절 때만 당과류가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10号 商店」만은 항상 당과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청년이 「10号商店」에 들어가 사정을 말하고 당과류를 요구했으나 販賣員들이 (이들 역시 高位層 자녀들임) 「이 상점은 당신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멀시로 울분에 찬 청년이 商店에서 뛰쳐 나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 했다.

이 말을 들은 그들 3명은 그 청년과 함께 복수전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바로 그 복수전이 그 상점을 야간에 습격하여 호화제품들을 절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밤 12時頃 自動車 까지 利用하여 商店을 습격, 必要한 商品을 차에 실은후 빠져 나왔지만 30일만에 社会 安全機關의 수사에 걸려 체포되어 주모자로 물리은 1명의 청년은 징역 15年, 나머지 3名은 각각 10年刑을 언도 받았다.

X                      X                      X

1973年 2月 15日 괴수 金日成 指示에 따라 社会安全부에 속해있던 政治保衛局이 獨立 개편되어 北傀 国家政治保衛部로 발족 되면서 나는 開城市 政治保衛部 盜廳課 指導員으로 勤務 하게 되었다.

金日成의 直屬 機構인 이 政治保衛部는 内容에 있어서 北傀에

서는 最高權力 機構였다.

이 政治保衛部가 발족되면서 北側에서는 一般住民들에 對한 監視와 抑壓은 勿論 徹底한 性分에 따른 階級的 差別을 더욱 甚하게 하였다.

當時 政治保衛部에 下達된 黨 中央委員會 指示에 따른 北韓의 階級的 構造를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① 基本階級

가) 核心群衆 : ( 革命렬사 유가족, 전사자 및 피살자가족 )

나) 基本群衆 : 黨 및 保衛部, 安全部, 軍人家族

다) 一般群衆 : 평범한 노동자, 농민

② 不純階層 : 処断者家族, 越南者家族, 治安隊加擔者 家族,

교화인 가족 ( 일반범죄 ), 商工業者 및 手工業者,

日帝時期 一般行政 事務職 其他 現實 動向이

나쁜자 ( 경제적 불평 )

③ 敵對階級

地主, 資本家, 富農, 民族反逆者, 祖国反逆者, 日帝時

警察, 宗敎人, 政治犯人 ( 出身性分에 關係 없이 黨과

金日成 社會體制에 對한 不平 不滿者 )

그런데 내가 政治保衛部 盜聽課 指導員으로 ( 黨的으로 세포 부비서

였음 ) 勤務한지 6個月이 거의 지난 1973年 8月頃 開城市

政治保衛部 第一 秘書가 급성 맹장염으로 開城市 中央病院에

입원하게 되었다.

開城市는 勿論 北韓의 어느 病院이나 환자가 차고 넘쳤다.  
強制勞動과 食糧難으로 환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死亡者의  
수도 날로 늘어만 갔다. 그리하여 開城市 中央病院도 入院室  
이 초만원이었다.

高位層 놈들만 対象하는 特別室 入院室이나 一般 住民을 대  
상하는 入院室이나 모두 꽉차 있었다.

그런데 第1秘書가 입원하게 되었다. 이쪽으로 말하면 地方에서  
는 高位 幹部로 特別室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였다.

그날 나는 保衛部 당직이었으므로 盜聽課 課長과 함께 第1  
秘書를 그쪽의 차에 싣고 病院으로 갔다.

병원에 到着하기 바쁘게 課長은 病院院長을 찾더니 特別室로  
案内하라고 호령하는 것이었다.

政治 保衛部 課長이라고 하지만 病院 院長 程度는 고양이  
앞의 쥐와 같았다.

院長은 入院室 外科 課長을 부르더니 特別室 狀況을 묻는  
것이였다. 그 때 外科 課長은 入院室에 이미 환자가 다 찼  
다고 말하는 것이였다.

勿論 그들도 高位層 幹部였다.

말하자면 高位層 内部에서의 職位를 따져 第1秘書보다 더낮은  
職位에 있는자가 없는가 하는 것이 問題였다.

當時 特別室 환자중에서 第1秘書보다 높은 職位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職位에 있는 사람이 바로 開城市

行政委員會 教育部 副部長이었다.

盜聽課長은 두말없이 院長을 보더니 그 副部長을 一般室로 옮기고 第1秘書를 그 特別室로 入院시키라고 호령하는 것이었다. 그 때 그 副部長의 병은 結核이었다. 勿論 地方에서는 어느 정도 高位層에 속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職位에 있는 政治 保衛部 第1秘書의 權力에 눌려 結局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一般室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것이 비단 高位層 内部에서의 權力 差別이라 볼 수 있지만 特別室을 전혀 구경도 할 수 없는 一般住民, 특히 一般 住民들 속에서도 不純階層에 屬하는 사람들에 대한 人間以下の 蔑시와 輕대는 말하지 않아도 明白한 일이다.

#### 一般的인 不平等 資料

##### ① 住宅配置에서의 不平等

北傀는 最近 아파트 建設에서 까지 權力 差異를 두고 짓거나 配置하고 있다.

그 실례로 - 5号住宅 : ( 방 5개 )

대상은 副部長 ( 차관급 ) 以上

- 4号住宅 : ( 방 4개 )

대상은 局長級 以上

- 3号住宅 : ( 방 3개 )

대상은 副部長 以上

기타 하부 職員은 2칸짜리 아니면 1칸짜리 방하나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一般 住民들 境遇에는 거의 모두가 1 칸짜리 아니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開城市 境遇 셋방살이가 一般住民의 約 50 ~ 60 %이다.

- ② 食糧配給에서도 党일군을 비롯한 高位層 놈들은 순白米 供給이며, 一般住民들 境遇에는 3 對 7 의 比率로 供給하고 있는데 雜穀 70 % ( 밀가루, 강냉이, 고구마 )이며 白米가 30 %인데 이것도 현미이다.

평양시만은 外國人들이 있다하여 5 對 5 로 供給하고 있다.

北韓에서 모든 階級的 差異와 모순으로 인한 不平等은 衣, 食, 住를 비롯한 生活面은 勿論 政治, 社會 모든 部門에서 다 存在하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나는 그저 내 生活周邊에서 일어났던 不平等에 関한 몇가지 사례만 들었다. 나역시 政治保衛部 指導員으로 一般 住民에 비하면 權力도 가질 수 있었고 經濟的 여유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韓國에 와서보니 北韓에서의 나는 韓國의 一般 勤勤者의 生活 그것마저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을 느끼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마치 서로 못살자는 것이 平等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程度이다.

그러면서 黨員이나 政權機關의 要員들이 權力과 党勢道를 누리고 官僚主義에 젖어 있으면서 남다른 待遇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떤 不平도 許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金日成은 自己의 獨裁體制를 維持하기 위해서 自己體制를 維持시키고 있는 特權者에게는 더많은 社會的 待遇를 해야 보다 忠誠과 熱誠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라스」(전유고 수상)의 「새로운 階級」은 北韓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共産圈에서 唯一하게 宗教가 禁止된北傀

— 信仰과 良心의 自由 —

崔 松 植

- 북괴군 종합군관학교 졸업
- 북괴군 공군사령부 상위
- 평양 공산대학
- 철도성원 산사무소 당위원장
- 1968. 10. 29 월남귀순

## 共産圈에서 唯一하게 宗教가 禁止된 北傀

오늘 北韓 社會는 어떠한 形態의 宗教도 存在하지 않으며 오직 金日成의 唯一思想만이 狂信教로 存在하고 있을 뿐이다.

北傀의 宗教 彈壓에 對하여 北韓 實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실감하지 못할것이다.

그 理由는 北傀의 宣傳 行爲는, 너무도 교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宣傳에 의하면 現在 北韓 社會는 民主主義 지상낙원으로 서 어떠한 信仰과 宗教도 許容되며, 充分히 믿을 수 있는 自由 까지 法的으로 保障한다고 宣傳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北傀의 憲法 54 조에서는 信仰의 自由가 分明히 保障된다고 明示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憲法의 條項에서 反宗教의 宣傳의 自由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傀의 所謂 朝鮮勞動黨 黨 規約에는 「宗教는 共産主義 鬪爭 精神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다」라고 明示되어 있다는 事實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分明히 指摘하고 넘어갈 것은 北韓 社會에서 憲法의 存在는 한낱 휴지장에 不過하고 그들의 모든 政策의 基本 바탕이 바로 黨 規約에서 나오고 있다는 事實이다.

여기에서 누구나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허위 宣傳과 宗教人 출신 들을 어떻게 處理했는가를 짐작할것이다.

現在 北韓은 宗教라는말도 모르고 있으며, 敎會도 없고 절(寺刹)도 없으며 오직 알고 있다는 것은 宗教人 출신은 共產主義革命의 徹底한 敵 이라는 것 뿐이다.

解放後 宗教人에 對한 박해가 서서히 가해지면서 그들을 소위 美帝의 間諜等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처단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宗教人 대학살은 6.25 戰爭時期였다.

1950年 10月 초순 北韓 피뢰군 부상병들이 줄을지어 北으로 밀리고 있을때 나의 故鄉 咸鏡北道 元山市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것은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所謂 南朝鮮 國防軍들에게 無電信號로 北韓의 秘密을 알려주고 「유엔군」 비행기에 信號를 하여 北傀軍의 진지를 폭격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당분간은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한데 모여 調査를 한다고 하면서 元山市 宗教人들을 約 700여명을 元山 나팔산에 있는 日本軍 포 진지로 사용하던 땅굴에 집결시켜 놓고 땅굴 入口를 封鎖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全部 질식시켜 죽여 버렸으며 숨이막혀 밖으로 뛰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피뢰군들이 밖에서 뛰여 나오는 대로 機關銃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참으로 끔직한 장면을 생각한다는 自體부터가 소름이 끼친다. 이때 그 시체더미 속에는 젖먹이 어린이로부터 70老人에 이르기까지 밧줄에 손이 묶여 있었다.

그와 같은 事件은 이미 그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다. 1949年 6.25以前에 元山市 덕원리에 修女院이 있었다. (일명 덕원 修女院)

여기에는 独逸系 神父들과 修女들이 많이 生活하고 있었다. 當時 元山時 政治 保衛部에서는 이 修女院을 國際間諜 소굴이라고 外國 神父와 修女들을 투옥하고 修女院을 폐쇄 시키고 韓国人들은 처형하였다. 그때 元山市 政治 保衛部는 修女院의 모든 備品을 몰수하였는데 지금도 元山에 가면 그 수도원 建物이 있으나 現在는 元山 農業大學으로 使用하고 있다.

特異할 사항은 이 학교 정문 옆 작은 建物에는 所謂 악질 宗教人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하여 所謂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展示場이 있다. 바로 北傀는 적반하장격이다. 이 展示場 안에는 그當時 独逸 神父들이 間諜用으로 使用했다는 단파 라디오가 있으며 조선 어린이 (7歲)가 사과가 먹고 싶어 修女院 구내 안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를 하나 주워 먹었다고 美國 神父가 이 어린이 이마에 천강수 (염산)로 화상을 입혀 「도둑」이라고 썼다는 큰 그림도 붙여놓고 있으며, 이 내용은 北韓의 人民學校 教科書 소재로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宗教는 帝國主義者들이 弱小國家를 侵略할 때 前哨戰으로 使用하는 武器라고 한다.”

나는 北傀軍 종합군관학교를 卒業하고 空軍 軍官으로 1966年 5月 平壤 문수리 北傀 中央飛行場에 勤務할 때 全部隊에 갑자기 非常召集 命令이 下達 되었다. 이 때가 午後 2時頃이다. 대낮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하고 모든 사람이 의아해 하고 있을 때 部隊 指揮官의 命令은 문수리 飛行場 進入路에

南朝鮮 間諜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全部隊員이 銃攻撃下에 逮捕한 結果 땅굴 속에서 두손으로 기여 나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말은 하는데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平壤 선교리 敎會 牧師였는데 6.25 동란 때 南韓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北韓에 남아 있다가 宗敎人들에 처한 처형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 집 안방 구들장 밑에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15年을 앓아서만 살았다는 것이다. 여력분들은 15年間을 땅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自己 婦人 이 주는 음식으로 대소변도 받아 내던 사람의 형상을 상상하여보라.

머리는 너무도 길어서 땅에 닿았고, 15年間 움직이지 못한 다리는 앓은뱅이 자세로 딱 굳어졌으며,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백지장 처럼 마치 유령같은 느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움직이는 것은 양팔로 겨우 꿈틀거리는데 형체였고 말을하고 있어도 입만 간혹 벌릴정도 이었다.

그런데 이 牧師는 自己 집에 숨어서 繼續 信仰生活을 하던 중 도로확장 공사로 집이 철거되면서 逮捕되게 된것이다.

저는 이 사람의 목에서 햇빛에 반짝이는 목걸이 십자가를 보았고 두손에 팍 움켜진 성경책을 보았다. 그후 그사람도 본인은 勿論 그의 부인까지도 人民裁判을 받고 처형되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케아릴 수도 없다. 그저 내가 목격한 가운데 한두가지의 예 들든것 뿐이다.

나 의 고향 元山에서 北으로約 30 리 올라가면 함남 문천군 석현 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1968年 8月에 대 사건이 있었다.

어느날 아침에 이곳 석현리 協同農場 農場員 여성동무가 作業 場으로 나가던중 개천옆 뽕나무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發見했다. 그 목걸이에는 영어로 「K」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너무도 오래 가지고 있어 쇠가 달아서 윤이나고 있었다.

이 여차도 그 목걸이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 허겁지겁 그마을 黨 委員長室(現在는 黨 秘書室)에 달려와 이 事實을 報告했다. 現場에 到着한 黨 委員長과 安全員들은 석현리 集團農場 全 從業 員들에게 作業中止 命令을 내리고 이곳 江辺 옆으로 全部落民 男女 노소 할 것 없이 集合시키고 人民裁判을 시작했다. 그 목 걸이의 主人은 다름 아닌 석현리 協同農場 축산작업반에서 勤務 하는 「김승현」이라는 73歲의 老人이었다. 이 노부부는 40年 間을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를 그전날밤 너무도 날씨가 무더 워 개천에 나가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들어 올 때 뽕나무에 걸어놓은 목걸이를 그만 잊어 버리고 들어왔던 것이다. 이 노 부부는 애석하게도 그 人民裁判 場所에서 公開処刑을 당하고 말 았다. 이처럼 現在 北傀는 宗教라고 하면 가장 악질적인 階級 的 원수로 規定하고 있음으로 北韓 地域에서는 누구도 감히 信 仰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전에부터 있던 教會建物은 劇場, 宣伝室로 利用하거나, 탁아소, 창고로 使用하고 있으며, 教會를 상징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은

전부 다 破壞 소각해 버렸다.

또한 산중에 있는 寺刹같은 것도 戰爭 當時 破壞된 것은 그냥 방치하고 아직도 성한 建物들에 대해서는 道, 市, 郡 政務院의 都市 經營部에서 管理하고 있으며, 寺刹을 상징할 수 있는 일체 물건 即 부처님 이라던가 그림은 전혀 없고 산중에 있는 절은 피뢰군 병영으로 使用되고 있거나, 黨員들의 休養所로 一部 쓰고 있다.

1962年 初에 평양 모란봉 人民學校에서는 2学年 담임교사가 人民學校 2学年 學生들에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귀중히 保管하고 있는 책을 가져오는 학생은 표창을 주고 모범적인 學生으로 上級學校는 勿論 父母님 까지도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철없는 국민학교 학생들은 自己 집에서 부모님들이 몰래 감추어 놓은 성경책을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 선생을 갖다준 結果 은 가족이 숙청당한 사실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비열하고 야비한 方法까지 동원하여 宗教人을 색출하여 처단하였던 것이다.

北傀는 살아남은 宗教人 本人은 勿論 그 家族 친척들 까지도 嚴格한 監視 對象으로 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다.

所謂 宗教人 「出身」이라는 계층은 反動階級이라 하여 出世는 생각도 할 수 없으며, 高等學校, 大學 까지도 推薦對象에서 除外 되고 있다. 때문에 現在 北韓에서는 自己 부모님들은 옛날에 信仰을 갖고 있었으나 解放後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信仰과 宗教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自己 父母들이 宗教人이라



는 딱지가 붙어 있음으로 自己들이 마음대로 上級學校진학이나 出世도 할 수 없으므로, 自己 父母들에 對한 願望은 큰것이다.

이 不滿은 共產主義 思想으로 徹底히 세뇌받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自己父母들의 過去를 批判하게 하며 심지어 自己를 낳아 길러준 父母들까지 高발하는 비극까지 초래되고 있다.

1966年 2月 江原道 안변군 모퉁리에서 解放後 부농 출신으로 肅清되어 이곳 山林保護所 장부로 일하던 이명용 老人(當時 67才)은 만성 기관지염으로 自己 집에서 運命하는 순간 찬송가를 부르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 때 안변 高等中學校 2學年에 재학중인 이씨의 세째아들 이학수라는 學生은 自己 아버지가 악질 宗教人으로 判斷하여 모퉁리 黨 委員長에게 이 事實을 高발하고 反動分子인 自己 아버지 시체를 장래를 지낼 수 없다고 산골짜기에 시체를 3個月間 버려둔 事實까지 있었다.

現在 北韓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思想이 다를 때는 날카로운 思想批判을 하고 있는 것은 至極히 정상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비록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라 할지라도 黨과 革命에 위배되는 思想을 가지고 있을 때는 即刻 黨과 自己 政治 組織앞에 이 事實을 通報하고 批判해야 한다. 그럼으로서 自己의 黨性에 對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아버지를 批判할때 그는 人間的으로 비록 아버지였지만 思想的으로 階級的으로는 원수이다.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냉정하게

批判하고 黨과 首領 앞에 이 事實을 報告한다. 이것이 北韓에서는 정상적인 것이며, 共產主義者들이 要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自己 父母 兄弟들이 死亡했을 境遇에도 성분이 나쁘다. 或은 黨과 革命 앞에 罪를 졌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그 시체 옆으로 가기를 꺼려하며 묘(산소)에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명할 때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 시체를 버리는 것은 共產主義 社會만이 특히 北韓 社會만이 있는 正當한 行動으로 評價받을 것이다.

以上の 안변군에서 있었던 事實을 北韓에서는 “찬송가” 事件으로 그 아들의 行爲를 높이 評價했던 事實까지 있다.

現在 北韓의 젊은 青年들은 自己父母의 성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共產主義 社會에서 共產主義 思想으로 徹底히 세뇌되어 自己들의 不幸한 이유를 共產主義 社會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過去 自己父母들이 無責任하게 성분이 나쁘고 宗教를 가지고 미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특히 宗教人 出身의 자녀들은 생각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약점을 利用하여 共產黨은 「벗겨주기 運動」을 社勞庁 單位로 전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비록 父母들은 한때 宗教人으로 信仰을 가지고 있던 反動分子이지만 幼의 아들은 父母의 影響은 받았으나 宗教 보다 共產主義思想教育을 더 많이 받았다. 때문에 “黨”이 젊은 새로운 世代들에게 黨과

革命과 金日成 首領을 위해 「犧牲的」인 공훈을 세웠을 때에는 비록 父母는 宗教人 出身이나 그 아들은 革命的 공훈을 세웠으므로 아무관계가 없이 성분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卽 누명을 벗겨준다는 뜻으로 벗겨주기 運動을 展開하였다.

其他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벗겨주기 運動을 하고 있지만 宗教人 出身 자녀들의 境遇는 더욱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特別한 영웅적인 行動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北韓에는 宗教가 전혀 없으며 옛날부터 歷史를 이어 오던 宗教나 토속신앙 흔적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共產主義者들은, 宗教人들은 共產主義者가 될 수 없으며 共產主義 思想에 전적으로 反對되는 思想임으로 徹底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宗教人을 肅清했다.

때문에 北韓에는 宗教人 出身 자녀들은 마치 罪人을 다루듯 하고 있으며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상대자를 選擇할 때 宗教人 出身이라면 마치 정신 이상 환자를 보듯이 생각하고 있는 實情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몇년간씩 生活하다가도 宗教人 出身이라는 事實이 發見되면 卽刻 이혼이 成立된다.

1962 내가 北傀軍 空軍 司令部 政治部에 勤務할 때 동료 指導員 池근철이라는 중위가 있었는데 自己 婦人과 結婚하여 3年間을 生活했으며 어린애도 하나 생겼다. 그런데 어느날 政治部 組織課에서 그 지중위의 婦人에 對한 身元 조회를

確證한 結果 그여자는 고향이 평북 의주군인데 과거 그의 아버지는 의주군 변하리 교회 장로였고, 그 부인은 敎會 성가대로서 活動을 했다는 內容이다. 그런데 그 때 그 부인이 聖歌隊로 있을 때 나이는 겨우 8歲의 소녀였었다.

그러나 宗教人 出身으로 낙인되어 평양에서 살지 못하고 男便과 離婚하여 어디론지 行方 不明된 事實까지 있다.

1964年12月 「크리스마스」前날 평북 정주에서 한 가정에서 촛불을 켜놓고 한 越南者 가족의 어머니와 그의 딸 둘이서 자기 아버지의 안녕을 하나님께 빌고 있을 때 그 옆집 사람의 신고로 安全部에 逮捕되어 現地에서 婦人과 그의 딸이 銃殺刑을 當한 事實이 있다. 이 事件으로 所謂 勞動黨 中央委員會 通報 書가 北韓 全 地域 黨機關에 下達 되었는데 그 題目이 「宗教人 出身에 對한 再評價」였던 것이다.

北傀集團은 이렇게 宗教人에 對해서는 繼續 不純分子로 하여 彈壓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다.

나도 北에 있을 때 宗教에 對해서는 아무런 私的 感情이 없으면서 악의를 품었고, 社會主義의 敵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1968年에 自由를 찾아 脫出하여 自由世界에 살면서 나는 基督教人이 되었고 우리 애들도 敎會에 나간다. 나는 여기에 와서 내가 잊었던 새로운 精神世界를 찾을 수 있었다. 北韓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내 불쌍하고 가난한 형제에게도 하느님의 祝福이 내려주시기를.....

나는 北傀의 言論人이었고 作家이었다

- 言論의 自由는 源泉的으로 剝奪되고 있다 -

李 恒 九

- 平壤文学大学 4年
- 平壤大学大学院 3年
- 北傀中央放送委员会 記者
- 北傀作家同盟 正盟員
- 北傀文芸總出版社 「現代文芸」編輯長
- 1966年 帰順

나는 北傀의 言論人이었고 作家이었다

## 머 리 말

1948年 12月 10日, 國際聯合 第3次 總會에서 採択된 「世界人權 宣言」에는 「言論의 自由」 問題가 一般的인 人權의 主要 項目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第2次世界大戰中 美國의 「루즈벨트」 大統領은 議會 敎書에서 「네가지 自由」에 對해 언급하면서 그 첫 자리에 「言論 및 發表의 自由」 問題를 내세웠다.

이렇게 言論의 自由는 人類 社會에서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철저히 保障되어야 할 一般的인 人權에 속하는 問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 괴뢰 집단은 言論의 自由를 무참히 말살하여 사람들이 누려야 할 初步的이고 基本的인 人權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은 더 심한 言論, 創作의 統例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나는 1966年 南派工作員으로 내려올때까지 내가 作家同盟 盟員으로, 그리고 勞動新聞과 地方新聞의 記者로써 활약하면서 體驗한것을 토대로 証言한다.

## 北傀의 言論 政策

北傀의 言論 政策은 모든 言論이 北傀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에 嚴格히 依拠하여, 그의 성과적인 觀철을 위한 組織者的, 宣傳 煽動者的 役割을 遂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北傀의 모든 新聞들의 編輯과 放送의 編成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진다.

첫째 新聞 編輯과 放送 編成은 北傀 勞動黨의 計劃과 指示에 의하여 進行된다.

둘째 北傀 勞動黨의 強力한 指導·統制·監督을 받는다.

셋째 北傀 勞動黨에서 新聞의 지면 할당, 放送 「프로」 時間 할당 등 形式的인面을 內容과 함께 간섭하여 言論의 劃一性을 기한다.

넷째 黨에서 報道·社·論說을 비롯한 일체 記事의 客觀性을 부정하도록 統制하고 共產主義的으로 해석하는 主觀性을 뚜렷하게 내세워 各種 記事들의 事實性과 真實性을 파괴하며 다양한 編輯을 저해한다.

다섯째 各 工場·企業所 및 協同 農場들에 通信員들을 두고 있으나, 그들도 黨에 忠實한 者로 選定하여,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독자 참여를 排除한다.

여섯째 모든 新聞과 放送들이 大部分의 主要 資料들을 北傀 官營 通信인 「朝鮮 中央 通信」에 의존하므로 여러 新聞과 放送의 內容들이 비슷하다.

일곱째로 北傀 社會의 矛盾性을 보여주는 일체 記事를 取扱할 수 없도록 統制하여 事實上 社會面이 없다.

여덟째로 北傀 勞動黨의 統制와 政務院의 檢閱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問題로 時差가 많은 非速報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新聞 編輯 및 放送의 編成의 諸 特徵들은 北傀의 言論政策에서 파생된 現象들이다.

여기서 參考로 北傀 치하에서 발행되는 新聞과 放送 種類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信社는 「朝鮮中央通信」 하나 뿐이다.

둘째로 新聞은 中央 新聞들로 勞動新聞 (北傀 勞動黨機關紙, 日刊)  
民主 朝鮮 (北傀 最高 人民會議 및 政務院 機關紙, 日刊) 平壤  
新聞 (平壤市 人民 委員會 機關紙, 日刊), 勞動青年 (社勞青  
中央 委員會 機關紙, 日刊), 勞動者 新聞 (職總 中央 委員會  
機關紙 隔日刊), 文學 新聞 (作家 同盟 中央 委員會 機關紙,  
隔日刊) 朝鮮 人民軍 (北傀軍 機關紙, 日刊) 등이 있고 各 道  
日報들 9 個, “개성 新聞” “祖國 統一” “少年 新聞” “教員  
新聞” “農民新聞” “技術 經濟 新聞” “交通 新聞” “産業  
新聞” “建設 新聞” “體育 新聞” “수산 新聞” 등등이 있으  
며,

둘째로 放送 機構들로는 “朝鮮 中央放送 委員會” “平壤 放送  
委員會” “통혁당의 목소리 放送” (黑色放送) 과 各 道, 市, 郡  
放送 委員會들이 있다.

일체 新聞들에 對한 指導 統制는 中央黨 (北傀 勞動黨 中央  
상설 기구의 약칭) 宣傳 煽動部 新聞課의 各 道黨 宣傳 煽動部  
의 指導, 統制, 監督下에 進行되며 政權 機關과 社會團體 機關紙는  
該當 黨團體 宣傳 煽動부의 指導, 統制, 監督下에, 各各 宣傳部들  
에서 進行한다.

또한 放送에 對한 指導 統制는 「中央黨」 宣傳 煽動部 放送課  
와 各 道, 市, 郡黨 宣傳 煽動部에 의해서 進行된다.

## 言論人들에 對한 統制

### — 黨的 統制 —

記者, 編輯員, 編成員, 社, 論說員 등 일체 言論人들은 해당 黨



團體의 統制下에 取材·記事 作成·編輯 및 編成 作業을 하도록 統制를 받고 있다.

모든 新聞 및 放送의 編輯, 編成 計劃은 該當 黨 團體 委員會의 承認을 받아야 効力を 發生한다. 特히 中央新聞과 放送은 「中央黨」 宣傳 煽動部 新聞課와 放送課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各 記者는 이렇게 作成된 編輯 및 編成 計劃에 의하여 自己에게 割當된 分野에 對한 取材를 할 수 있으며 그에 對한 記事를 作成 提出할 수 있다.

또한 社·論說員과 編輯員·編成員은 計劃에 依하여 取材·作成된 記事를 承認된 編輯 또는 編成 計劃 대로 編輯, 編成해야 한다.

이와 같이 記者·社·論說員·編輯員·編成員들은 黨的 統制를 철저히 받으면서 取材 活動으로부터 編輯·編成에 이르기 까지의 作業을 進行하여야 한다.

實例로 한 記者가 黨에서 承認된 計劃에 의하여 咸鏡南道 咸興市 興南 區域에 있는 興南 肥料工場의 事業 成果를 取材하러 갔다가, 이웃 工場인 17号 火藥工場의 大대적인 爆発 事故(1964年 實지로 있었던 일임)를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그에 對한 取材를 해서도 안되며, 더구나 記事化해서도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선 일체 그 社會의 弱點이 폭로될 수 있는 記事들을 新聞이나 放送에 報道할 수 없게 強力히 統制되어 있기 때문이며, 黨이 承認한 計劃外의 것에 눈을 돌려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言論人들에 對한 黨的인 統制는 該當 新聞社 및 放送 機關 黨團體에서의 黨生活 統制 形式으로 直接 감행된다.

한편 各 道에 나가 있는 中央 報道 機關의 特派 記者들에 對한 黨的 統制를 위해서, 北傀는 中央 新聞 機關의 特派 記者는

各道日報 初級黨에, 中央放送機關의 特派 記者는 各道 放送委員會 初級黨에 臨時 黨籍을 올려 거기서 私生活에 이르기까지의 統制를 받도록 하고 있다.

### — 社會團體를 통한 統制 —

모든 新聞, 放送, 出版社에 勤務하는 言論人들은 所謂 「朝鮮 記者 同盟」에 加入하여 統制를 받도록 하고 있다.

北傀 記者 同盟은 平壤에 中央 委員會를 두고, 各道에 支部를 두어 言論人들을 統制하고 있다. 그러나 記者 同盟은 黨의 監視 統制, 監督을 보조하는 役割 밖에 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言論人들에게 強力한 作用은 하지 못하고 있다.

言論人들은 이 記者 同盟 외에도 職業同盟에 加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事實上 職業 同盟이 言論人들에게 作用하는 役割은 休養 또는 療養權이나 發行해 주는 程度로 지극히 미미한 形便이다.

### — 檢閱 制度에 의한 統制 —

北傀 치하의 모든 新聞과 放送은 北傀 政務院 出版總局의 檢閱 없이 印刷 發行되거나 放送될 수 없다.

여기서 所謂 「政務院 出版總局」의 機能을 考察해 보면 言論의 彈壓, 유린 실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政務院 出版總局」은 北傀 치하에서 發行되는 新聞, 雜誌, 文學 藝術 作品과 放送 內容들을 檢閱, 統制하는 機關으로서 모든 言論이나 文芸 作品은 出版總局의 檢閱 捺印 없이는 世上에 發表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出版總局」은 形式上 行政 機關인 政務院에 所屬된 것으로

로 되어 있으나, 事實上은 黨 機關으로서 「中央黨」에서 人事管理  
를 하고 指導하는 言論檢閱統制機構이다.

「出版總局」에는 出版처가 있으며 檢閱 部署로는 第1部 (廣告  
文·포스터·전단·선전물), 第2部 (政治 刊行物 放送物), 第3部  
(文學·藝術·作品), 第4部 (經濟, 社會, 教育物), 第5部 (科學  
技術物) 등이 있으며, 各部에는 相當수의 責任 檢閱員과 檢閱員  
그리고 校正員들이 있다.

또한 各道에 「政務院 出版總局」 직속 지부를 두고, 各道  
日報와 放送, 各種 文化, 藝術 作品들을, 出版, 放送, 公演 및  
전시하기 전에 檢閱한다.

그리고 出版總局은 新聞과 放送의 時事性を 保障하기 위하여  
主要 日刊誌와 中央 放送 委員會에 檢閱員들을 장주시키고 있다.  
其他 文芸 作品에 對한 檢閱은 出版總局 該當 檢閱部에서  
進行하며, 各種 公演物과 展示物에 對한 檢閱은 條件에 따라 公  
演 또는 展示 現場에 責任 檢閱員들을 派遣하여 實施한다.

「政務院 出版總局」에서 檢閱하는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金日成 偶像화에 손색을 줄 要素는 없는가?
- ② 所謂 「黨의 唯一 思想 體系」 確立에 기여할 수 있는  
가?
- ③ 「國家」 및 「軍事 機密」을 노출시킨 要素가 없는가?
- ④ 黨의 路線과 政策을 그릇되게 反映한 곳이 없는가?
- ⑤ 社會制度 및 社會生活의 부정적인 側面들이 露出된 곳이  
없는가?
- ⑥ 資本主義的思想要素가 나타난 부문이 없는가?
- ⑦ 大衆의 共產主義敎養에 저해되는 要素는 없는가?

⑧ 所謂 「社會主義建設」과 「人民經濟實行」에 해를 끼치는 要素는 없는가?

⑨ 國際 社會에서 혹평·받을 要素는 없는가?

⑩ 記事에 戰鬪性 革命性 階級性이 어느 정도 발양되었는가?

⑪ 단어 및 語彙 表現이 正確한가?

이러한 檢閱內容에 대해 철두 철미하게 따지고 들며,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그 記事를 破棄할 權限을 가지고 있다.

실례로 主要 工場 企業所의 사진도 그 일각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統制하고 있으며, 그 近方의 自然 풍경 (산과 들)도 함부로 게재할 수 없도록 統制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統制는 地形이 알려지면 主要 工場 企業所의 位置가 「敵」에게 폭로되며, 工場 全景을 소개하면 企業所의 規模를 「敵」이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取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写真 한장도 마음 대로 新聞에 게재할 수 없도록 統制를 당하는 形便이라는 것이 明白하다.

## 記者의 取材 및 記事作成過程에 대한 事例

言論에 對한 彈壓 유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한 新聞社의 記者가 取材를 떠나서 記事를 作成하기까지의 過程을 체험을 通해서 말해 보기로 한다. 내가 産業部의 記者로 所屬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新聞社 産業部長은 黨에서 承認된 新聞 編輯 計劃 (主로 週別 日別)에 依拠하여 나에게 取材 및 該當 記事를 作成 提出할 任務를 준다.

여기서 나는 청진에 있는 「金策 製鐵所」 용광로 職場의 作業

成果를 取材하라는 任務를 받았다고 나는 우선 部長이 作成해준 출장 신청서를 가지고 新聞社 幹部部로 가서 新任狀과 「出張 證明書」를 발급 받는다.

그 두가지 證明書を 經理部에 提出하여 出張期間 만큼의 糧卷과 出張費를 支給 받는다.

또한 必要時는 「위생 통과증」을 準備해야 한다.

出張 準備를 마친 나는 該當 駅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야 한다. 나는 「特殊 公務」에 該當됨으로 차표를 사기 어렵지는 않다.

이리하여 청진에 도착하면 우선 取材 對象地의 黨 機關인 「金策 製鐵所」 黨 委員會 宣傳 煽動部를 찾아 간다.

中小 企業所나 農村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道黨 委員會 또는 郡黨 委員會 宣傳 煽動部에 찾아가는 境遇가 많다.

나는 該當 黨團體 宣傳 煽動部長, 또는 指導員에게 訪問 目的을 說明하고 必要한 資料를 事前에 얻게 된다.

該當 宣傳 煽動部에서는 自己 企業所에 對한 地上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成果로 자랑할만한 資料들을 적극적으로 提供했었다.

이것이 1次 取材이다. 이 1次 取材 過程에 나는 該當 宣傳 煽動部에서 新聞 지상에 자랑하고 싶은 內容들을 具體적으로 蒐集하며, 모범으로 一般化 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資料들을 蒐集 한다.

여기서 案内員(흔히 該當 宣傳 煽動部 責任 指導員)의 案内를 받아 基本 取材 對象인 용광로 職場으로 간다.

그러나 根本的인 問題와 統計的인 수치에 대한 取材는 이미 宣傳 煽動部에서 했으므로, 그를 補完하기 위한 取材에 주력한다.

그래서 흔히 該當 職場의 자랑거리와 作業 成果들을 올린 作業 반원들의 經驗談과 教訓들을 取材한다.

이 과정은 앞으로記事化할 용광로 職場 作業 現場에 대한 분위기를 익혀 두고, 新聞에 模範 勞働者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진 촬영과 결의 피력에 대한 取材를 흔히 한다.

이러한 取材 過程에서 나는 該當 職場이 가지고 있는 矛盾點과 반드시 고쳐야 할 점 등 弱點들을 메모하는데 이는 新聞에 실기 위한 資料의 蒐集이 아니라, 北傀 黨에서 郡黨 秘書級 以上の 幹部들에게 배포하는 秘密通信(흔히 “비통”이라고 부른다)에 提供할 資料를 蒐集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活動은 北傀의 産業 情報員으로서의 記者의 本質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各 工場 企業所와 協同 農場들에서 記者들을 경계하거나 「정중」히 대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여간, 일단 新聞에 게재할 記事 取材를 끝내면 나는 다시 該當 企業所 黨 宣傳 煽動部로 가서, 部長 또는 責任 指導員에게 내가 取材한 內容과 그것을 어떻게 記事化 하겠다는 구상을 개략 說明해 준다.

이럴 때 記事의 比重이 크면 該當 企業所 黨 秘書에게 이러한 說明을 해줄 境遇도 있다.

그러나 取材 內容과 記事化 構想에 대한 說明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該當 企業所 幹部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要求를 充足시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시 取材 나올 때의 호의적인 協助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說明하는 境遇도 많았다.

나의 取材 期間 中, 숙식은 대개 該當 企業所에서 주선해 준다.

위와 같이 取材 活動을 마치고 난 나는 新聞社에 돌아 와

該當 部長에게 取材 結果를 報告하고, 그것을 記事로 쓸 구상을 의논한다.

그러나 北傀 치하의 新聞 記事는 거의 檢閱을 의식하거나, 찬양 일변도로 써야 할 제약으로부터 거의 圖式化 되어 있으므로 구상의 피력과 그에 대한 承認 過程에서 별 論難은 없는 것이 普通이다.

다만 이때 記事를 몇개 쓸 것이며, 사진을 넣을 것인가? 넣는다면 어느 사진으로 할 것인가? 등을 決定한다.

이리하여 일단 記事를 作成 提出하면 부장과 부주필의 결재 후에 編輯局으로 넘어가서 該當 「마켓」에 들어가 다른 記事들과 함께 印刷된다.

初校紙가 나오면 「出版總局」 檢閱員이 그를 檢閱한다, 檢閱 內容은 상술한 바와 같다. 만일 그 檢閱에 내 記事가 통과 되지 못하면, 그 記事를 빼며 빈 자리 만큼 다른 記事를 채워 넣어야 했다.

## 맺 는 말

나는 北傀 치하에서 言論의 自由가 얼마나 무참히 彈壓 當하고 있는가를 나의 記者生活과 作家生活에서 몸소 체험하였는데 지금의 北傀 治下에서는 그 彈壓이 그때보다 더 甚하다.

北傀 치하의 言論은 党에 어용화된 宣傳 煽動의 道具로, 党的 要求대로 大衆을 묶어 세우기 위한 道具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래서 住民 大衆은 가장 基本的이고 一般的인 權利인 「알 권理」를 마구 유린 當한 상태에서 正確한 世界의 움직임이나 대내의 동향을 모르면서, 옆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운 말처럼 金日成 도당의 채찍질을 받으며, 그들이 내모는 길로만 나가는 비참한 生活을 強要 當하고 있다.

## 居住移轉，旅行의 自由

— 故鄉 그리고 軍隊生活 —

유 대 운

- 1946年 7月 23日生
- 本籍：平北 강계군
- 1964年 자강도 성간군 성간중학교 졸업
- 1964年3月 - 1970年 人民軍士兵服務
- 1970年 - 1975年3月 北傀軍 12師團 30聯隊  
1大隊 3中隊 2小隊長
- 1975年 3月 歸順
- 1975年 8月 陸軍 少尉 任官



## 居住移轉, 旅行의 自由

내가 大韓民國의 품에 안겨 생활한지도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년이라면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2년이란 세월에 北韓 社會에서 산 30여년의 세월보다 몇갑절 더 값지고 보람찬 나날들을 보냈었다.

北韓 社會에 있었다면 일생을 두고 목격할 수 없고 느껴 볼 수 없는 오늘의 이 행복한 생활은 비로소 이몸이 自由大韓의 품에 안김으로써 自由의 참된 맛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정말 꿈과도 같은 일이다.

이몸이 북한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각도 戰爭狂信者 金日成의 忠犬 노릇을 하며 폐쇄되고 抑壓된 共產治下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그 보다 北韓傀儡들이 내모는 戰爭準備에 내몰려 죽음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北韓社會에서의 그 악몽과 같은 30여년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듯 아프다.

무엇때문에 나의 이 작은 가슴이 멍이 들었고 쓰라릴까 여기에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1974年 10월 어느날 나는 초소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일요일도 관계없이 軍官(장교)들은 근무하면서 교대

로 휴식하도록 되어있었다.

나는 이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哨所勤務 常番(상번은 근무 진출을 말함)을 끝마치고 종합감시를 하고있는데 연락병(전령)이 뛰여와 中隊部에서 들어 오라는 것이였다. 中隊部에 도착하니 中隊長이 집에 가서 휴식하고 오라고 한다.

나는 천천히 準備하여 집으로 내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밤이 꽤 이숙한지라 周圍는 조용하고 軍官宿舍에서는 이따금 개짖는 소리만이 들렸다.

집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아내가 불을켜고 나와 문을 벗겨 준다.

아마도 아내는 자리에 누웠던 모양이다. 방에 들어서자 아내는 발을 닦으라고 물을 떠다 놓는다. 나는 말없이 물을 받아 발을 닦고 있는데 아내가 나에게 어제 집에다 편지를 부쳤다고 이야기 한다.

본래 그리 편지를 잘쓰지 않는 성미인 아내가 편지를 썼다기에 나는 의아하여 왜 편지를 썼느냐고 물었으나 아내는 어머님 오라는 편지를 썼다고 대답한다.

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오는가 그렇게 얻기 힘든 通行証을 어떻게 메느냐고 하면서 오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너무도 빠른 일이다. 그러자 아내는 어머님이 오지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解産날자도 얼마남지 않았고 김장도 하자면 어머님이 오시지 못하면 야단이라고 근심을 한다. 나 자신도 깊은생각에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김장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후에 김장을 하자니 解産한 후에는 김장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뻔하지 않은가?

한심한 일이다. 解産한 후 뒷바라지는 누가하며 김장은 어떻게 하는가?

어머님이 오셨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그러나 어머님이 울수가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후」하고 한숨을 짓고 더 생각을 안했다. 생각한다해도 필요 없는 일이다. 어찌 北韓社會에서 자기 며느리가 解産한다고 通行証을 요청하면 그런 理由로 通行証을 떼주겠는가. 그러나 아내는 혹시나 하여 편지를 썼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뒤 다시 집에 휴식을 취하러 내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으로 부터 편지가 왔다. 그때 어머님에게서 온 편지는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편지를 가지고 洞에 찾아가니 그런 이유로는 通行証을 떼줄 수 없다고 否決을 놓아 가지 못하겠다면서 너희들의 살림을 보내놓고도 1년이 넘도록 한번 찾아보지 못한 이 父母를 원망하겠지만 갈수 없으니 안타깝다는 편지의 내용이였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머님 오지 못할것 같기에 전보를 쳤다고 한다. 어떤 전보를 쳤는가고 물으니 「아들 병 위급」이라는 전보를 쳤다고 한다.

解産날자가 박두해지자 아내는 촉박하여 전보를 쳤다는 사실을 나는 깊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는 기일이 경과하면 虛偽 電報를 쳤다하여 部隊에 通報되고

黨으로 부터 批判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내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나라도 다른 길을 모색해 주었는가면 모색해줄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관심도 크게 가져보지 못하였다.

나는 아내의 행동을 생각하며, 父母의 곁을 떠나 근 2년이라는 세월이 되도록 사랑하는 父母님들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하고 이 의시 의시한 산골에 데려다 놓고 부담을 준 일, 게다가 1주일이나 10일이 되어야 겨우 남편을 만나 볼수 있게 된 처지,

또한 딸자식을 멀리 떠내 보내놓고도 한번 찾아 보지 못하는 父母님의 심정, 이것이 과연 父母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서 인가? 아니면, 자식이 부모님을 뵈옵고 싶지않기에 그렇게 되였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인가? 그때에 나는 그저 왜 이런 딱한 사정인데도 몰라주는가? 어째서 通行証을 메주지 않느냐 하는 원당과 안타까운 심정만이 앞섰다.

깊은 생각에 접어들자 다른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하겠는데 다른 길은 있을수도 없다. 어쩌다 1주일 혹은 열흘정도에 한번씩 집에 내려가 속옷이나 갈아입고 그이튿날 아침이면 또 부대에 나와야 하니 시간적 여유 조차도 없다.

너무도 가정에 무관심하였다는 후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내 근무가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던 끝에 아내에게 앞으로 部隊에 通報되어 批判을 하면 批判을 받겠으니 차라리 내가 죽었다고 전보를 치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내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치겠다고 하였

다. 나는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전보를 쳤으면 좋겠는데 평강까지 나가자면 하루가 걸리는데 그런시간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명령조로 전보를 치라고 하였다.

그후 아내는 기일이 급하게 되자 시키는대로 내가 죽었다는 전보를 쳤다. 나는 초소에 올라와 勤務하는 동안 어머니의 소식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가운데 11월초에 上級機關에서 講習이 있는데 講習에 참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講習을 가기 위하여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뒹굴면서 고통을 참기에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앓아누웠다. 아내가 배가 아픈 것이 얼마가지 못할 것 같으면서 어머니가 왜 오지않는가 하고 매우 슬픈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어떻게할 도리가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講習을 떠나야 하는데 저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떠나기에는 내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上司의 명령이니 어길 도리는 없지않는가. 나는 할수 없어서 이웃집 아주머니도 생각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자니 모두 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단 말인가. 자기 직장을 쉬면 勞力点数가 그만큼 적게나오고 賃金이 적어지며 配給이 적게 나오는데 누가 우리 아내를 돌봐 줄수 있겠는가. 그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궁리 끝에 집근처에서 탁아소 보모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나는 새벽

일찌기 講習을 떠났다.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배아프다고 뒹글던 아내가 불쌍했다. 허나 어찌 할 수 없는일, 그렇다고 北韓社會에서 가정일 때문에 講習을 빠진다는 것은 더우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党性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후일 자기의 사업에 커다란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사상적인 批判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머니에게 보아달라는 부탁만을 하고 떠난 것이다.

이때까지 나의 觀念은 이것이 黨員으로써 옳은 行動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다. 이러한 觀念에 까지 이르렀으니 北韓住民들의 統制生活과 組織生活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를 짐작할 것이다.

講習을 시작한지 이틀이 지난 다음날 아내가 解産을 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다행이도 解産하는 날 어머니가 오셨다고 한다.

그때 나의 마음은 한결 놓였고,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나는 그날 저녁 講習所 所長에게 저녁에 틈을 봐서 집에 좀들렀다 오겠다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10시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아내를 불들고 화장실에 갔다오는 모양인지 부엌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 멀리에서 보인다.

물론 일상시에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이때처럼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마음도 가벼이 방으로 들어섰다.

어머님은 나를보자 「講習을 갔다더니 어떻게 왔느냐」며 「아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집은 거들떠 보지않고 내가 오지않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면서 크게 꾸중을 늘어 놓으시었다. 나는 어머님이 오신 것이 그저 고마웠기 때문에 어떤 꾸중도 달갑게 받아들으며, 마음속으로는 어머님이 그렇게 오기 힘든길을 오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만이 들었고, 들뜬 어린애 마냥 기뻐뿐이었다.

어머님은 나더러 내일 모래에는 떠나야 하는데 그안에 講習을 끝내고 돌아 올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나는 講習도중이니 두 세번 이야기 할 수 없으니 講習이 며칠 있으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것을 간곡하게 여쭙었다.

어머님은 通行証 허가를 6일동안 받았기에 그때까지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면서 꼭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기한내에 講習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처럼 어머니 역시 지켜야할 기한이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제셔야지, 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通行証을 다루는 그들도 사람인데 사유를 이야기하면 通行証 날자를 며칠 어겼어도 용서받을수 있을 것인데 하고, 일방적으로 내말만 하고 講習所로 뛰쳐나갔다.

講習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어머님이 通行証 날자가 늦었다고 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근심만 하신다면서 어머님의 通行証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겠다고 한다. 나역시 다급하다 보니 어머님께 드린 말씀이 그렇게 나온것 뿐이지 나라고

보족한 수는 없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 通行証 연기 관계를 하루빨리 해결해  
드려야 했는데 그렇다고 通行証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평강  
까지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평강이라고 하면 郡所在地인데 그곳까지 가려면 大隊長의 批准  
(許可)를 받고 聯隊까지 가서 外出証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으  
니 그일은 時日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더우기 문제이었다.

그렇다고 시간을 내겠다는 것도 党性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겠기  
에 나는 휴식하는 날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通行証 연장에 대한  
수속을 밟을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후 휴식하는 날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通行証을 연장하려  
고 里分駐所(警察官支署와 같음)를 찾아갔다.

나는 通行証을 연장하러 가면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대  
로 이야기를 하면 별탈없이 연기해 주리라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원래 따지고 원인을 케는 社會가 北韓인지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分駐所 取扱員은 대뜸 날자가 늦었다면서 연장해줄 수 없다고  
否決을 놓는다.

나는 軍官이라는 체면도 잊어버리고 우선 굶신거리며 사정이야기  
를 하였다. 처가 解産을 하여 어머니가 오셨는데 내가 齣習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기일내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일을 어기었  
다고 사정을 알아 달라고 하면서 통사정을 하였다.

나는 里分駐所에서는 겨우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음 軍人民委員會 2部에가서 通行証 연장을 위하여 通行証을  
들이보였다. 역시 군에서도 通行証 날자가 늦었다면서 否決을 놓  
는 것이 아닌가. 첩첩산중이었다. 갈수록 태산이었다.

나는 사유를 자상하게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郡人民委員會 2部  
擔當課長은 國家法을 위반했기 때문에 罰金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罰金을 물기 전에는 通行証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댔다.

나는 작은 돈이라면 그냥 물고 通行証을 연장하려고 「얼마인가?」  
고 물으니 30원이라고 한다. 30원! 30원이라면 少尉인 나의  
반달봉급이다. 罰金이라는 것 그 자체가 抑鬱한데 반달봉급을 내다  
니 어이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은채 대뜸 이야기를 꺼냈다.

「과장동지! 의식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런 딱한  
사정이여서 가지못하였으니 과장동지도 그런 사정을 알아주어야  
하지 안겠는가」하고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罰金을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면 그쪽에서 벌금징수  
통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을 잘지키라는 것은 김일성 수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通行証은 고향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징수통지  
는 통과시켜준 곳으로 벌금징수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도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罰金을 銀行에 물고 通行証을 연장하여 그

이튿날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를 보낸후 자신을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내 반달봉급을 털어서 벌금을 문것도 抑鬱하지만 도대체 이놈의 사회가 왜 이모양인가 하는 것이 더분했다.

편지를 하여 어머니를 오라고 하였으나 며느리의 解産 幫助(幫助는 돌봐줌의 뜻으로 쓰임) 이유로는 通行証을 발급할 수 없다는 현실, 할수 없어 아들死亡이라는 전보까지 쳐서야 겨우 6일간(왕복 4일 빼면 집에있는 날은 2일)의 期限을 받고 온 사실, 딱한 사정의 일로 가지못한 것이 罪가 된다고 罰金을 물라는 사회,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집을 나와서 軍隊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보지 못했다. 나는 이때에 비로써 北韓社會의 그 폐쇄되고 統制된 사회에 대하여 더없는 회의를 갖게 되었다.

나는 일상적으로 教養을 받으며 들어 온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人權의 나라요, 누구나가 자유로운 地上樂園에서 살고있다」고 들어 왔는데, 과연 이것이 地上樂園이며 자유로운 사회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현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것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런일을 당하고 보니 소름까지 끼쳤다.

父母가 자식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며느리의 解産으로 通行証 날자가 넘었다는 것이 法違反이라는 사회, 친척집도 마음대로 갈수 없는 사회, 유명하다는 名勝地는 말로나 좋다는 것을 들었지 가볼 수 없지안는가? 이것이 自由이고 地上樂園이란 말인가.

그레도 나는 여태껏 소위 金日成과 党만이 나의 引導者라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오나 또는 세계의 만민이 잠든 그러한 깊은 밤에도 물려드는 잠을 이겨가며 소위 党과 金日成을 목숨으로 保衛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하루 이틀도 아닌 11년이란 세월을 강추위의 맴돌임 속에서도 軍服務를 해오지 안했는가?

내가 休暇라도 갈수 있었고 民間과의 접촉이라도 있었으면 後方의 生活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을 것이나, 軍隊에 들어오면 後方에 대해서는 감감하다. 完全히 격리시켜 後方에 대하여 눈가림으로 宣傳하고 있어 軍人은 後方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家族들은 잘살고 있으니 安心하라고 말한다.

나는 11年間 父母들이 어떻게 사는지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러한 制度를 守護하기 위해서 이렇게 統制가 되고 自由가 剝奪된 社會의 守護를 위하여 銃을 들고 哨所에 서고 있던 말인가.

나는 이 때부터 이 냉대한 社會에 대하여 저주와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北韓社會를 미워한 첫 動機가 되었다.

그러면 北韓社會의 여행제도와 居住, 移轉의 실태는 어떠한가 생생하게 말씀드리려 한다.

北韓住民들의 경우 여행을 하려면 證明書를 휴대하여야만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을 할 때 휴대하는 證明書는 通行証. 衛生通過証. 住民登錄証. 糧券(食事を 사먹을 수 있다)등이다. 그리고 공무로 가는 경우에는 信任狀, 出張証도 따로 가져야 한다.

通行証이라는 것은 여행을 위하여 必要한 證明書인데 通行証이

없이는 市外 버스나 기차를 탈 수 없고 自己가 살고있는 郡地  
域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票를 살수 없고 檢問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自己가 살고 있는 郡地域內에서도  
다른 里로 가자거나 里에 있는 사람이 邑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려  
고 하여도 政治保衛部와 安全員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았다는  
確認証을 발급받아야만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불편하기  
짝이없어 아예 나들이 생각은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旅行証을 어떤 경우에 어떤 순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直系 家族 死亡시나 公的인 용무가 있을 때에만 通行証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里, 洞 事務所에 찾아가서 3일전에  
確認할 수 있는 死亡電報나 死亡 편지를 添附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3일 후 洞에 찾아가 上級機關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旅行証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처음 里에서 初歩 通行証을 받아 가지고  
里委員長과 安全部의 비준(허가)을 받아야 한다. 이 確認이  
끝난 후 郡旅行 取扱所(郡人民委員會第2部)에 가지고 가면 旅行証을  
발급받을 수 있다. 旅行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와  
目的地 등이 밝혀지며 확인란 등이 있다. 이 확인란은 어느곳에  
가든 安全部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用務를 보고 몇일  
몇시에 출발하였다는 상세한 사항을 기입 받아야 한다.

旅行証과 함께 역시 旅行을 하려면 衛生通過証(전염병환자가  
많아 이동을 제한한다)을 휴대해야 한다. 衛生通過証을 발급받는  
순서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의복을 삶은 다음 그 옷을  
입고 가서 衛生 通過証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衛生 通過証을

발급받은 후에는 또 糧券 (糧券 : 식량배급이나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수 있는 표) 을 떼야 한다. 糧券을 떼는데도 旅行証을 제시해야 그곳에 밝혀진 날자에 따라 糧券을 떼준다.

바로 이렇게 해야 여행준비가 끝난다. 이렇게 證明書を 떼는데는 1주일이 실히 걸려야 證明書を 모두 뺄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뺀 證明書는 이것을 다 사용한후에는 헤어져서 글씨가 잘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 처음 차표를 사거나 버스 승차권을 살 때, 개찰할 때 버스에 오를 때 기차안과 버스안에서 證明書を 일일이 검열 받는다. 또한 역으로 나올 때 證明書を 제시해야 하는데, 證明書を 제시할 때에는 旅行証, 衛生通過証, 住民登錄証 등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到着하면 到着地の 案内員에게 到着날자와 시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관에 숙식할 경우에도 역시 旅行証과 衛生通過証을 제시해야 하며 친척집등 민가에서 숙박할 때에도 증명서 검열과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적지에서 기일이 초과되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날자가 초과되면 내가 겪은 것 처럼 抑鬱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골치거리가 아니다.

여행을 한다 해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만큼 신경을 써야만 한다. 여행을 하는 것도 무척 힘들지만 旅行証을 발급받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여행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친척집에 다녀 본다는가 大韓民國과 같이 일요일이라 하여 관공장에 간다는 것은 더우기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北僞는 철저한 旅行統制를 하지만 여행의 統制를 무릅쓰고 어떻게든지 자기 가족을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술은 바뀐다. 처음 旅行証 制度가 나왔을 때는 여러가지 구실을 붙혀 旅行証을 발급 받았다.

보편적으로 누구의 「병 위급」이라는 용무로, 그러나 이것이 너무도 보편화 되자 여기에는 확인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후로는 直系 家族 死亡時에만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것도 속이는 일이 많아지자 直系 家族 사망시에만 通行証을 발급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서로가 만나기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허위 전보를 치군하여 지금은 사망 전보가 와도 이를 직접 政治保衛部에서 확인한후 사실이라고 判明될 때에만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 直接 가족이 사망하였을 시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자기 父母나 자식이 直接 사망하였을 시에도 장례를 다치른 다음에 겨우 무덤에나 찾아가 절을 하는 정도이다.

軍隊의 경우에는 父母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내주지 않고 몇달이 지나서야 찾아 볼 수 있다. 몇달씩 넘기는 이유는 聯隊나 師團에서 出張證明書가 制限되어 적게 내려 오기 때문에 父母가 사망하였을 시에도 다 보내지 않고 한꺼번에 7-8명씩 모아 한 證明書에 보내곤 한다. 그러니 지금은 父母님이 사망하였다 해도 즉시는 갈 수

없고 수개월이 지나 장례를 다 치룬 다음에 겨우 무덤에나 한번 찾아 인사를 하는 정도이다. 더우기 軍人의 休暇統制는 後方의 生活 實態를 될수 있으면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며, 만약에 故郷에 갔다오면 그 비참한 生活을 보기 때문에 軍人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北傀의 엄격한 여행의 統制는 勞動力의 낭비와 加重되고 기왕의 北傀 자체내의 사회의 모순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간힘이라 볼 수 있으며, 반대세력의 억제, 수상한자의 색출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하나의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오늘날 北韓은 이사(移舍)와 居住, 戰場選拔 등 모든 것이 개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당이나 政權機關指示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즉 당이라고 하는 우두머리에 의하여 우왕 자왕하고 있으며, 무조건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게 되어있다.

나는 지금도 北傀의 이러한 잔인스러운 人權의 剝奪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北에서 살 때는 그저 이세상은 다그렇고 또 北韓社會가 제일 살기 좋은 社會라는 宣傳만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내가 北傀治下를 脫出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지만 나는 벌써 이 밀폐된 社會에 회의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내 판단은 맞았다. 北韓社會는 역시 이 世上에서 가장 잔인하고 억압된 社會라는 것을 確實히 알았기 때문이다.

自由라는 것은 우리 人間이 추구해야 할 最高의 價值이다.

# 北韓에서의 職業選擇의 自由

朴 明 夏

- 1948年 12月 28日生
- 1954.4~61.3 황해도 사리원시 유자녀학  
원 (고아원 겸 교육기관)
- 1961.9~64.8 황해도 사리원시 사리원  
공업고등학교 수학
- 1965.3 강원도 철원군 회산인민학  
교 교사로 근무
- 1967.3 회산집단농장에서 강제노동
- 1969.8.15 대한민국에 귀순
- 1976.9 現在 서대문구청 근무



## 北 韓 에 서 의 職 業 選 択 의 自 由

北 傀 에 서 는 모 든 住 民 을 核 心 群 衆 , 基 本 群 衆 , 複 雜 한 群 衆 으 로 분 류 해 놓 고 北 傀 의 黨 機 關 , 行 政 機 關 , 安 全 機 關 , 教 育 機 關 , 芸 術 部 門 , 醫 療 部 門 등 의 機 關 에 는 核 心 群 衆 도 는 基 本 群 衆 의 出 身 性 分 을 가 진 자 들 만 이 이 分 野 에 서 종 사 할 수 있 다 .

그 리 고 核 心 群 衆 이 나 基 本 群 衆 의 出 身 性 分 을 갖 은 자 들 이 라 하 더 라 도 本 人 의 才 能 과 要 求 에 의 해 서 職 業 이 選 択 될 수 는 결 코 없 는 것 이 다 .

다 만 黨 에 서 必 要 에 따 라 職 業 이 주 어 지 고 있 을 뿐 이 다 .

그 러 모 로 專 攻 分 野 를 研 究 하 고 發 展 시 킴 수 는 없 는 것 은 말 할 나 위 도 없 다 .

다 단 , 黨 性 이 강 하 고 오 직 黨 만 을 위 하 고 忠 誠 함 에 따 라 좋 은 職 業 과 職 位 를 주 며 , 決 定 되 는 것 이 다 . 北 傀 勞 動 黨 에 서 는 核 心 · 基 本 群 衆 들 의 升 進 問 題 도 本 人 들 의 能 力 에 따 라 決 定 하 는 것 이 아 니 고 順 차 가 있 는 것 도 아 니 며 , 無 條 件 出 身 性 分 만 보 고 黨 員 이 면 昇 進 시 키 고 職 業 을 바 꾸 어 능 으 모 로 일 을 하 는 데 나 問 題 解 決 에 있 어 서 많 은 모 순 점 이 어 쥘 수 없 이 나 타 나 고 있 다 .

그 뿐 만 아 니 라 核 心 · 基 本 群 衆 들 도 職 位 에 따 라 食 糧 配 給 과 待 遇 까 지 도 달 아 지 고 있 다 .

여 기 에 서 職 業 에 따 른 待 遇 도 한 번 살 펴 보 기 로 하 자 .

教 職 員 들 의 配 給 은 잡 곡 을 配 給 받 지 만 콩 기 름  $\frac{1}{2}$  ㄹ , 간 장 , 된 장

配給이 供給되며, 夏服地 한벌과 冬服地 한벌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配給도 무상이 아니고 모두 비싼값을 지불해야만 된다.

安全機關에 勤務하는 核心·基本郡衆인 黨員들은 職位를 불문하고 本人도 백미배급을 받으며 모자와 사복까지 供給을 받고 있다.

그러나 行政幹部나 醫師 즉 供給対象 이하 幹部는 잡곡만의 配給을 供給받으며 惠沢이란 거의 없다.

供給対象이란 群党 副委員長級 이상은 상당한 백미배급을 공급받으며 일체 호의적인 대우를 다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基本群衆 이상이 살고있는 平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平壤에는 基本群衆外에는 居住할 수가 없다.

이미 1953年 7月 이후부터 平壤市民을 이주시키기 위해 60年에 까지 平壤市民 淨化事業이 끝났으며, 基本群衆外에는 살 수 없게 됐다.

그리고 戰爭準備를 위해 都市民의 수를 固定시켰다.

그러므로 必要에 따라 平壤에 配置를 하는 대신 그중에서 農村이나 鎭山으로 뽑아 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철원에 살고 있을 때 除隊 軍人 한 사람이 平壤으로 配置를 받아 電氣工場에서 일하는 労働者로 간지 2年이 되어도 集團農場에서 農事일을 하고 있는 그의 부인을 못데려 가는 것을 보았다.

알고보니 農民에다 그 여자는 基本群衆에 속할 수 없는 性分을 가졌으므로 별거하던 뒤에 党에서 離婚을 하라고 指示하여 離婚을 당한 일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北韓에는 平壤뿐만이 아니라 다른 都市에도 人口가 고정되어 있  
으므로 새로 이주시킬 수는 또한 없는 것이다. 北韓社会에 居住  
하며 生活하는 사람들은 金日成의 唯一 体制下에서 職業도 역시  
金日成의 唯一 体制하여 바탕을 두고 있다.

自己의 知識이나 技術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北韓의 都市民 職業도 역시 都市民 本人들의 의사에  
따를 수 없으며 道勞動部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工場으로 配置를  
하는 것이다. 配置받은 職場에서 本人의 技術과 能力에 따라 참  
작은 되는데 그곳에서도 물론 性分이 관계되는 것이다.

北韓社会에서는 職業, 職位 등이 男女가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평등이라는 것은 알고보면 여자라고 해서 따로 職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할일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機械工場 같은데에 가면 선반공의 거의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용접공, 미장공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男子와  
같이 重勞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남성이 일하면 우스운 짓으  
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北韓에서는 男女 구별없이 같은 職場에서 어울려 勞動  
을 하고 있는 工場이 많다.

鉉山이나 탄광의 경우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노동모를 쓰고 일  
을 함으로 男·女를 구별하기가 께이나 어렵다. 漁業에 종사하는  
勞動者도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黨의 指示에 따라 職業이 얻어졌으며 이런데도 역시 여성들이

50 ~ 70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장까지도 여성이 있고 여성들로 구성된 漁船團이 있는데 이 漁船을 「女性号」라고 부르고 있다.

이 「女性号」에는 남성이 한사람도 승선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男女의 職種이 같은 社會에서 어찌 職業 選擇의 自由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農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農村에는 일손이 많이 모자라고 있어 都市 勞動者들이 많이 配置되며 北送僑胞들이 農村에 배치되는 형편이다.

本人의 의사는 무시된채 黨의 命令에 따라 어제는 勞動者·오늘은 農民이 되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北韓住民의 實態이다. 말하자면 自由가 없는 탓으로 불가항력적으로 黨의 指示대로 配置되는 作業場으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知識, 能力, 技術은 무시된 사회라고 해도 좋고 党性만 따지고 있으니 生産性이 向上될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과거에 즉 日帝時期에 공부를 한사람은 남은 잔재가 남아있어 우선 教育 方面이나 醫療機關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과거에 남아있는 그 思想이 뿌리박혀있으므로 靑少年을 共產主義思想으로 教育할 수 없으며 퇴폐적인 인습으로 教育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帝時期에 공부를 한 「인테리」들은 모두 強制勞動所에 가서 고된 勞動을 하고 있다.

왜 남은 思想과 과거 썩어 빠진 思想으로 일관된 그들 反動的인 사람들을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 두어 둔

다면 党幹部의 子女들을 毒死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그러므로 날이 경과됨에 따라서 間諜이라는 누명을 씌워 광산이나 탄광으로 보내지 않으면 사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병원에서 党幹部의 子女가 죽는다든가 병을 못 고치면 우선 연령이 많은 醫師부터 調査를 받으며 어떠한 잘못이 없더라도 그들이 덮어씌어 주는 누명으로 病院에서 내쫓고 있는 실정이다.

醫師들에게 제일 많이 덮어씌우는 죄명은 固定間諜이라는 누명인 것이다.

이리하여 과거에 공부를 한 「인테리」들은 아무리 훌륭한 재주와 의술이 있어도 자기의 希望에 따라 職業을 갖을 수 없으며 모두 党의 飢分대로 곡쟁이와 삼을 들고 고된 勞動을 하는 것이다.

현재 北韓에는 醫師와 敎職者들은 모두 30대~20대의 젊은층이다.

정확히 말해서 1945年 8月 15日 이후의 出生한 층이며 젊은층 「인테리」는 모두 勞動者 출신에다 貧農家의 出身인 자들의 子女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자기의 專攻分野에서 本人들의 의사는 전혀 다음으로 반영될 수 없으며, 党에 의하여 명령되며 결정을 하게 된다.

核心・基本群衆의 職業選擇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基本群衆의 職業도 역시 勞動党에서 指示하는대로 配置하는 대로 가야하며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職業이 주어질 수는 없지만 어떤 部門에 配置받아 가던지 (複雜한 群衆과 같은 職業을 갖는 자라

하더라도) 幹部職에 배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秘密監視者의 職責이라도 얻게된다. 즉,

農村이나 都市 労働者나 炭鉞 労働者라 하더라도 고된 일을 피할 수 있게 配置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도 편할뿐 아니라 管理職이므로 그들은 監視를 어느정도 받지 않게 되어 精神的인 苦痛이 없는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는 基本群衆에 속하는 除隊軍人들의 職業을 말하고 싶다.

北韓社会에서는 軍人을 갖다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대우를 못받고 있다.

왜냐하면은 믿지 못하는 複雜한 群衆의 子女들에게는 金日成은 반란을 일으킬가 봐 두려워 무기를 못맡기겠다고 하여 이들은 軍人아도 갈수없게 되어 있고 학교에도 갈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性분이 좋은자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金日成을 따르지 않는 必要없는 複雜한 群衆은, 勞動搾取에만 價值가 있지 그 뒤에는 아무 價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除隊軍人은 職業을 마음대로 選擇할 수 있느냐하면 그럴 수는 없는것이다.

入隊前의 職業과 專攻分野는 무시되고 이미 除隊하기 1個月 전에 除隊軍人들의 명단은 労働者가 모자라거나 일군이 모자라 농사를 잘못짓는 農村이나 勞力이 모자라는 곳으로 無條件 配置를 시키는 것이다.

除隊軍人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배치되면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

그 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配置받으면 그 職業에서 종신토록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10年 동안의 기나긴 軍人生活을 마치고 고향에 부모님도 한번 피일 수 없는 除隊軍人이지만 金日成이가 정해준 그 職業이 天職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딱한 운명이 앞에 놓여있다.

基本群衆에 속하는 労働者들 중에서도 核心으로 꼽히는 労働者들은 대다수 軍需品 工場에서 종사한다

軍需品 工場에서 勞動을 하는 그들도 역시 자신이 원하여 간 것은 아니며 黨에 의하여 核心이라고 뽑혀져 종사하고 있다.

軍需品 工場 地域内에는 複雜한 群衆에 속하는 北韓住民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닐 수는 없는 禁止区域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自由로이 行動할 수 있는 사람인 核心 勞動階級만이 이 軍需品 工場에서 종사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労働者도 秘密이 누설될까 보아 그런지는 모르지만 外部에 旅行이나 친척들과의 接觸도 거의 斷絶된 상태에서 반 監禁生活을 하고 있다. 한편

複雜한 群衆의 천직으로 되어있는 職業을 본다면 炭鉦, 鉦山, 漁業 労働者이며, 集團 農場職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職業마저 金日成이가 하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아오지 탄광」 신세가 되며, 교도소에 끌려가야 한다. 이러한 職業이라도

複雜한 群衆속에 속하는 北韓 住民들에게 金日成이가 순 천직인 것이다.

이 職業마저 한 곳에 정착하여 오래 중사할 수 없이 6個月만 되면 다른 곳으로 전전시키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많은 사람과 사귀고 친해지는 속에서 共產主義를 반대하는 陰謀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지 셋달도 없이 겨울 김장 거리를 소금에다 절군대로 씻지도 못한채 가마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먹고, 김장이라는 것을 독에다 양념을 버무리 넣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먹고 마는 것이다.

우리 부모는 1954年~1967年 사이에 27번을 이사다녔다고 하였다(서로 다른 직장때문에 나오는 떨어져서 살아야 했다.) 그것도 한 두 마을이 아니라 黃海道 신계에서, 평산, 신막, 마동, 봉산, 황주, 부리개, 웅진, 은울, 황해제철소, 안악, 평북, 동천, 북중, 신의주, 진남포, 그리고는 노년에 노동력이 다 하자. 함경북도 각도 처 집단농장을 전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다.

이상은 내가 여학교를 나와 방직공장으로, 협동농장으로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와같이 性分에 따라 職業을 부여함으로 北韓에서는 職業선택의 自由도 居住移轉의 自由도 생각할수 없고 오직 김일성의 指示에 따라 動物과 같이 살어야 한다.

같은 祖上의 아들도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내 同胞들이 이러한 生活을 지금 이 時間에도 하고 있다는것은 얼마나 슬픈일인가?



나는 學問의 自由를 이렇게 抑壓당했다

- 學問의 自由 剝奪 -

權 光 石

- 6.25 當時 韓國의 教授로 拉北
- 1953 年 金日成大學 研究院 卒業
- " 金日成大學 副教授로 任命  
( 마스 . 레닌主義哲學講義担当 )
- 南勞黨系列 숙청 當時 南韓出身으로 思想檢討
- 1958 年 新義州師範大學 教授겸 科學書記長
- 1963 年 對南工作員으로 南派되어 歸順
- 現 KBS 社會教育專門委員

나는 學問의 自由를 이렇게 抑壓당했다 .

### 未知의 天地

나는 6.25 動亂을 계기로 自由民主社會와 共產獨裁社會에서 두루 教鞭生活을 經驗할 수 있었다 .

北僞軍이 서울을 占領하였을때 後退 못한 大學教授들은 家宅수색을 당하고 , 결국 現서울市廳에 자리잡고 있었던 그들의 「臨時人民委員會」 「高等教育局」으로 呼出되었다 .

1950年 7月中旬 그곳에 集結된 大學教授들은 약 2百名으로서 當日 政治教育을 받아야 한다면서 教育場所로 移送되었다 .

나는 서울 近郊이겠거니 하고 따라나섰으나 行先地가 平壤인줄은 전혀 몰랐다 .

서울에서 38線까지는 軍用트럭에 의해 輸送되었으나 그후부터는 行軍이 시작되어 피뢰군의 엄중한 감시 밑에 北으로 北으로 끌여 갔다 .

그러나 나는 拉北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왜냐하면 當時 내 心情으로는 未知의 世界에 대한 憧憬이 더 컸고 新天地를 開拓한다는 흥분마저 느꼈기 때문이다 .

當時 나의 思想傾向은 共產主義者는 아니었지만 30代의 젊은 血氣로 因해 既存秩序에 대한 反感을 느꼈고 , 특히 8.15解放後 南韓에 주둔하고 있었던 美軍의 오만불술한 態度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 左翼教授들의 「革命論」이 一理가 있는 것 처럼 여겨지는 同調者의 立場에 서 있었다 .

그래서 行軍 도중 脱出者도 생겼고 病을 빙자한 낙오자도 나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지루하고 긴 旅路를 따라갔다 .

自動車로 当日 코스를 우리는 서울을 떠난지 약 1週日만에 平壤의 郊外에 到着하여 한 「人民學校」에 收容되었다.

소위 「南半部 大學敎員團」이란 이름으로 다음날부터 「敎育」을 받게 되었으나 敎育內容은 모두 政治宣傳이고 學問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共產主義的 敎育의 接近方法上 차이로 이해하고 無味乾燥한 說敎를 참고 견디었다.

「유엔」空軍에 의한 爆撃이 시작되자 우리는 北으로 移動하면서 敎育場所를 옮겨 마지막 到着한 鴨綠江畔의 平北道 慈城郡(現 慈江道)에서 1年余의 修練을 모두 끝마치고 1951年 8月 새 任務를 부여받게 되었다.

30余名이 脱落하고 170名이 남아있었는데 이를 3等分하여 修了式후 갈라놓았다.

40名의 組는 旣곳으로 옮겨갔다. 뒤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敎壇에 세울수 없는 政治的 不信任者로 낙인찍혀 勞動職場으로 配置되었다고 하나, 나는 그뒤 그들중 누구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50名의 한 組는 주로 法律, 文學, 經濟學등을 비롯한 人文, 社會科學系統의 學者들로서 敎育機關아닌 出版社와 宣傳分野에 配置되고 나머지 80名이 大學으로 配置되었다.

技術 및 自然科學 系統은 거의 모두 남았고, 社會科學 系統은 극히 적은 수가 포함되었다.

나는 「헤겔」의 辯證法이 專攻이었고, 이 分野의 學者들이 北韓에는 적은 모양이어서 稀少價値의 덕택인지, 또는 서울에 있을때 左傾中立的 立場을 취해서 인지 北韓 唯一의 綜合大學인 金日成大學에 配置되었다.

그러나 나의 苦難의 길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党性, 階級性, 人民性」

나는 1951年 8月下旬에 當時 平北 龜城郡에 疎開되어 있었던 金日成大學을 찾아가 當時 總長은 欠員이고 副總長인 俞成勳에게 配置狀을 제시하였다.

俞副總長은 人事도 채 끝나기도 前에 「동무! 부르조아 哲學의 냄새를 풍겨서는 절대로 안되오. 우리 大學은 革命家를 養成하는 곳이지 섞어빠진 인테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오. 따라서 敎員의 言動의 하나하나가 党性, 階級性, 人民性의 표현이 되어야 하오」라고 내게 訓示하였다.

1年동안 나는 政治教育을 받았지만 소위 「党性」, 「階級性」, 「人民性」이란 用語의 概念을 明確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이라 「예」라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對答을 했으나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와 같은 표현이 되는지 잘 알수가 없었다.

나는 副總長室을 나와 내가 소속될 歷史學部 哲學科(現在는 哲學學部로 分立)를 찾아갔다.

우선 當時 學部長 金錫亨(76年 現 金日成大學副總長)을 만나 人事를 하고, 「辯證法的 唯物論講座」講座長(主任敎授)을 찾아갔다.

戰時라 農家에 分宿하면서 講座室도 옛 富者집 行랑채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講座成員 10余名이 小學校 兒童用 책상에 옹기종기 앉아서 그해 9月1日부터 再開되는 講義準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서울에서 6.25前에 越北한 鄭鎮石(65年頃 病死), 申南哲(52年病死), 金洪吉 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쉽게 어울릴 수 있었으나 그들의 學問世界에는 쉽게 同化될수 없었다.

우선 學問하는 姿勢는 그러 하거니와 方法論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 「스탈린」의 말은 無條件的인 命題로 간주하고, 論理性的의 基準은 이 命題들을 어떻게 적절히 引用하는가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問題를 說明하면서 「레닌」을 이렇게 말했고, 「스탈린」은 저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않다는 式으로 講義가 進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면 教授의 主觀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느냐고 同僚들에게 물어보았다.

講座長代理를 맡아보던 金孝錫副教授는 「이것 야단났군, 동무 主觀을 學生들에게 가르칠 작정이요, 큰일날 소리 작작하시요.

講義는 個人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黨의 의도와 階級의 利益을 가르치고, 人民들로 하여금 黨과 首領에 忠誠을 다하겠끔 가르쳐야 하는 법이요」하면서 들치덩어리를 만났다는 말투였다.

金日成大學 學生들은 戰線에서 소환되어 學校로 찾아오고 있었다.

砲煙에 거슬린 우락부락한 學生들 앞에 설 생각을 하니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밤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한 学期동안 즉 半年만 研究할 時間을 달라고 講座長에게 애원했으나 教授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나는 屠殺場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부린 후 20日 만에 억지로 講義室이라고 마련된 溪谷의 天幕教室에 발을 들여놓았다.

「유엔」軍 爆擊機가 육중한 소리를 내면서 上空을 지나갔다.

이때 나는 괜히 苦生을 自招해서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 飛行機가 한없이 부럽게 여겨졌다.

내가 담당한 学部는 物理数学部 (理由는 物理学部和 数学部로 分離)로서 共通科目으로 1~2 学年에서 배우는 「맑스·레닌主義哲學」이며, 첫 講義는 数学科 2 学年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講義 3 日前에 講座會議의 審議를 거친 講義案을 지참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당황해지면 강의안대로 읽어내려간다는 뱃장을 가지고 學生들 앞에 나섰다.

나는 조심스럽게 自己紹介를 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다면서 學生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講義에 임하겠다고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學生들에게는 겸손한 態度가 소위 「南半部 出身의 弱点」에서 起因한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대하는 態度가 교만하고 한 學生이 불쑥 「첫 시간이니까 先生님의 哲學的 見解부터 밝히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말하자 20 여명의 學生이 「웁소」하고 同調하는 것이 었다.

여기에서 弱勢로 나가면 教壇에 설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 스쳐지나가면서 나는 言聲을 높여 「지금 어느때든 한가하게 내 個人얘기를 하겠소, 이 瞬間에도 여러분들의 戰友들은 革命萬歲를 부르면서 生命을 바치고 있오」하고 꾸지었다.

學生들은 戰友와 革命이라는 내말에 숙연해지고 노-트를 펼치면서 筆記할 準備를 하였다.

나는 準備해간 講義案을 차근차근 읽어내려 갔다.

오랜기간 펜때 대신에 종때를 쥔 學生들의 筆記能力을 고려해서 나는 반복해서 읽어주고, 어려운 用語는 거듭 說明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서울의 大學生들보다 단순하고 「革命」이란 말만 강조하면서 쉽게 휘어잡을 수 있을것 같은 생각도 들어 점차 마음도 안정되어 갔다.

1百分 한 講義를 끝나치고 나올때는 들어갈때 보다는 훨씬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러나 순조로운 첫 출발이 오히려 내 앞날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었다.

北韓에서 12年間 教壇生活을 하면서 겪은 모욕과 억울함을 일일  
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教授라는 職業이 싫어졌고 生存 자체를  
원만스럽게 여긴 몇가지 事例만 적어보자.

1953年度에 朴憲永, 李承燁등을 비롯한 南勞党系가 숙청당할때  
南韓出身은 모조리 「思想檢討」를 받았다.

當時 金日成大學 教職員 총수는 약 5백명 (現在는 千명 以上)으로  
서 그중 약 1백명 가량이 南韓出身이었다.

이들은 每学部別로 그날 日課가 끝나면 그 学部の 全體 教職員  
앞에 한 사람씩 自我批判을 하고, 이에 따라 참석자는 質問을  
하여 朴憲永등의 南勞党幹部들의 思想影響을 받지 않았는가를 集團的  
拷問形式으로 가려내며,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時間은 아무리 가볍  
게 넘겨도 2週日은 걸리며, 어떤 南韓出身者는 3個月이 걸린  
경우도 있다.

影響을 받았다는 評價만 내리면 教壇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비밀경찰로 넘겨져 투옥 또는 처단된다.

내 경우는 南勞黨員도 아니었고 朴憲永등 소위 「美帝의 고용간  
첩」이라고 烙印적인 人物들과 個人的인 接觸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홍역을 치른셈이나 그래도 3週日동안 사실상의 고  
문을 받았다.

大學黨委員會 幹部 立會下에 進行되는 이 「思想檢討」에서 내게  
問題가 된 것은 ① 왜 「헤겔」哲學에 心醉하였는가, ② 왜 南韓  
의 소위 「國大案反對鬪爭」에 참가하지 않았는가 ③ 學費가 어디  
에서 나서 高等教育을 받을수 있었는가, ④ 北韓에서 再婚하지  
않은 것은 南韓에 대한 未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등이 焦點이었다.

「헤겔」哲學을 研究하게 된 것은 日政時 唯物論哲學을 研究할 條件이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共產主義思想이 微弱하였으므로 南勞黨에도 加入하지 않았고, 「國大案反對」를 비롯한 共產主義運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변명할수 있었으며, 家庭教師와 新聞配達 등 自體 學費調達한 事實이 同窓生의 진술에 의해 밝혀져 해명되었으나 再婚하지 않은 理由를 說明하기에는 무척 힘들었다.

事實 講義가 너무 벅찬 일이어서 책과 씨름을 하느라고 再婚을 생각할 精神的 여유가 없었다고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黨을 속이려는 것이라면서 그 「思想根源」을 밝히려는 바람에 마음속을 뒤집어 보일수도 없고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平素에 책을 많이 읽고 있었다는 같은 講座成員들의 証言에 따라 無事히 홍역을 치를수 있었으나 當時의 人格的 모욕은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이다.

다음 受難은 1958年에서 60年初에 걸쳐 進行된 소위 「中央黨 集中指導」때였다.

이때 나는 이미 北傀 勞動黨에도 加入되고 몇개의 研究論文이 人정을 받아 한 等級 높아져 新義州 師範大學 科學書記長으로 起用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1958年度의 研究課題인 「유고슬라비아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의 特殊性」이 問題가 되었다.

北韓의 大學教授들은 任意로 研究課題를 選定하여 推進하는 것은 아니다. 研究課題는 아래와 같이 分類되어 推進된다.

3種類 즉 소위 「國家課題」, 「契約課題」, 「自體課題」로 나누어 지는데 「國家課題」는 北傀政權의 「國家計劃委員會」가 指名해서 推進케하는 것이고, 「契約課題」는 어느 經濟, 文化機關이나 企業體 또는 研究所와의 契約을 맺고 推進하는 것이며, 「自體課題」는



研究者가 選定하여 大學評議會의 審議를 거쳐 高等敎育省 (現 敎育委員會 高等敎育部) 의 承認下에 進行하는 것이다.

每年 年末에 翌年の 研究課題가 決定되며 내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밟아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었고 1957年에 北僞와 「유고슬라비아」간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大學評議會에서도 무사히 통과되었고, 高等敎育省의 承認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中央黨 「김 열그루빠」는 트집을 걸고 하필이면 修正主義 國家의 革命經驗을 研究하려는 그 動機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따지기 시작했고, 「南半部 出身」의 政治的 不信任과 관련된 것이라는 先入感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講義案의 後閱制를 앞당겨 실시하고 (正常的으로 每3個月마다 이미 끝난 講義案을 다른 關聯講座 成員들이 相互檢閱한다) 나와 知面이 있는 南韓出者들로 부터 내에 관한 資料를 수집하였다. 약 3個月동안 나는 만신창이 되도록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비판을 받았다.

서빨리 學究的인 好奇心을 충족시키려다 호되게 비판을 받았고, 특히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資料를 「모스크바」綜合大學圖書館에 의뢰하여 求하려고 편지를 낸것이 自由主義의 표현으로 規定돼진 諷을 흘렸다.

다행히 科學書記長 (敎授들의 科學研究業務를 管轄하는 行政職責) 으로서 일이 분주하고 資料不足으로 별다른 研究를 하지 못했으며, 大學評議會에서 내 研究課題 審議때 學長과 黨委員長이 「必要한 研究」라고 칭찬한 事實이 記錄上으로 밝혀져 責任추궁은 모면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억울함을 겪은 사실의 하나는 1960年初 辯証法의 3大法則중 소위 「質量法則」 즉 「量的蓄積의 質的變化와 그

「逆에 관한 法則」講義에서 學生質問에 잘못 對答하였다고 해서 大學黨委員會에 取扱되어 公開的인 비판을 받은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質量法則」은 사람들의 思考活動이나 論理展開에서 反復의 效果를 說明하고, 따라서 戰爭危機意識을 되풀이 강조하면 被害意識에서 오는 노이로제 현상까지 誘發시키게 된다는 것을 例示하였다.

이 法則에 관한 講義는 3 講義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精神現象, 自然現象, 社會現象으로 나누어 各各 1 講義씩 할 예정이었고, 「教授要綱」( 講義 指針書)에도 規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進行하였던 것이다.

원래 「헤겔」의 辯證法은 思惟와 論理展開에서의 方法論이지, 自然界나 社會界에 適用하는 自體가 無理이며, 따라서 唯物辯證法에 대해 나는 찬성하지 않았으며 그 억지와 虛構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教壇에서 그런 虛構性을 分析한다는 것은 스스로 命줄을 短縮시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애써 社會現象과 自然界에도 適用하여 이를 合理化하려고 진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 때는 첫 講義이기 때문에 社會, 自然에 관한 說明은 뒤로 미루고 그 時間 講義를 끝마쳤는데 때마침 大學黨委員長이 講義參觀를 하고는 그때위 「反動宣傳」을 할 必要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精神現象의 質量的인 變化는 하나하나지만 社會現象에서 革命氣運의 造成이 辯證法的으로 進行된다는 것을 왜 강조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教授要綱」을 提示하고 講義案을 보이고 하여도 黨官僚主義者앞에는 막무가내 였다.

「教授要綱」이 行政的 文書이지 「党性, 階級性, 人民性을 구제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 者의 主張이다 .

나는 高等教育省이나 大學이 黨政策을 逆行하는 집행기관이며 , 「教授要綱」은 行政文書가 아니라 黨의 文書라고 主張하였더니 黨을 모독하였다는 罪名이 더 添加되어 나는 더욱 곤궁에 빠지게 되었다 .

學長이 나를 변호해주고 講座成員들이 내게 責任이 없다고 변명해주는 바람에 큰 變을 당하지 않았으나 결국 나는 教壇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

그것은 얼마후 나는 소위 「對南工作要員」의 후보자로 選擧되어 서울로 南派되었기 때문이다 . 北傀黨은 나를 쓸모가 없다고 인정하고 희생길로 내몰았던 것이다 .

#### 억울하게 희생된 同僚

나는 對南工作員으로 1963年 4月에 海上으로 南派되었을때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13年余의 北韓生活이 이런 形式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多幸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

肅清 케이스로 南派되어 잘하면 北傀에 도움을 주고 못되면 스스로 없어지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나는 南韓에 到着하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好奇心이 가져온 엄청난 희생을 소상히 옛 同僚들에 알리고 , 大韓民國 學者들에게 생지육인 北韓의 實情을 소개할 義務가 있다고 決心하였다 .

工作船을 타고 深夜에 北韓을 떠나 南韓으로 달리는 배속에서 나는 北에 두고 가는 새로 생긴 家族들에 못지 않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同僚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

金日成大學在職時에 친하게 지냈고 그뒤 北傀黨 中央黨學校 ( 現 金日成 高級黨學校 ) 「黨鬪爭史講座長」으로 轉任된 許甲教授의

창백한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

許甲教授는 8.15前 獨立運動은 金日成의 소위 「抗日遊擊隊」만이  
한 것이 아니고 其他 共產主義者, 例를 들면 소위 「延安派」라고  
불리우는 崔昌益, 金科奉 등의 親中共系 共產主義者들도 「獨立同盟」  
이라는 團體를 만들어 活動한 事實이 확고한 근거가 있는 이상  
인정해야 하고, 실사 非共產主義者의 獨立運動도 事實이 있는한  
인정해야 한다고 主張하자 「宗派分子」로 몰려 1958年 10月 「中  
央黨 集中指導」時 사상검토를 받자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

나는 그 家族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뛰어갔더니 그는 이미 가고  
창백한 얼굴만 남아있었다 .

또한 金日成大學 在職時 尊敬하던 法學部 副學部長 姜仲仁教授와  
歷史學部 美術史教授 李始星氏, 「맑스, 레닌主義基本講座長」 宋君讚  
教授, 歷史學部長 金正道教授 등이 講義때 金日成偶像化에 소극적이었다  
고 해서 講壇에서 쫓겨나 勞動職場에서 힘겨운 일에 못건디어 衰弱해  
져 죽어가는 모습도 나는 잊을수가 없다 .

그리고 新義州 師大 在職時 露語講座長 曹延河教授가 「푸시킨」  
의 詩를 講義하면서 곁들여 「프랑스」의 「웨-르 레-느」의 詩  
를 함께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思想檢討를 억울하게 당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그 遺書에 「저 世上에 가서  
마음대로 좋아하는 詩를 읽겠다」고 한 귀절도 나는 영원히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

그로부터 10余年 경과하였지만 北韓의 學者들은 내가 그곳에  
있을때보다 더욱 어려운 學問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내 가슴은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

労働党 核心要員이 본 「아오지 炭鉱」

-北韓에서는 良心의 自由도 人身의 自由도 없다-

金 富 成

출생지 ; 함경북도종성군종곡면종천리

학 령 ; 함동화학공업대학 기계공학부졸업

군복부 ; 1956~1962년 북괴인민군포병

정찰분대장

귀순전직업 ; 노동당연락부 대남침투부대근무

남침명할축량 설계 담당

귀순일 ; 1974. 9. 5

## 労働党 核心要員이 본 「아오지炭鉱」

나는 大韓民國 國民이된지 2년밖에 안된 사람이다.

大韓民國 國民이된 그날부터 나는 完全한 自由가 保障된 自由人으로 너무도 幸福한 生活을 하고 있다.

지난 1975年 12月 태평로의 「코리아나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도 올렸고 아내와 함께 단란하고 幸福한 生活속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잘 살고 있다.

나는 지난 9일 한글날에 아내와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하루를 즐기고 왔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靑春男女가 쌍쌍이 거닐고 웃고 떠들며 자기들 나름대로의 흥에겨워 히히낙낙거리는 모습, 온 가족이 떨어져나서 회전목마를 비롯한 갖가지 놀이기구에 실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무런 統制나 監視가 없는 完全한 自由가 保障된 이 즐겁고 활달한 낭만의 生活속에 살고있는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지난 時節의 악몽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인파에 어울려 아내와 함께 즐겁게 놀았고 하루해가 서쪽으로 기울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택시안에서 나는 멍청하니 깊은 생각에 잠겨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내는 멍하니 앞만보고 그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자기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어느덧 나의 두볼에는 눈물이 줄지어 흘렀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아내는 다급히 나의 팔을 쥐어 흔들며 웬일인가고 다구쳐 물었다.

그러나 나는 선뜻 그 뜻을 아내에게 說明해 줄 수가 없었고 또 내가 說明해 준다해도 自由世界에서 나서 자란 나의 아내는 나의 이야기의 깊은 뜻을 다는 알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집에까지 와서 졸라대는 아내의 안타까운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北韓에서의 生活의 한토막을 들려 주었다.

나는 함경북도 종성군 풍곡면 풍천리라는 자그마한 산골 부락에서 農民의 家庭에서 나서 자랐다.

解放後 共産党治下에서 공부했고 17살에 軍隊에 나가 만 6년간 服務했고 軍服務期間에 勞動党에 입당했다.

그후 勞動党的 추천을 받아 咸興化学工業大学 機械工學部를 卒業했고 大学卒業後 勞動党連絡部에 소환되어 근 10여년 동안 對南浸透工作을 遂行하였고 「南侵用 땅굴」의 測量과 設計도 直接 擔當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1974年 9月 5日 北傀治下를 脱出하여 自由大韓에 越南帰順하였다. 말하자면 나는 北傀 勞動党的 黨員中에서도 가장 核心的인 골수분자로서 党과 金日成의 命令이라면 목숨까지 다바쳐 遂行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다.

때문에 北韓社会에서는 가장 최고급 대우를 받았고 권세도 부리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나의생활 自由大韓國民으로서의 生活에 비하면 너무도 지겹고 지긋지긋한 암흑의 생활이었다고 생각된다.

나와 같이 최고급 대우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럴진대 一般 北韓 住民들의 生活이야 어찌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勞動党連絡部에서 5~6년동안 勤務하다가 함경북도에

훈련차 나갔던 일이 있다.

훈련은 2~3명씩 조를 만들어 夜間에 은밀히 指定된 場所에 찾아가 任務를 遂行하고 무전으로 報告하고 다시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特殊任務였다.

나는 이런 任務를 遂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누이가 살고있는 아오지에 들러보려고 생각하였다.

訓練組長이었던 나는 다른 두명의 조원을 설득하여 누님의 집 부근으로 訓練하며 이동하였다.

야산에서 숙영지를 定하고 땅을 파고 2명이 들어가 있게 하고 나는 누님의 집을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시간은 새벽 5시경이었다.

누님이 사는 부락은 아오지炭鉞 용현갱 노동자사택이 있는 부락이었다.

炭鉞마을이 되어 그런지 주변이 온통 새까만 석탄으로 어지럽혀졌었고 길바닥에도 석탄이 널려있어 석탄가루에 뒤덮인 마을은 암흑의 부락같이 을시년 스러웠다.

나는 새벽의 찬공기를 헤가르며 보슬보슬 피어오르는 굴뚝의 연기를 바라보며 누님이 살고있는 집을 찾아갔다.

누님은 「용현갱 職盟委員長으로 일하는 매부와 결혼하여 다섯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있다.

내가 누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을때 머리에 수건을 쓴 누님이 문을 열어 주었다.

나는 반갑게 인사하며 누님을 찾았다. 누님은 한참동안 멍청하더니 나를 쳐다 보더니 너무도 뜻밖이라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어서들어오라고 팔을 끌기에 나는 누님의 집에 들어섰다.

집에 들어서는데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함경도집은 대체로 방과 부엌이 막혀있지 않고 통칸으로 되어 있는데 부엌에는 자그만한 가마 2개가 걸려있고 누님은 아궁이 앞에서 일하는데 하나의 방에 다섯아이들과 시아버지가 같이 누워지고 있었다.

매부는 새벽 4시에 일하러 나갔고 누님은 아침밥을 지어 아이들을 먹이고 직장에 나간다는 것이다.

다섯아이들과 시아버지가 누우니 방이 가득 차는데 누님과 매부는 어디서 어떻게 잠을 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누님에게 물었다.

「누님! 매부는 어디서 쉬고 누님은 어디서 자는지요?」

나의 물음에도 누님은 대답을 회피하고 어물거리며 「나야 뭐 아무데서나 자지」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매부는 아이들 발저리에 가로 누워쉬고 누님은 부엌쪽에 발을 보내고 가마뚜껑위에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대강 놓아 베고 쪽잠을 자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들어가 누님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애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아이들의 할아버지도 일어 나셨다.

내가 온 것을 알고 모두가 반가워했으나 나는 별로 반갑지도 않았다.

사람이 일어나 앉아도 방안에 가득차는 단칸방에서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여덟식구가 사는 그 정상을 보며 나는 누님이 얼마나 고달푸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반기는 아이들을 달갑게 맞아주지도 못했다.

아이들이 일어나 부락 가운데 있는 共同水道로 나가 대강 세수

하고 들어오니 누님이 아침식사를 차리었다.

나는 식사하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누님이 어떻게 식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싶어 방에 올라가 앉았다.

누님은 시아버지에게 간단한 상을 차려 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접상을 하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特別히 따로 차려 주려는 것을 적극 만류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겠다고 하여 따로 차리지 않았다..

나는 누님이 차려올려온 아침상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시아버지에게 올린 아침상에는 쌀알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밥 한공기를 올려 놓았고 멀전 죽그릇 한그릇과 반찬이라고는 호박채 한가지뿐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먹는 누님의 밥상에는 밥그릇은 보이지 않고 호박을 썰어넣고 옥수수 가루를 풀어넣은 죽그릇 뿐이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동생에게 밥한그릇줄 수 없는 누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것을 나는 充分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누님의 난처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아무렇지도 않은듯 죽그릇을 가까이 당겨놓고 먹었다.

죽을 입에 떠넣가는 했으나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까지 식량사정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 어찌 죽한그릇이라도 내가 먹어버리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내가 죽을 잘먹지 않는것을 본 누님은 강냉이 밥이라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누님의 눈에는 눈물이 핑하니 고여 있었다.

나는 누님을 따라 부엌에 내려가 밥을 짓지 못하게 말리었다.

그리고 누님과 함께 방에 올라와 호박죽을 맛있게 먹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다.

「아오지 炭鉞」은 北韓에서도 가장 北쪽에 位置한 炭鉞으로서 北韓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炭鉞이다.

아오지 炭鉞이 유명해진 것은 石炭을 많이 캐내어서도 아니요, 그 規模가 커서도 아니다.

아오지 炭鉞이 유명해진 것은 解放後부터 오늘까지 金日成徒黨이 집권하여 족벌독재체계를 반대하는 수많은 北韓同胞들을 숙청하여 아오지 炭鉞 지하수천척 막장에서 強制勞動을 시킨 때문이다.

解放後부터 오늘날까지 아오지 炭鉞에서 억울하게 고역을 당하다 숨진 사람이 몇만명이 되는지 그 누구도 確實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아오지 탄광이라면 北韓에서는 숙청당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強制勞動을 하는 죽음의 고역창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어린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오지 탄광에 가고 싶은가」하는 식으로 危脅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오지 炭鉞은 金日成統治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쫓겨가서 고생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던 것이다.

아오지 炭鉞은 함경북도의 최북단의 경흥군에 位置한 炭鉞으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中共의 만주땅과 隣接되어 있다.

아오지 駅에서 約 20里 가량 電線鐵路를 따라 들어가면 경흥군 所在地 회암동이 있다. 지금은 여기가 「신 아오지」로 불리우고 있으며 아오지 炭鉞 本部가 있는 곳이다. 아오지 炭鉞에는 용연갱, 오봉갱과 수직갱으로 区分되는데 罪를 지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범한 罪目에 따라 수직갱 対象, 용연갱 대상, 오봉갱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수직갱 대상은 가장 「최과가 큰」 사람이 들어가 強制勞動을 하는 곳이고, 다음으로 오봉갱 대상이 「嚴重한 対象」이고 용연갱은 아오지 炭鉞 対象中 比較的 「경범죄」자들이 일하는 場所이다.

때문에 용연갱에서 일하던 사람은 일을 잘하면 간혹 회복되는 수가 있으나 수직갱이나 오봉갱에서 일하던 사람은 회복되어 밖에 나가는 境遇가 없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은 죽을때까지 지하 수천척 막장에서 安全員의 監視下에 일해야 하며 밖에 나올 기회도 별로 없다」 바로 여기에서 한때는 共產主義를 위해 싸운다고 날뛰었던. 北韓에서는 하느라 하던 有名人들도 너무도 많이 強制勞動에 시달리다가 숨겨갔다.

오직 金日成족벌독재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자는 가차없이 숙청되어 여기 아오지 炭鉞의 고역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아오지 炭鉞에 끌려온 사람들은 生活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나 자신도 한때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오지 炭鉞에 直接 가보니 나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生活보다도 훨씬더 처참한 生活이었다.

住宅은 단층으로 지은 「콘크리트」 집인데 그것도 勞動者住宅과 炭鉞幹部住宅이 区分되어 있으며 勞動者中에서도 家族生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住宅이 따로 있고 家族生活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침식을 할 수 있는 집이 따로 있었다.

家族生活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침식을 하는 집은 마치고 축을 기르는 畜舍처럼 생겼는데 한방에 30 ~ 40 명씩 들어가 자게되고 그방에서 부엌과 連結된 구멍으로 식권을 내고 밥을

받아 먹게 되어있다. 밥은 옥수수가 70%以上 섞인 밥에 된장 한숟갈과 무우를 썰어넣은 국이다.

침실의 침구라야 다 낡아빠진 모포 몇장을 여러명이 나누어 덮고 쪽잠을 자게 되어 있다.

이러한 生活속에서 強制勞動을 하려면 不滿도 많고 反抗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反抗하는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 10~15名에 1名의 무장한 安全員과 班長 1名을 두고 있다.

이들은 完全히 罪人取扱을 당하고 있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關係없이 “야” “자”하고 반말로 대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런 抗辯도 할 수 없고 그저 묵묵히 일하거나 “예” “예”하며 安全員이나 班長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

家族生活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境遇는 이들보다는 조금 나은 生活을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야” “자”하고 반말로 부르지도 않고 “동무” 또는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安全員이나 班長 또는 中隊長等 名稱의 幹部들이 일일이 監督하며 일을 시키지만 조금 경한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生活하는 집은 단층 「콘크리트」 집인데 방 1개가 부엌과 달려있는 집이다.

이들의 집에는 정식보초는 없으나 주변을 監視하는 監督員이 항상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아오지 炭鉞 부락 以外の 地域은 絶대로 다닐 수 없게 統制하고 있다.

出勤時間은 아침 5時頃에 하면 저녁 7時나 8時에 돌아오군

하는데 이들의 勞動時間은 規定된 時間이 따로 없다.

때로는 하루 18 ~ 20 時間씩 끌고 다니며 強制勞動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勞動하지만 이들은 自己勞動의 댓가로 받는 것은 겨우 죽지 않을 程度의 食糧과 벌거벗지 않을 정도의 옷을 供給해 주는 程度에 不過하다.

北韓의 모든 住民들이 자유로운 旅行이나 친척방문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사는 勞動者들은 炭鉞部落을 벗어날 수 없게끔 徹底히 統制된다.

이렇게 金日成族閥獨裁에 順應하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하여 強制勞動을 시키는 곳이 아오지 炭鉞 以外도 北韓땅에는 여러 곳에 있다.

本人이 炭鉞에서 強制勞動을 하게끔 쫓겨나면 그의 家族들과 친척까지 影響을 받는다.

아오지 炭鉞의 수직갱 對象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家族은 함경북도 종성군 용계면에 強制收容되어 있다.

용계면에 살던 住民들을 경원군으로 이주시키고 여기에 強制移住시켜 農事도 짓고 동포탄광에서 석탄을 캐게 한다.

용계면 주위에는 철조망을 2重·3重으로 치고 安全員이 보초를 서고 있다.

家族과 아이들은 協同農場에서 配置되어 農業 일을 擔當하거나 石炭을 캐여 生産量을 達成해야 한다.

이들이 일하는 場所에도 무장한 安全員이 항시 뒤따르면서 고향을 지르며 強制로 일을 시키고 있다.

金日成徒黨은 이와 같이 무고한 北韓 同胞들을 反黨, 反革命

分子요, 宗派分子요, 反動分子요 하는 罪아닌 죄명을 들씨워  
가혹하게 酷사하고 人間以下の 擄取를 加하고 있다.

金日成徒党에 의해 한번 이렇게 烙印 찍혀 炭鋏에 쫓겨나가거나 처  
형당하면 本人은 勿論 말할것도없고 그 家族까지 反動分子的 家族으로  
몰려 苦生하고 그 친척인 境遇 8寸까지 影響을 받게 되어  
있고 4寸까지 反動分子的 後孫으로 갖은 멸시와 천대속에 말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北韓의 오늘의  
金日成族閥政治下の 現實이다.

反動分子로 몰리지 않은 일반주민들이나 核心黨員인 境遇에는  
자유스럽고 幸福한 生活이 保障되고 있는가 하면 그런것도 아니  
다.

나는 1960년에 勞動黨에 입당했고 그후 勞動黨의 核心分子로서  
金日成徒黨에게 온갖 충성을 다받치려고 별짓을 다해보았다.  
그러나 함경북도에서 개성에온 후 단한번도 故郷을 찾아가 본일  
이 없고 부친의 산소에도 가보지 못했다.

勞動黨의 가장 核心分子라고 자처했던 나 自身이지만 故郷에  
가보고 싶었고 친척집에도 가보고 싶었고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성묘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허지만 勞動黨의 承認  
없이 단 한 발자욱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고 보면 어쩔 수  
없는 現實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故郷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가는 「革命  
家가 무슨 故郷을 생각하고 아버지 산소를 생각하는가」 「오직  
黨과 首領을 생각하고 革命을 생각하라」고 批判 하기에 말못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살아도 죽어도 黨을 위해, 首領을 위해」 鬪爭해야 하고  
「金日成의 命命을 實行하기 前에는 죽을 權利도 없다」는 구호를

부르며 밤낮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人間的인 情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도 機械的인 人間으로 살아왔던 나에게는 現在의 生活이  
한날 幸福하고 自由스럽고 그저 꿈만 같다.

다정하고 따뜻한 人間의 情을 모르고 자랐고 이처럼 즐겁게  
뛰놀며 生活하는 것을 몰랐던 나는 지금 너무도 幸福한 이  
生活속에 파묻혀 살면서 문득문득 지나간 北韓에서의 生活, 억울  
했던 過去를 돌리켜보며, 지금도 북녘땅에서 苦生하고 있을 어머  
님과 동생, 그리고 친척 친지들이 불쌍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을 머금곤 한다.

어서 빨리 平和的인 統一의 길이 열려 북녘에서 苦生하고  
있을 그들에게 나의 幸福하고 자유스런 生活의 이모저모를 보여  
주고 싶고 그들에게도 자유스런 生活이 保障되길 바란다.

金日成徒党은 오늘도 끊임없이 南侵戰爭準備에 광분하고 있고  
機會만 엿보고 있는만큼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온국민이 總和  
團結로 北傀의 南侵挑発을 粉碎해야 하리라 본다.

나는 北傀 治下에서 30餘年을 살면서 그들의 南侵陰謀를 잘  
알고 있는만큼 오늘의 이 幸福을 지키기 위해 反共戰線의 최첨  
단에서 이 生命 다바쳐 끝까지 싸울것이다.



# 藝術創作의自由

—北韓에서의作家生活—

禹吉命

- 1956.8 北傀 松都政治大学 卒
- 1957~65 北傀 国立芸術劇場  
演出指導部長
- 1966 越南帰順
- 現 KBS 社会教育專門委員

# 芸術創作의 自由

## 머 리 말

러시아 革命을 勝利로 이끈 「레닌」은 일찌기 共產主義的인 文學, 藝術의 位置와 役割에 對해 「文學, 藝術은 반드시 勞動階級の 革命事業의 한 部分으로 되어야 하며, 黨이 組織하고 計劃한 事業의 한 部分으로 되어야 한다」고 規定한 바 있다.

다시말해 「레닌」은 文學, 藝術을 黨이라는 커다란 機械의 한 部分, 즉 나사못 혹은 톱니바퀴에 비유했다.

이것은 共產體制下에서의 文學, 藝術은 철저히 黨의 예속물이며, 黨을 떠나서는 그 存在價值가 認定되지 않는다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같은 原則을 北韓의 金日成도 그대로 直輸入하여 適用하고 있다. 北韓에는 文學, 藝術人들을 黨의 철저한 侍女로 만들 目的下에 組織된 文學, 藝術 總同盟이 있다. (以下 文芸總으로 略稱)

文芸總에는 作家同盟, 音樂家同盟, 美術家同盟, 舞蹈家同盟, 演劇人同盟, 映面人同盟, 寫真家同盟 등의 산하 團體가 있다.

따라서 北韓의 文學, 藝術人들은 各自의 專門分野別로 위에서 指摘한 團體에 義務的으로 加入하여 黨의 統制와 命令, 指示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萬一 黨의 命令, 指示에 不滿을 表示하거나 反발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숙청을 당하게 된다.

1953年 休戰 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文芸總 산하단체에 망라됐던 作家, 芸術人들의 속칭 人員數는 대략 다음과 같다.

作家同盟 : 約 2백 名

音樂家同盟 : 約 1백 名

美術家同盟 : 約 30 名

舞蹈家同盟 : 約 30 名

演劇人同盟 : 約 30 名

映画人同盟 : 約 50 名

寫真家同盟 : 約 20 名 등 合計 460 名

특히 指摘하고 넘어갈 것은 속칭당한 作家 芸術人들의 거의 大部分이 中堅級 以上이라는 點이다.

## 作家 . 芸術人들의 肅清内幕

一般的으로 共產主義者들이 政權을 탈취한다음 社會主義, 共產主義로 建設하는데 있어서 物質에 對한 個人的 所有權과 社會制度는 暴力과 強壓에 依해 비교적 짧은 期間에 손쉽게 改造할 수 있다.

그러나 人間의 精神속에 뿌리박은 倫理, 道德, 價值觀 등을 共產主義的인 것으로 바꾸는 作業은 暴力이나 強壓으로 不可能하며 더우기 어떠한 法으로 規制할 수도 없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은 文學, 映画, 演劇等 藝術的 方法을 통해 人間의 感情에 자극을 주고 感動과 共感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共產主義思想을 注入하는 方法을 쓰고 있다.

이같은 理由로하여 共產主義者들은 文學, 藝術을 黨의 철저한 侍

女로 만들기 爲해 그토록 안간힘을 기우리는 것이다.

또한 党的 命令, 指示에 고분고분 服從하지 않는 作家, 芸術人들  
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치우는 理由도 거기에 있다.

특히 北韓의 独裁者 金日成의 경우에는 自身の 絶對權力の 維持,  
행사를 爲해 더욱 악랄한 方法으로 作家, 芸術人들을 숙청, 除去하  
는 作業을 반복해 왔다.

이제부터 代表的인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 南勞党系 所屬의 作家, 芸術人 —  
( 越北 作家, 芸術人들의 숙청内幕 )

1953年 8月 3日부터 6日까지 平壤에 있는 牧丹峰劇場에서는 朴憲  
永, 李承燁, 林和等 南勞党系에 對한 軍事裁判이 열린바 있다.

詩人 林和의 起訴狀은 다음과 같다.

① 林和는 1949年 12月부터 美国 諜報機關 或은 美軍政廳公報處  
輿論局長으로 있던 被告 薛貞植等과 만나 党과 文化團體의 機密을  
提供하는 등 몇차례의 諜報者노릇을 했고

② 李承燁의 政治的 謀略活動에 가담 趙一鳴, 朴勝源, 李源朝等과  
함께 變節者, 不純分子 等에게 党政策을 反對하는 宣傳 煽動을  
했으며

③ 1951年 8月의 武装暴動陰謀에 가담, 陰謀本部를 組織하고 趙一  
鳴과 함께 宣傳 煽動 組織의 責任을 擔當하여 그 勢力을 모으기  
爲해 文化, 芸術團體를 手中에 넣으려고 했다.

이러한 罪狀은 모조리 허위날조된 것임은 여러가지 事實이 立証해

주고 있다.

말하자면 金日成 一派가 누군가를 먼저 監禁하여 가혹한 고문으로 南勞党의 罪狀을 造作하려고 용계를 꾸렸는데 거기에 폐병환자에 意志가 弱한 林和가 걸려든 셈이다.

그러므로 林和는 누구보다도 共産党에 忠誠하고도 金日成 一派의 손에 잡혀 처형을 당한 것이다.

南勞党系의 朴憲永, 李承燁等 함께 숙청된 文學, 藝術人은 다음과 같다.

趙一鳴 : 文化宣傳省副相

林和 : 朝土文化協會 副委員長

李源朝 : 北傀党 宣傳煽動部 副部長

薛貞植 : 北傀 最高司令部 總政治局 第7部 所屬

金南天 : 文芸總 書記長

이밖에 詩人들인 黃河一, 金常民, 李秉哲, 馬禹龍, 朴山云, 林虎杵, 崔遠近, 李庸岳, 金貴蓮, 李善乙, 石光輝, 朴문서, 김상훈등이 가혹한 思想檢討를 받았다.

이中 黃河一은 強制勞動, 李秉哲은 6個月間 執筆禁止, 李庸岳은 근신처분을 받았다. 또한 北勞党系의 趙碧岩, 洪宗린, 李園友, 金朝奎, 閔丙均등도 林和等에 同情했다는 條件으로 批判을 받고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李泰俊을 비롯한 기타 南勞党系 作家들이 1954年부터 1956年까지 사이에 숙청 당했다.

뿐만아니라 作曲家 金순남, 음악평론가 朴은영, 성악가 金형로등을 비롯한 영화, 사진, 무용, 美術界에서 활약하던 南勞党系 藝術人들이

단계적으로 숙청, 제거 되었다.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많은 作家 芸術인들이 숙청을 당했는데 그 理由는 한마디로 말해 金日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韓雪野의 숙청과 그 후과 —

1962年 10月, 평양에서는 북한 全域의 中堅級 以上の 作家, 芸術人 3백여명과 當時 北傀党 副委員長들인 朴金喆, 李孝淳, 金昌滿, 中央党 科学 및 学校教育部長 高赫, 文化相 朴응걸, 평양시장 위원장等 많은 幹部들이 參席한 가운데 평양市党 熱誠者 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會議에서 다음과 같은 作家, 芸術인들이 숙청당했다.

韓雪野 (作家) :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副委員長, 北傀党中央委員, 文芸總委員長, 作家同盟委員長等 8個地位 兼職.

숙청내용 : 拙党, 철칙에 모든 財産몰수, 勞動職場으로 追放.

崔承壽 (舞踊家) : 舞踊家同盟 委員長, 人民俳優.

숙청내용 : 모든 地位와 称号박탈, 청소부로 追放.

裴 勇 (演劇人) : 演劇人同盟委員長 人民俳優, 国立 平壤劇場總長.

숙청내용 : 拙党, 철칙 모든 称号 박탈, 勞動職場으로 追放

沈 影 (映画人) : 映画人同盟委員長, 人民俳優.

숙청내용 : 拙党, 철칙, 称号박탈, 평배우로 강등

申不出 (만담가) : 文芸總 中央委員, 功勳俳優.

숙청내용 : 칭호박탈, 직위해제, 勞動職場으로 追放.

李서하 ( 演出家 ) : 文芸總 創造指導部長 功勳俳優

숙청내용 : 拙黨, 철직, 称号박탈, 勞動戰場으로 追放

韓雪野의 숙청 理由는 金日成의 「敎示」와 党的 文芸政策을 正  
面으로 도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청内幕은 다음과 같다.

1961年末 當時 北傀黨 副委員長 金昌滿은 韓雪野에게 金日成의  
이른바 革命業績을 찬양하기 爲한 大河小說을 쓰라고 指示했다.  
물론 이것은 金日成 自身の 비밀 指令에 依한 것이다. 韓雪野는  
8.15 解放以後 當時까지 近 20年 가까이 金日成을 英雄으로 尊  
崇하고 그를 偶像化하기 爲한 많은 作品을 썼으며, 그로 因해 두  
터운 信任을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韓雪野는 1961年, 환갑을 넘고 보니 더 以上 御用作家  
노릇만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말하자면 그는 죽기前에 作品  
다운 글을 써보고 싶었다. 그리고 金日成 偶像化를 爲해 더 以  
上 거짓말을 하는 것을 良心이 허락치 않았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韓雪野는 金日成 偶像化를 爲한 大河小說  
을 쓰라는 党的 指示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高赫,  
金昌滿等 黨幹部들은 党的 指示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계속 責任을  
추궁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하여 韓雪野는 自身の 心服인 詩人 閔丙均에게 「나는 배부  
른者를 爲한 作家가 아니라 勞動者, 農民을 爲한 프롤레타리아 作  
家」이라는 글쪽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 글쪽지가 발각된 것이다. 結局 黨에서는 배부른者란

金日成을 비유한것이라고 단정하고 그가 党政策을 正面으로 도전해 나섰다는 누명을 씌워 숙청해 치운것이다.

다시말해 韓雪野는 党의 命令, 指示를 고분고분 접수하고 그것을 遂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을 당했다. 그리고 崔承禧를 비롯한 芸術人들도 韓雪野를 떠바들고 그를 追從하면서 같이 장단을 쳤다는 理由로 숙청해 버렸다.

結局 韓雪野는 平壤市 党 熱誠者會議가 끝난 즉시 江界에서 70리나 떨어진 山淸協同農場으로 追放되었고 그의 모든 作品은 모조리 沒收되었다.

韓雪野는 山淸協同農場에서 갖은 飢餓과 勞苦를 받으며 노동을 하다가 죽고 말았다.

金日成集團은 1962년에 이른바 韓雪野의 나쁜 罪惡을 除去한다는 名目下에 作家同盟을 비롯한 文芸總산하단체에 對한 思想檢討를 數個月間에 걸쳐 展開했다. 이러한 思想檢討를 통해 作家同盟의 경우에 만도 約 4백名의 盟員中, 96名, 말하자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作家들을 숙청해 치웠다.

이때 숙청당한 作家들은 모두 金日成이 要求하는대로 作品을 쓰지 않거나 不滿을 가지고 있던 者들이다.

### - 其 他 -

1962年 봄 평양에 있는 牧丹峰劇場에서는 金日成의 指示에 依해 現代音樂과 國樂으로 編成된 宗幕의 公演이 있었다.

公演이 끝나자 金日成은 指揮者, 作曲家, 聲樂家 等を 拘禁실로



呼出했다.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國樂의 囁의 경우 男子와 女子의 목소리가 비슷해서 分辨을 할 수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고 質問했다.

그러자 當時 國樂人이면서 文芸總 副委員長이던 安基玉이 原來 男子와 女子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의 差異가 있다고 說明하면서 조금만 音樂에 조예가 있거나 잘 들으면 쉽게 分辨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무식이 폭로된 金日成은 氣分이 언짢았던지 잔뜩 상을 찌프리면서 창에서는 왜 고운목소리를 내지 않고 찌지는 듯한 탁성을 내느냐고 따졌다.

이런 質問을 받은 安基玉은 唱에서 탁성을 완전 제거하면 氣分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탁성을 除去할 수도 있다는것까지 說明했다. 그런데 金日成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졌다. 다시말해 자기를 우습게 알고 말대답을 한다고 氣分나빠하는 表情이었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金昌滿이 이러한 눈치를 재빨리 눈치채고 「이보이 安基玉 동무! 敢히 누구앞에서 함부로 말뚱구를 하는거야」하며 소리를 썩 질렀다. 잠시 金日成은 아무말없이 奎賓실을 나가버렸고 黨幹部들도 그 뒤를 따랐다.

다음날부터 國樂人들에 對한 思想檢討가 展開됐고 많은 芸術人들이 숙청당했다. 人民俳優인 安基玉은 協同農場으로, 역시 人民俳優인 趙상선은江界로, 功勳俳優들인 公기남, 홍탄실 등은 沙里院으로 追放당했다.

이들은 金日成의 비위를 거슬린 「罪」 때문에 숙청을 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功勳俳優인 白虛山, 人民俳優 安聖姬, 北送교포이면서 功勳俳優称号를 받은 테너歌手 金永吉, 김문보, 영화 감독 찬상인等 數많은 作家, 芸術人들이 차례로 숙청, 除去됐다.

여기서 한가지 指摘하고 넘어갈것은 金日成에게 누구보다도 絶對的인 信任을 받던 韓雪野와 같은 巨物作家마저도 金日成이 指示하는대로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숙청의 고배를 마시는 판국에 北韓에서 創作의 自由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 歌劇「독로강변에 핀꽃」 創作에 얽힌 이야기

이 作品은 筆者가 劇本을 쓰고 演出을 했으며 그后 映画로 만들어져 日本에서까지 上映된 일이 있다. 이제부터 「독로강변에 핀꽃」을 創作하면서 그 뒤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 보기로 한다.

1962年8月中旬, 筆者는 文化省으로부터 江界에 있는 慈江道歌舞團에 내려가 歌劇演出을 해주라는 指示를 받았다.

후에 안일이지만 慈江道歌舞團에서는 그동안 훌륭한 作品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늘 批判을 받아왔다. 그래서 文化省에게 演出家를 支援해 달라고 要請을 하게 됐고 筆者가 차출되게 된것이다. 아무튼 筆者는 文化省의 指示에 따라 江界에 내려가 보니 主題도 選定되지 않은 美情이었다.

當時 道黨과 慈江道歌舞團 總長은 演出家が 江界에 내려오면 그곳에 派遣돼 있는 作家들과 협의해서 作業을 시작할 작정이였다.

그런데 筆者가 江界에 到着한 몇일后인 9月初 평양에서는 全体

作家들에게 呼出狀을 보내 왔다.

그리하여 慈江道内に 있던 10餘名の 作家들이 모두 平壤으로 가 버렸다. 그 理由는 韓雪野를 숙청하기 爲해 作家들을 소환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道黨副委員長 이 신하가 筆者를 자기 집무실로 呼出하는 것이었다.

「에 - 평양에간 作家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게 됐소 그러나 演出家が 台本을 直接쓰고 演出도 해야겠소.

소재는 朴관옥이라는 女先生이 있는데 소아마비에 걸린 학생을 업고다니면서 공부를 시켜 首領任의 은덕에 보답하게 했으니 그것을 쓰시오

에- 그리고 11月중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舞臺에 올려놓도록 하오. 이것은 당에서 동무에게 주는 謀業이니 반드시 遂行하도록 하오」 그는 혼자 지껄이더니 돌아가서 「革命謀業」에 곧 着手를 하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一方的인 強要였지만 黨의 指示라는데는 어쩔수가 없었다.

2個月半동안에 台本을 쓰고 曲을 부친다음 演習을 해서 公演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不可能한 일이 었지만 黨의 命令, 指示에는 絶對 服從만이 許用된다는 것을 筆者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아무튼 道黨副委員長이 말한 主人公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

筆者는 몹시 失望했다. 왜냐하면 作品의 素材로 될수없는 하찮은 이야기였다. 즉 人民學校에서 不過 30 미터쯤 떨어진 곳에 소아마비에 걸린 少年이 있는데 그가 아침마다 기여서 학교에 오는

것을 본 先生은 손수레를 만들어 學友들이 끌고다니게 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全部였다.

그래서 筆者는 모든 內容을 내뱉대로 꾸며 劇本을 쓴것이다.

어릴때부터 소아마비로 걸지 못하는 少年을 6.25 當時 美軍機의 爆撃으로 다리를 負傷당해 不具者가 된것으로 했고, 女先生은 自身の 다리뼈를 그에게 移植하여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한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少年이 金日成의 出生地인 萬景台에 가서 首領의 「은덕」에 보답할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아무튼 1962年 9月初부터 筆者는 한달동안 밤잠도 자지않고 劇本을 完成했고 道黨 副委員長, 道人民委員會 委員長, 劇場幹部들이 參加한 가운데 一次 合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黨 副委員長은 「에 - 作品 全般에 걸쳐 党性, 階級性이 결여돼 있소, 다시 말해 偉大한 首領同志에 對한 忠誠心이 弱하게 反映 됐단말이요」하고 指摘하는 것이었다.

道黨 副委員長의 말에 아무도 이렇다할 異見을 提示하지 못했다.

「에 - 이 作品을 直接 쓴 作家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는 筆者에게 質問을 던졌다.

「에 - 副委員長 同志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首領에 對한 忠誠心을 너무 人爲的으로 집어 넣으면 作品의 藝術性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것 같습니다.」 筆者는 조심스럽게 答弁을 했다.

「“ 뭐이야? ”

이제 보니 동무의 思想이 의심스럽구만! 作品에서 生命은 党性과 階級性이란 말이요, 이삼일내로 作品을 修正해서 내게 가져 오도록

하오!」 道党副委員長은 오만상을 찌프리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었다. 筆者는 그가 要求하는대로 作品을 여러 차례 수정을 했다.

그리고 曲을 부친다음 演習을 始作했고 11月中旬에 党的 指示대로 試演會를 가졌다. 이때는 平壤에서 많은 作家, 作曲家들이 내려와 그것을 관람했다. 그들의 意見은 筆者의 처음 作品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道党副委員長은 自己權威를 생각해서인지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結局 筆者는 그의 비위를 맞춰 10餘회에 걸쳐 作品을 修正해서 그해 12月末에 겨우 舞台에 올려 놓은 것이다.

그后 1963年6月 金日成이 江界에 내려 간김에 「독로강변에 핀꽃」을 관람하게 됐다. 北韓에서 作品에 처한 評價는 金日成만이 絶對的인 權限을 가지고 있다.

「독로강변에 핀꽃」을 관람한 金日成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作品이 아주 훌륭하다고 評價하는 한편 全体 北韓住民들에게 구경을 시키라고 指示했다. 그리고 主人公인 女先生에게 英雄称号를 수여하라고 아울러 命令했다. 金日成의 이러한 말이 있는 다음 종전까지 만해도 作品이 좋지않다고 비평을 하던 評論家들이 앞을 다투어 찬양하는 글을 신문, 잡지等に 실었다.

그리고 北傀党 機關紙인 勞動新聞까지도 그 作品을 찬양하는 記事를 큼지막하게 실었다. 그와 함께 女先生은 1963年8월에 映雄称号를 수여받았고 독로강변에 핀꽃은 映画化했다.

## 맺 는 말

北韓에서는 모든것이 金日成에 依해서만이 存在價值가 認定되는 것처럼 藝術作品 역시 同一하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作品이라도 金日成이 훌륭하다고 한마디만하면 하루아침에 훌륭한 作品으로 둔갑되고 만다.

그동안 北韓에서는 作品으로서는 最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人民賞」을 수여받은 作品들이 10여편 있으나 모두가 金日成의 命令, 指示에 依해 賞이 주어졌다. 또한 作家들이 作品을 創作함에 있어서 黨에서 事전에 定해준 素材를 가지고 定해준 期日內에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北韓의 作家들은, 原稿料가 아니라 月給에 食糧配給을 타먹으며 黨이 要求하는 作品을 創作하고 있다. 萬一 黨의 命令, 指示를 어기면 가차없이 숙청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 무슨 藝術創作의 自由가 있겠는가. 내가 쓴 이 글은 論文도 아니다. 北韓에서 作家로써 또한 演藝家로써 내가 알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 創作事業의 一部를 紹介한 것이며 相當者로서의 証言에 불과한 것이다.

計劃的인 作品生産, 나는 黨이 要求하는 規格화된 作品을 生産했던 技能工이었음을 솔직히 결론지어 말할 수 있다.

## 集会，結社は 党的 指令으로

— 나는 党 幹部로, 行政機關의 幹部로 있었다 —

李 直 浩

- 本 籍 : 慶尚北道 英陽郡
- 1950年 6月 25日 當時 서울 龜山 高等學校  
3年卒業 (旧制 6年)
- 1950年 8月 19日 越北  
北傀軍服務 ( 6年間 )  
金日成綜合大學 經濟學部 計劃  
經濟學科 卒業  
平壤市 人民委員會 都市經營總局  
指導員 . 部長 . 副局長  
對南工作員 密封教育 ( 3年間 )  
南派 ( 慶南 三千浦 上陸 )
- 1972年 8月 15日 慶北道 警察局에 自首  
現 在 大韓石油公社 勤務
- 1975年 1月 23日 自由中國 ( 台灣 )에서 開催한  
世界反共大會에 大韓民國 反共  
鬪士代表로 參加 .

## 集会, 結社는 党的 指令으로

1950年 6월 25일 北傀 金日成 傀儡 集團의 남침으로 인하여 나는 본의 아니게 강제로 義勇軍으로 끌려서 이북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부모님의 따뜻한 슬하에서 서울 竜山中學校 6学年에 在学中이던 내가 고향 멀리 수천리 이북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傀儡軍 생활이었다.

나는 학교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듣던 共産黨 사회와 책을 통해 서 알고 있던 共産主義가 이북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꼈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고요한 밤 잠 자리에 들면 인자하신 어머님과 다정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선하게 눈 앞에 떠 오르곤 하였으나 언제나 그리운 고향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남의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共産黨員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共産黨員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남이 설 때 쉬지않고 몇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出身性分이 좋아야 入黨할 수 있다는것을 알고 나의 부유했던 가정 환경을 속여 勞動者의 가정으로 그리고 내 자신은 畝學生으로 이력을 기만하였다 그리하여 월북한지 1년만인 1951年 10月 9日 共産黨員이 되었다. 共産黨員이 되었어도 초보적인 自由마저 허용되지 않았고 會議와 批判과 監視속에서 긴장된 나날이 지속되었다.

특히 共産黨의 조직 생활을 통하여 북괴 共産 集團은 말로는



모든 일거 일동이 自發的이고 自由로운 행위로 운운하고 있으나 사실은 사소한 일까지 모두가 사전에 共産黨 中央에서부터 세밀히 조직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3년 초의 일이다. 내가 소속되어 있던 倭僞軍 第26旅團 직속 自動銃中隊에서 模範中隊爭取運動을 전개 하기 위한 군무자 총회가 소집 되었다. 총회가 있기 5일전에 政治副中隊長인 이훈기라는 자가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 이번 總會때 두번째 순서로 나가서 열렬하게 討論을 하되 현재 上級에서 공급 받고 있는 연탄을 공급 받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자체로 燃料問題를 解決 하자고 의치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會議에 가장 熱誠的으로 참석하는 軍人과 가장 늦게 참석하는 軍人을 특별히 監視하라는 任務도 주었다. 나는 政治副中隊長이 시키는데로 討論을 했고 監視도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政治副中隊長은 나만 불러서 개별 任務를 준 것이 아니라, 黨員들을 거의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방에 비밀리에 불러서 사전에 會議에서 討論할 내용까지 철저히 준비시켰다.

그것은 나와 가까히 지내던 박영식이라는 士兵이 있었는데 그는 농촌에서 겨우 人民學校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군에 入隊한 순진한 黨員이었다. 政治副中隊長은 박영식을 개별적으로 불러 會議 도중에 손가락에서 피를 내여 혈서로 <金日成 首領을 위해 青春을 바치겠다>는 것을 써서 會議 主席團에 내라는 것이었다. 박영식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지시 받은대로 실행

하였다.

中隊員들은 평소에 온순한 그의 性品에서 그와같은 독한 마음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의아한 눈으로 또는 아맛살을 찌프리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會議場 뒤편에 앉아 있던 다른 士兵이 「박동무의 모범을 따르자! 우리도 피로서 맹서 하자!」고 외치면서 혈서를 썼다.

主席團에 앉아 있던 政治副中隊長과 党 細胞委員長 그리고 中隊長과 上級党에서 會議 지도자 파견된 軍官(장교)은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여기 저기에서 다섯명의 사병들이 손가락을 물어 뜯고 피로서 「김일성 수령 만세」라고 썼다. 회의가 끝난 몇일 후 나는 박영식 士兵을 만나서 손가락의 상처를 보았다. 상처는 아무렇으나 박영식은 혈서를 통해서 党性을 검열한다는 政治副中隊長의 말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을 나에게 귀뜸해 주었다.

나는 이 會議를 통하여 共産党 조직이 얼마나 잔인하면서 한편 세밀한 計劃下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후 그 中隊는 26旅團에서 처음으로 模範中隊称号를 받게 되었다. 模範中隊称号를 받으면서 中隊員들에게는 模範軍人標를 한개씩 주었으나 그것으로하여 訓練은 더욱 고되고 휴식 시간도 없이 노력 동원까지 하게 되어 士兵들은 지칠대로 지치고 있었다. 그후 나는 6年間の 軍 服務를 마치고 除隊된 후 平壤에 있는 金日成 綜合大學 經濟学部 計劃經濟学科에 入学하게 되었다.

물론 군에서 除隊될 때 共産党的 評定書와 推薦書를 잘 받았기 때문에 大學에 入学할 수 있었다.

大學 4년 과정은 마치 軍 生活과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

大學에서도 黨員들이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軍에서 除隊한 學生들이었다 . 나머지 非黨員들은 軍에서와 같이 社勞靑盟員들이므로 社勞靑조직에 망라되어 모두가 組織 生活을 하고 있었다 .

北傀 치하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8歲가 되면 社勞靑이라는 靑年 組織에 加入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靑年 시절이 지나면 勞動者 , 事務員은 모두 職業同盟員으로 , 女性은 女性同盟員으로 , 農民은 農業動勞者同盟員으로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組織 生活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

8歲의 어린 人民學校 學生들까지 少年團에 入團시켜 組織生活을 시키고있는 실정이다 .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은 매월 總會를 갖이고 批判을 하기 때문에 不平과 不滿이 있어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 특히 北傀는 이러한 組織網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마치 機械나 奴隸와같이 初步的인 自由마저 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保衛部나 社會安全部 (경찰)에서 비밀 監視員을 , 學校에서는 學級班 단위에 , 事務 職場에서는 部署 단위에 , 工場과 農村에서는 作業班 단위에 2~3 명씩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每個人의 일거 일동과 사소한 發言이라도 일일이 書面上 報告하도록 하고 있다 .

물론 이 監視員들은 극비밀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료들끼리도 누가 監視員인지 알 수 없으며 , 따라서 서로 믿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서로 警戒하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生活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다.

金日成大學 2 學年때였다. 서울에서 高等學校를 다니다가 義勇軍으로 끌려온 김한기라는 學生이 자기의 친한 친구인 박광호 學生에게 자기의 부친이 사실은 勞動者가 아니라 서울에서 高位 官吏 生活를 하였다고 이야기 한 일이 있었는데 그말이 곧 學校黨委員會에 보고되었고 그로부터 5 日만에 김한기 學生은 學校에 나오지 못하고 어데론가 사라져 버렸다.

김한기 學生이 어데로 갔는지는 몇일 후 大學 黨 委員長이 黨 會議 場所에 나타나 「反動分子의 자식이 이력을 기만하고, 大學에 들어 왔으나 黨은 제때에 알아 내고 탄광으로 내 쫓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비로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不評과 不滿이 있어도 죽기를 바라지 않는 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묵묵히 지키는 대로 움직일 따름이다.

3 학년 때의 어느 가을 날 大學에서는 黨 會議와 社勞庁 會議가 일제히 열렸다. 이 會議들에서는 15 日간식 農村 勞力 動員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참석하였던 經濟學部 黨 總會에서는 한 學生이 앞에 나가서 「우리는 勞動者 農民의 아들 딸입니다.

農民들이 일손이 바쁜 이 때 책상에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책을 호미와 낫으로 바꾸어 들고 農村으로

나갑시다」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이미 組織된 學生들이 여기 저기에서 「웁소」, 「웁소」하고 외쳤다.

黨 責任者는 「동무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農村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소」하면서 마치 學生들의 自由로운 의사로 志願이나 한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決定書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물론 決定書도 사전에 다 써둔 것을 한 學生이 나가서 그대로 낭독하였는데 黨 責任者는 決定書에 의견이 있는 黨員은 이야기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의견을 말하는 黨員은 없었으며, 決定書는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와같이 北隗 치 하에서는 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도록 철저한 사전 조직과 감시로 일관되어 있을 뿐이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農村 勞力動員은 金日成大學 뿐만 아니라 이북의 모든 大學과 中學은 물론 어린 人民學校 學生까지 動員되고 있었다.

내가 動員된 中화군에는 옥수수밭이 많았는데 옥수수대를 낮으로 배고 이삭을 따서 묶으는 일이었다.

作業場인 옥수수밭 구석 구석에는 「金日成 首領의 붉은 戰士가 되자」 「作業量 超過完遂로 黨의 은혜에 보답하자」 등등의 표어가 붙어 있었다.

動員된 學生들은 個人別로 作業量을 정해 놓고 학부별, 학급반별 경쟁을 부치고 突擊戰을 시켰다. 이 경쟁 突擊戰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경쟁 도표를 내놓고 어느 분조 몇% 超過達成, 어느 학급 분조는 計劃 미달, 누구 누구 동무들은 党性 높게 일했다고 중간 보고를 해준다. 그리고 경쟁에서 우승할 것을 결의 시켰다. 이

노동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우면 党性이, 높은 黨員으로 인정 받고 후일 표창을 받게 된다.

作業도중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도 組織的이다. 作業班別로 노래 보급이 아니면 신문 讀報會를 열거나 춤을 추는 등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사소한 불평이나 잡념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作業場에도 作業台帳, 作業報道員, 文化指導員(宣傳 오락지도원)이 선정되어 있다. 마치 지옥같은 勞動 突擊戰이 짧은 휴식을 통하여 억지로 웃고 노래하고 춤추며 일하는 지상 낙원으로 자랑한다.

웃을 경황이 없어도 웃게 되고 배가 고파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고 있다. 노래와 춤을 같이 하지 않는 學生에게는 지명하여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는 것이다.

이 오락은 피로를 모르게 하는 흥분제로 조직되는 것이다.

作業場에서 먹는 옥수수밥과 된장국의 맛은 그 어떤 진수성찬에도 비길 수 없는 꿀맛이었다. 나는 4년간의 大學期間 괴뢰군 生活에 못지 않는 組織生活과 사상 訓練을 받고 卒業후 平壤市 人民委員會(서울시청과 같은 행정 기관) 指導員으로 配置됐다.

北傀 치하에서는 군에서나 大學이나 社會의 職場에서도 組織生活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平壤市人民委員會 指導員으로 配置되던 해 北傀 共産党은 9月 9日 소위 괴뢰 政權樹立 紀念日이라고 하여 각 共産國家 代表團들을 초청하는 등 대대적인 慶祝行事を 準備하였다. 이 代表團을 맞이하는 準備로서 市内 道路 整備가 시급했고 平壤市 미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도시 미화를 위해 平壤人民委員會에서는 세밀한 도시 미화 計劃이 수립되고 이 計劃에 따라 매일과 같이 区厅长會議, 洞長會議, 人民班長會議, 職場従業員總會, 党會議, 社勞庁會議, 女盟會議, 職盟會議, 人民班總會가 끝날 날이 없었다. 會議 決定에 따라 平壤 市民들은 아침 5시면 부락단위로 두들겨 대는 종 소리를 듣고 모두가 빗자루, 삽, 팽이, 세수대야, 바게쓰등을 들고 집주위와 부락의 도로 수리로 부터 작업은 시작된다. 平壤市의 울타리는 모조리 황초를 물에 풀어 바르고 집집마다 토벽은 회가루를 물에 풀어서 빗자루로 하얗게 칠하고 토벽 중턱 밑으로는 석탄 가루를 물에 풀어서 까맣게 발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平壤市内 建物들은 9.9절을 맞으면서 일제히 회가루 황토, 석탄가루로 화장이 되었다. 職場마다 밤에는 남자들이 신문지에 붉은 물 푸른 물감을 칠하고 여자들은 그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꽃을 만들었다. 각 工場들은 자기 工場의 生産品 모형들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마스کم」訓練에 바빴다. 平壤 附近 農民들도 農場 特産物을 표시하는 모형들을 準備했으며, 15일이 지난 9.9절 전날은 平壤이 外形으로는 말끔하게 단장되었다. 平壤市民들은 20일간의 9.9절 행사 準備에 지치고 시달려 있었다.

平壤市人民委員會와 各 区域人民委員會 및 洞事務所들에서는 행사 당일의 人員 動員計劃을 빈틈없이 짜고 職場과 人民班들에서 會議를 일제히 갖게 하고 行事 準備를 끝냈다.

9.9절 當 일 各 区域人民委員會는 관하 人民班, 学校, 職場, 農民들을 첫새벽부터 動員

시키고 職場 및 洞別로 행진 순위를 정해 주었다. 行進 隊列은 자기 行進 順位를 철저히 지키고 자기 앞에 낯선 사람이 끼여드는가를 살펴서 異色 分子가 隊列內에 침투 못하도록 警覺性을 높이라는 注意를 받고 口號 先唱者의 외치는 口號에 따라 앵무새처럼 機械的으로 전 隊列이 환성을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꽃묶음과 手旗, 「푸라카드」 「金日成 肖像画 模形」등을 들고 「金日成 廣場」을 향해 10 열 종대로 노래와 구호를 설새 없이 부르면서 들어 가도록 하였다.

「金日成 廣場」내에 만들어 놓은 主席團은 각국 國旗와 生花로 장식되고 거기에 「金日成」을 중심으로 黨 및 傀儡政權의 關係들이 좌우로 자리 잡고 각국 代表들이 동석하였다. 廣場은 總指揮者의 口號에 따라 10만 군중의 행동이 機械처럼 統一되고 있었다. 主席團에서 낭독하는 보고문은 두시간이 걸려 끝나고 각국 代表들의 祝辭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行事 準備委員會 指揮 口號에 따라 行進 隊列은 「金日成 노래와 각종 노래, 口號등을 외치고 차례 차례로 질서 정연하게 主席團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내려도 隊列은 順序대로 主席團 앞을 통과해야 하고 환성을 올려서 主席團을 향해 최대의 「榮光」을 드려야 하였다. 비는 폭우로 쏟아져도 예술의 隊列은 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農民들이 땡가리를 치면서 豐年歌를 부르며 지나갔다.

外國人들의 카메라 렌즈 조종도 바빴고 記錄映画撮影所 職員들도 분주하였다. 어느 隊列 할것없이 口號 先唱隊員은 목이 쉬었다.



示威 群衆들은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行事を 위해 일곱시부터 나왔고, 거리가 먼 곳에서는 다섯시부터 집합했다. 이른 아침에 죽살밥 아니면 옥수수밥을 먹고 나와서 오정이 지나도록 노래와 口號를 불러야 하고 꽃뭉음과 깃발을 흔들며 발을 맞춰 걸자니 배가 고프고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先唱, 口號에 따라 억지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된다.

行事が 끝난후 各 組織에서 總和會議를 갖도록 되어 있고, 이 會議에서 行事 全過程에서의 行動을 總和 批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行事が 아니더라도 外國 손님이 올 때면 平壤市民들과 學生들은 언제나 종이로 만든 꽃과 수기를 들고 飛行場에서 宿所까지 줄을 지어 몇시간씩 대기하면서 노래와 口號를 부르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市民들은 道路 修理와 清掃는 물론 外國 손님들에게 북한 住民들의 生活을 富裕하게 보여 주기 위해 아파트에 사는 住民들은 平壤市 人民委員會에서 시달한 同一 規格에 맞추어 똑같이 흰 「종이」로 「카텐」을 만들어 「아파트」 유리창에 활로 부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차를 타고 급히 지나가는 外國人들의 눈에 는 종이로 만든 「카텐」이 마치 천으로 만들어 단것으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매 世帯別로 화분을 2개 이상 창문턱에 놓으라는 지시까지 한다.

그러나 화분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집의 선인장 가지 한개씩을 얻어서 화분에 꽂아 창문턱에 두고 指示를 執行한 것으로 報告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와같이 북한 住民들은 크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共産黨과 行政機關의 指示에 의하여

創意性은 완전히 북살된채 機械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괴 共産黨에서는 市, 郡 人民會議 代議員 選舉를 앞두고 언제나 하는 식대로 黨會議를 비롯한 各種 會議를 열고 「選舉 事業을 成果的으로 進行」할데 대한 決定이 채택되고 이 결정에 따라 黨 및 行政 幹部들이 各 區域을 담당하여 소위 指導事業에 나가게 된다. 나는 平壤市人民委員會 副局長職에 있을때 平壤市 승호구역 選舉事業을 책임지고 나간 일이 있었다. 승호구역에 나간 나는 구역 및 同行政 幹部 會議를 열고 上級 機關의 計劃과 指示를 전달하고 구역 실정에 맞게 더욱 具體的인 計劃을 수립하고 人民班會議 洞長會議를 비롯한 각종 會議들을 연이어 갖게 하였다.

選舉日에 나는 새벽부터 選舉場을 돌아 다니면서 選舉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첫새벽부터 洞事務所 직원들이 「징」을 치고 골목을 누비면서 빨리 밥해먹고 選舉場에 나오라고 외치고 다닌다. 새벽 동기가 채 가서지지도 않았는데 選舉場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줄지어 늘어섰다. 저마다 눈위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자라목같이 움크리고 입김으로 손을 녹이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들오들 떨고 서있는데 옷차림은 너무 남루하였다.

그런데도 「예술씨들원」들이 選舉場에 나왔는데 머리채를 길게 따아내린 처녀가 검정고무신에 남자용 회색 면양말을 신고 검정 무명 몸매 위에 분홍색 인조 긴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고를 둘러 메었다. 총각은 지하족을 신고 옥색 인조 바지 저고리를 勞動服위에 덮혀 입고 때묻은 터럭수건을 목에 감은채 징을 들고 나와 처녀 총각이 장구와 징을 두들기면서 選舉場 마당을 들고 있다. 民主宣傳室長은

「다들 좀 나와 줘요 추시오 추요」하고 사람들을 끌어 내지만 아무도 나가 추추는 사람이 없다. 장구치는 처녀도 징치는 총각도 손이 시려서 울쌍이 되어 事務室로 뛰어 들어 갔다가 또 나와서 손끝을 입김으로 훌훌 불면서 뚱뚱거리고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民主宣傳室長이 選舉者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추추게 한다.

選舉는 秘密投票라고 말하고있으나 사실은 投票場에 秘密室이 없고 選舉管理員이 지켜보는 앞에서 投票하고 있다.

選舉者들은 投票順位가 정해져 있어 자기 마음대로 먼저 投票하거나 뒤에 할 수도 없다. 選舉者중에는 性분이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性분이 나쁜 사람의 앞과 뒤에는 核心黨員이 붙어서 그 사람의 投票過程을 監視하도록 하는것이다. 그러나 選舉結果 그렇게 監視를 했지만 그래도 黑函에 던진 표가 열몇명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신문에는 춤과 노래속에서 진행된 人民民主主義選舉 100% 參加, 100% 贊成投票라는 記事와 함께 춤추고 장구치는 選舉場 사진들이 신문 전체를 메워 있었다. 反對票를 넣은 選舉者들은 과연 그 신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 북 피치하에서 벗어나 自由 大韓의 품에 안겨 마음껏 自由를 누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북녘에 있는 주민들은 이 좋은 自由를 상상도 못하고 있다. 귀중한 인간의 尊嚴도 모르고 있다.

나는 학생시절부터 黨員이었고 行政機關에 들어가면서는 모든 行事的 計劃에 參與하여 群衆들을 機械的으로 動員하고 集合을 指導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黨의 指令에 따라 움직인것 뿐이다 .

오늘도 集會, 結社는 黨의 政策支援에 만 動員되고 있을 뿐이다 .  
北韓 동포들은 오늘도 各種「示威」에 시달리고 지치고 있다 .